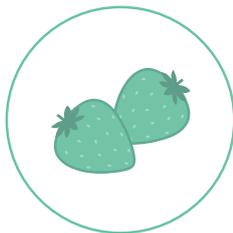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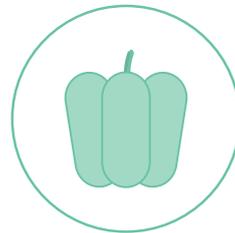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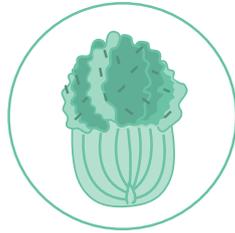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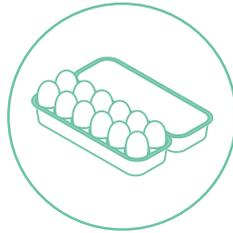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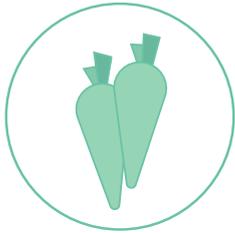


농식품 해외인증&등록 정보 종합 가이드



#목차(Contents)

농 식품 해외 인증 · 등록 정보 종합 가이드

01 해외 식품 인증 현황

인증 현황

인증 개요

인증 세부 분류

5

02.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공통인증

FSSC 22000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BRCGS (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Standard)
Global GAP (Global Good Agriculture Practice)
SQF (The Safe Quality Food)
IFS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9

아시아권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 등록
JAS 유기 인증
스마일케어식 인증
JGAP 인증

인도 네시아

인도네시아 BPOM 등록
인도네시아 SNI 인증
인도네시아 신할랄 인증

중국

GACC 등록
중국 유기 산품 인증
중국 신 식품 원료 등록
중국 HACCP 인증 / 중국 GAP 인증

필리핀

필리핀 FDA 등록

베트남

베트남 VFA 적합성 공표 등록

싱가포르

싱가포르 SFA 등록

홍콩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수입 허가

말레 이시아

SIRIM 인증 / 신할랄 인증

태국

태국 식약청(FDA)등록

대만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TFDA) 등록

27

03.
인증별
식품인증
가이드

북미권		79
미국	미국 FDA 등록 / 미국 식품시설등록 / USDA Organic 인증 / 미국 GRAS 제도	
캐나다	SFC 라이선스 / 노블푸드	
유럽권		93
유럽 공통	EU 식품안전관리 제도 / EU 노블푸드 등록 / 유로 리프 인증	
기타 권역		105
유라시아	EAC(TRCU) 인증 / 러시아 국가 위생 등록 / 우즈베키스탄 UZSTANDARD 인증 (해외 적합성 인증 종류)	
호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종교·문화적 인증 / 제품 기능성 인증		119
할랄	말레이시아 JAKIM(요약) 인도네시아 MUI 싱가포르 MUIS 태국 CICOT UAE(아랍에미리트연방) ESMA 미국 IFANCA	글루텐프리
코셔		비건
		비유전자 변형식품
식품·인증 관련 법령		141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	기타
유럽	EU 안전관리 EU 식품안전관리 제도	나라별 동등성 인정 현황 캐나다 / EU / 미국 / 일본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아랍에미리트 / 싱가포르 / 한국 / 카자흐스탄

04.
식품·인증
관련 법령
및 기타

주요 자료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해외 식품인증 정보포털(<https://www.foodcerti.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https://www.kotra.or.kr/>)
일본 농림수산업성(<https://www.maff.go.jp/>)
일본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
중국 해관총서(<http://www.customs.gov.cn/>)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https://www.islam.gov.my/ms/>)
캐나다 식품검사청(<https://inspection.canada.ca/eng/1297964599443/1297965645317>)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https://www.kita.net/internationalTrade-Studies/internationalTradeStudies/internationalTradeStudiesMain.do>) 등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https://at.or.kr>)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s://global.or.kr>)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

농 식품 해외 인증 · 등록 정보 종합 가이드

1. 해외 식품 인증 현황

인증 현황

| 인증 개요 / 인증 세부 분류

»인증 현황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식품안전 인증은 매우 중요하다. 식품안전 인증은 제품 자체가 섭취하기에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대중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적·윤리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을 보증한다.

식품안전 인증은 식품 공급망의 제품·프로세스·시스템이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제3자 검증이다. 객관적인 제3자의 인증은 올바른 거버넌스와 기업의 책임을 의미하므로,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 세계 식품 산업이 표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정부에서는 특정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해당 국가 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때로는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에 특정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6

인증은 일반적으로 표준을 개발한 인증 주체인 국제인정기관(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이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을 지정하고, 인정기관(AB)에서 다시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을 인정하는 구조이다. 인증기관(CB)이 주로 개별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

인정(Accreditation)이란 인증과는 다르다. 인정은 특정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기관(CAB)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적격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하게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와 수요자에게 적합성 평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활동이다.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에서는 실제 심사를 수행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기관은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 활동 지역이 제한된다.

주요 인증기관으로는 SGS(스위스), DNV(노르웨이), Lloyd's Register(영국), Bureau Veritas(프랑스), Control Union Certifications(네덜란드), Intertek(영국), Eurofins(룩셈부르크), TUV SUD(독일), AsureQuality(뉴질랜드), DEKRA(독일), Kiwa Sverige(스웨덴), ALS(호주), NSF International(미국), Aspirata(남아공) 등이 있다.



대부분의 식품 인증절차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인증(Certification)이란 식품 등 평가대상에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해당 식품의 사용과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 제품이 표준안이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식품 인증은 국제 인증·국가 인증·국내 인증으로 나눌 수 있다. 인증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시스템 인증, 적합성 인증, 제품 기능성 인증, 종교·문화적 인증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국제 인증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 국가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구나 단체가 관리하는 인증을 가리킨다. 국가 인증은 특정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해당 국가 법령·제도를 근거로 수행하는 인증이다. 인증의 범위는 해당 국가에 국한된다. 국내 인증은 국내를 범위로 하여 별도의 기구나 단체에서 승인하는 인증이다.

I 인증 분류 체계

분류 체계	내용
국제(해외) 인증	전 세계를 범위로 하여 모든 국가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국가 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구나 단체에서 승인하는 인증·보증
국내 인증	국내를 범위로 하여 별도의 기구나 단체가 인증·보증 주체가 되어 승인하는 인증·보증
국가 인증	각 국가별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국가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실시하고 그 범위는 해당 국가에 적용되고 있는 인증·보증
시스템 인증	식품 안전 관리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표준 인증·보증
적합성 인증	인증의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이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적합성을 인증·보증
제품 기능성 인증	특정 성분 또는 기능적 요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 성분 및 기능성을 검증하는 인증·보증
종교·문화적 인증	특정 종교·문화권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실시 여부를 검증하는 인증·보증

출처: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시스템 인증이란 식품안전 관리와 경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규격에 대한 표준 인증이다. FSSC 22000·ISO 22000·BRC·HACCP·Global GAP·SQF·IFC·GMP 등이 여기 해당한다. 적합성 인증은 인증의 목적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관리 기준이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등 해당 인증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인증이다. FDA·EAC 인증 등이 여기 속한다. 제품 기능성 인증이란, 특정 성분 또는 기능적 요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검증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이다. Vegan·Organic·Non-GMO 인증 등이다. 종교·문화적 인증은 이슬람교·유대교 등 특정 종교·문화권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이다. 대표 사례로는 할랄(Halal) 인증과 코셔(Kosher) 인증이 있다.

2000년에 문을 연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는 식품 안전 인증 개발과 승인이 주 역할이다.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Safe food for consumers, everywhere)이라는 설립목적을 내세웠다.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에 이르는 전체 식품 공급망에 걸쳐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동시에 식품 안전 위험, 심사중복과 심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그들의 위탁가공업체·공급업체가 공급하는 식품의 안전과 품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GFSI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GFSI는 국가 주도 표준·인증과 기술적 동등성(Technical Equivalence, T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FSI에서는 FSSC 22000·BRC·SQF·IFS 등 다수의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을 승인했다. GFSI가 승인한 인증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를 반영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 GFSI가 승인한 인증



- | | |
|---|--|
| 1. BRCGS(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Standard) | 8. EFI(농산물규격) |
| 2. FSSC 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 9. ASIA GAP(농산물규격) |
| 3. SQF(Safe Quality Food) | 10. CANADA GAP(농산물규격) |
| 4. IFS(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 11. GLOBAL GAP(농산물규격) |
| 5. JFS-C(Japan Food Safety) | 12. Global Seafood Alliance(해산물규격) |
| 6. Freshcare(농산물규격) | 13. GRMS(Global Red Meat Standard) 육가공규격 |
| 7. Primus GFS(농산물규격) | |

대분류	중분류	인증명	발급 및 승인기관
국제(해외) 인증	시스템 인증	FSSC22000	FSSC22000(GFSI승인)
		ISO22000	국제 표준화기구
		BRC	BRC(GFSI승인)
		Global-GAP	Global-GAP(GFSI승인)
		SQF	SQF(GFSI승인)
		IFS	IFS(GFSI승인)
	적합성 인증	MSC	MSC
		ASC	ASC
		FSC CoC	FSC
		UTZ	UTZ
	제품 기능성 인증	Vegan	종류별 상이
		Non-GMO	Non-GMO Project
	종교·문화적 인증	HALAL	종류별 상이
KOSHER		종류별 상이	
국내 인증	국내 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KS인증	한국식품연구원
국가 인증	시스템 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식품의약품안전처
		JGAP	일본 JGAP 협회
	적합성 인증	EAC	EAEA(유라시아경제연합)
		FDA	미국 식품의약청(FDA)
	제품 기능성 인증	EU orgainc	European Commission(유럽연합)
		USDA orgainc	미국 농무부(USDA)
		China orgainc	CNCA
	JAS 유기인증	일본 농림수산성	

| 출처: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2.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공통인증

(글로벌인증)

FSSC 22000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BRCGS (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Standard)

Global GAP (Global Good Agriculture Practice)

SQF (The Safe Quality Food)

IFS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FSSC 22000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radio"/>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	--	-------------------------------------	--------------------------



인증기관 (관할기관)	Foundation FSSC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관련 사이트	https://www.fssc22000.com
도입 시기	2010년
적용 품목	식품 전반 및 경영시스템
유형	시스템 인증
유효기간	3년
취득 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 가능
등록 소요시기	조건에 따라 상이(평균 6~9개월)

° 식품 안전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범용성 제고를 위해 국제규격 ISO 22000을 접목하여 도입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근거 규정
- ISO 17021-1:2015
 - ISO/TS 22003:2013
 - FSSC 22000 Scheme Version 5.1



GFSI가 승인한 인증 가운데 하나인 FSSC 22000은 식품 제조업체와 공급망에서 식품안전에 관련한 위험을 식별·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표준이다. FSSC 22000(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은 2004년 네덜란드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식품안전 인증 재단이 개발했다. FSSC 22000은 ISO 22000을 기반으로 각 식품 분야의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 PRP)과 추가 요구사항(Additional Requirements)이 결합한 형태의 표준이다. 식품제조·포장재·동물사료·도소매·출장급식·물류와 보관·농업 등 총 7개 섹터로 구성돼 있다.

ISO 22000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경영시스템 또는 품질·안전 등의 시스템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

□ FSSC 22000 추가 요구사항(2023년 6차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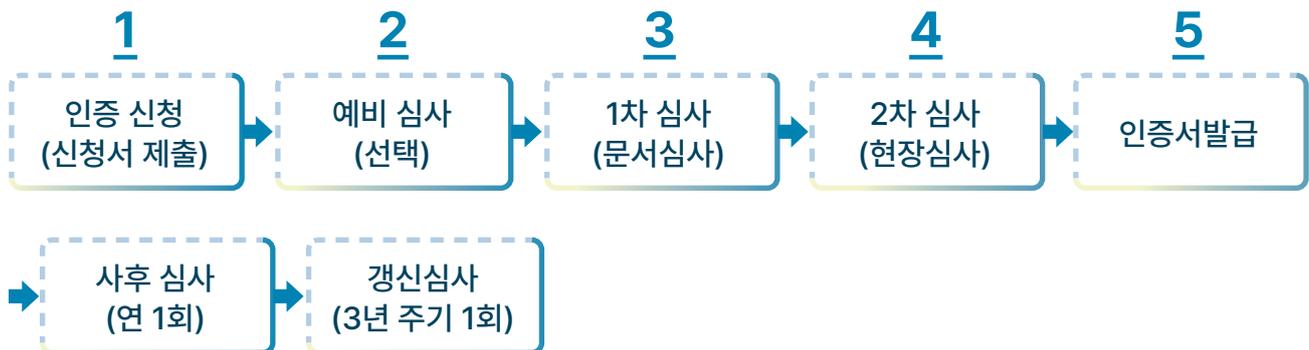
식품방어(TACCP) / 식품사기(VACCP) / 제품 라벨링(로고 사용) / 알레르기 관리 / 환경모니터링 등

FSSC 22000 인증 범위 및 구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A I	육류/우유/계란/꿀을 위한 동물 재배	D IIb	애완 동물 사료 생산(다른 애완동물)
A II	생선과 해산물의 양식	E	케이터링
C I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의 가공	F I	소매 / 도매
C II	부패하기 쉬운 식물성 제품의 가공	F II	식품 중개 / 무역
C III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 (혼합제품)의 가공	G I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사료 운송 서비스 제공
C IV	상온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가공	G II	상온 식품·사료를 위한 운송 및 저장 서비스 제공
D I	사료 생산	I	식품 포장 및 포장재 생산
D IIa	애완 동물 사료 생산(개와 고양이만)	K	(바이오) 화학물질 생산

출처: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 인증 신청 절차



11

FSSC 22000은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식품의 감사·모니터링·인증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표준이다. FSSC 22000은 ISO 22000과 HACCP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해 식품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중요한 통제 지점을 파악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FSSC 22000의 장점으로 독립성(비영리재단이 운영),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개발, GFSI 승인을 넘어 ISO와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장과 국제표준을 통한 일관성 확보 등이 꼽힌다. 이미 **ISO 22000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FSSC 22000 인증을 받고자 할 때는, **기존 ISO 22000 인증에 대한 유효성 확인과 PAS 220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만** 요구된다.

FSSC 22000 심사항목

- ① 구성요건
 - 식품안전표준규격(ISO22000)
 - 선행프로그램(ISO/TS220020-1)
- ② 국제적인 법적 효력, 규제력을 갖춘 식품 안전 적용 대상
 - 사용된 원부자재 / 서비스 / 제조 제품
- ③ 식품안전에 대한 서비스 보장 범위
 - 제조 시설 / 운송망 / 저장 및 보관 시설
- ④ 문서 명시
 - 위해요소분석 수행 범위 / 식품 안전 원칙

»ISO 22000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radio"/>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국제 표준화 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도입 시기	2005년
적용 품목	식품업계 경영시스템 - 농·축·수산업 - 식품 및 사료가공 - 케이터링 - 소매·운송·보관·포장 및 장비제조 - (생)화학제품의 생산
유형	시스템 인증
유효기간	3년
취득 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 가능
등록 소요 시기	조건에 따라 상이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근거 규정 - ISO 17021-1:2015 - ISO/TS 22003:2013 °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 HACCP의 원칙에 근거함



ISO 22000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은 식품 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이다. 식품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상호의사소통, 시스템 경영, 선행요건 프로그램(PRP's), HACCP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ISO 22000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ISO와 HACCP 등 두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회사는 식품안전 보장과 지속적인 성과 개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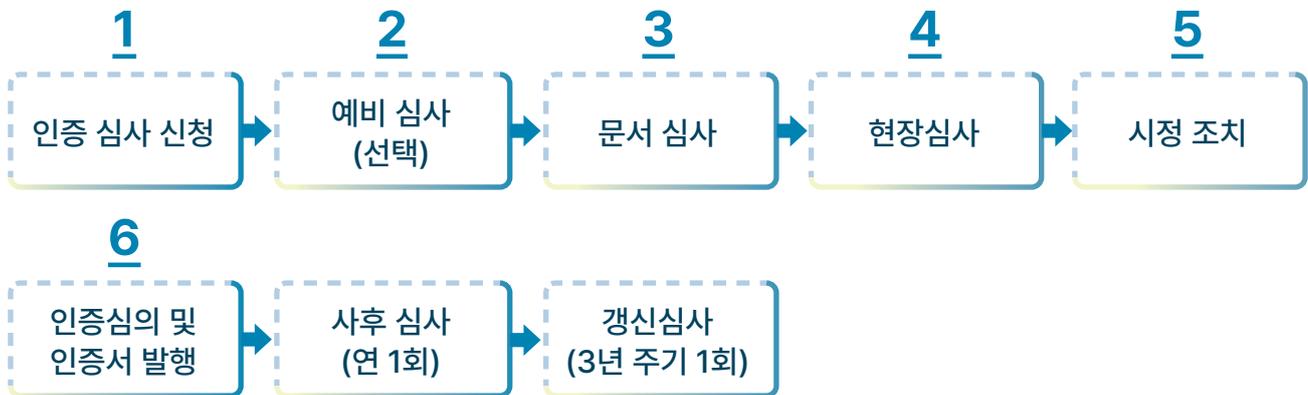
ISO 22000 인증을 취득하면 식품안전관리수준 향상과 사전예방, 위생관리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공급 체인과 원활한 의사소통, 종업원의 책임 의식 향상과 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ISO 22000 인증 범위 및 구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A I	육류/우유/계란/꿀을 위한 동물 재배	D IIb	애완 동물 사료 생산 (다른 애완동물)
A II	생선과 해산물의 양식	E	케이터링
B I	식물재배(곡류와 두류 제외)	F I	소매 / 도매
B II	곡류와 두류 재배	F II	식품 중개 / 무역
C I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제품의 가공	G I	부패하기 쉬운 식품 및 사료 운송 서비스 제공
C II	부패하기 쉬운 식물성 제품의 가공	G II	상온 식품·사료를 위한 운송 및 저장 서비스 제공
C III	부패하기 쉬운 동물성 및 식물성 제품 (혼합제품)의 가공	H	서비스
C IV	상온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가공	I	식품 포장 및 포장재 생산
D I	사료 생산	K	(바이오) 화학물질 생산
D IIa	애완 동물 사료 생산 (개와 고양이만)	J	장비 제조

출처: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 인증 신청 절차



IFSSC 22000 심사항목

- ① 조직의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기대 및 니즈 파악
- ②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
- ③ 식품안전방침 및 목표
- ④ 조직 내·외부 의사소통
- ⑤ 변경관리
- ⑥ 외주처리 프로세스
- ⑦ 경영검토
- ⑧ 위해요소분석 및 관리계획 선행 요건 프로그램
- ⑨ 부적합 관리
- ⑩ 지속적 개선
- ⑪ 이력추적시스템 / 회수 / 모의회수
- ⑫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⑬ 타당성 확인
- ⑭ 검증

»BRCGS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BRCGS
관련 사이트	https://www.brcgs.com/
도입 시기	1996년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가 필요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원료 제품 -과일, 야채, 견과류 -저온 살균 또는 UHT를 열처리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및 액체 기술 -가공식품, 즉석 섭취 또는 열 -저온 살균 또는 살균을 열처리로 하는 주변 안정 제품 -열처리로서 살균을 수반하지 않는 주변 안정 제품
유형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	6개월/12개월
취득 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 가능
등록 소요 시기	품목에 따라 상이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p>° BRC 글로벌 식품안전표준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 및 식품 성분 제조, 가공 및 포장 산업에서 안전, 무결성, 합법성 및 품질과 식품업체의 시스템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p> <p>*근거 규정 - BRCGS Global standard food safety issue 8</p>



BRCGS(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Standard) 인증은 국제 인증이자 시스템 인증이다. 영국 소매협회 요구로 제정돼 유럽과 글로벌 유통 체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998년 세계 최초의 식품안전 인증으로 개발됐다. 2000년 GFSI에서 글로벌 식품안전인증 중 최초로 승인한 인증이다. 2016년 BRCGS는 대표적인 국제생명과학 측정시험법인 LGC 그룹에 인수됐다. 매우 체계적인 제3자 인증체계로, 식품과 비식품 범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식품안전·포장재·소비재·도소매 물류와 보관·대리인(에이전트)과 중계인·농업·글루텐 프리·윤리와 책임 있는 구매 등 총 9개 섹터로 구성돼 있다.

BRCGS 인증은 매년 갱신이 필요하다.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6개월 뒤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12개월 주기로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BRCGS 인증 범위 및 구분

구분	내용
Food Processing (식품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egory 1 - 생 붉은 고기 · Category 2 - 날가금류 · Category 3 - 가공되지 않은 가공 제품 · Category 4 - 생선 제품 및 준비 · Category 5 - 과일, 야채 및 견과류 · Category 6 - 과일, 야채 및 견과류 준비 · Category 7 - 유제품, 액상 계란 · Category 8 - 조리된 육류/어류 제품 · Category 9 - 가공되지 않은 육류 및 발효된 육류 및 생선 · Category 10 - 즉석 식사 및 샌드위치, 즉석 디저트 먹기 · Category 11 - 캔/유리의 저/고산도 · Category 12 - 음료 · Category 13 - 알코올 음료 및 발효/양조 제품 · Category 14 - 베이커리 · Category 15 - 건조 식품 및 재료 · Category 16 - 제과 · Category 17 - 시리얼 및 스낵 · Category 18 - 오일 및 지방
Food Packaging Manufacture (식품포장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egory 1 - 유리 제조 및 성형 · Category 2 - 종이 제조 및 변환 · Category 3 - 금속 성형 · Category 4 - 경질 플라스틱 성형 · Category 5 - Flexible Plastic 제조 · Category 6 - 기타 제조 · Category 7 - 인쇄 프로세스 · Category 8 - 화학 공정
Storage and Distribution (보관 및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egory 1 - 냉장 및 냉동식품 · Category 2 - 주변 음식 · Category 3 - 포장 및 포장재 · Category 4 - 소비재
Agent and Brokers (중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egory 1 - 냉장 및 냉동식품 · Category 2 - 상온 음식 · Category 3 - 포장재
Consumer products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 화학 물질 및 공식 화학 물질 · A2 - 날조된 종이/종이 혼합 · A3 - 나무, 짚, 코르크, 대나무 · A4 - 고무 및 플라스틱 · A5 - 섬유 및 섬유 혼합 제품 · A6 - 전기, 전자 및 배터리 · A7 - 유리, 도자기, 보석/비금속탄산수 · A8 - 금속 및 금속 혼합 제품 · A9 - 조립
Food Safety Culture Excellence	
Retail	
Ethical Trade and Responsible Sourcing	
Gluten-Free Certification Program	
Plant-Based Global Standard	
Start!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 인증 신청 절차



BRCGS 주요 요구사항

- 1) Senior Management Commitment
 - 조직구조, 책임 및 관리 권한 등
- 2) HACCP-based system(Food Safety Plan)
 - HACCP 식품안전팀, 선형요건 프로그램, CCP 결정, 각 CCP의 한계 기준 설정, HACCP 계획 검토 등
- 3) Product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 내부심사, 공급업체와 원재료의 승인 등
- 4) Site Standards
 - 현장 보안 및 식품 방어, 설계구조, 원재료 관리, 가공, 보관 구역, 해충 관리, 불만 관리, 제품 리콜에 대한 관리 등
- 5) Product Control
 - 제품 연구 및 개발, 제품 라벨링, 알레르기원 관리, 제품의 진위에서의 보호 등
- 6) Process Control
 - 운영관리, 중량, 용량, 개수 관리, 모니터링 장비의 교정과 관리 등
- 7) Personnel
 - 교육, 개인위생, 건강진단, 보호구 등
- 8) Production Risk Zone - High-risk, High care and Ambient High-care
 - 각 구역의 설계구조, 유지보수, 직원 시설, 폐기물 관리 등
- 9) Requirements for Traded Products
 - 제품의 합법성, 추적성, traded 식품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성과 모니터링과 승인 등

» Global GAP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GLOBAL G.A.P
관련 사이트	https://www.globalgap.org/
도입 시기	1997년
적용 품목	-농작물 기반: 과일·채소, 꽃·장식품, 조합 작물, 차, 식물 번식 재료, 흙 -양식 기준: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가축 기반: 소·양(유제품, 송아지), 돼지, 가금류, 칠면조 (Integrated Farm Assurance 규격 기준)
유형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	1년
취득 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 가능
등록 소요 시기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적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Part I – General Requirements -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Part II – Quality Management System Rules - GLOBALG.A.P. General Regulations Part III – Certification Body and Accreditation Rules



Global GAP

국제 농산물 우수 관리(Global GAP, Global Good Agriculture Practice)는 국제 인증이면서 시스템 인증이다. 1997년 유럽 소매업 생산자 단체가 개발한 인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다.

GAP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가공·생산·유통과정에서 위해 물질을 관리하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인증)'이 시행 중이었으나,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인증제도가 없었다. 농산물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이 GAP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EU·미국·칠레·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GAP 제도를 운용 중이다. 유럽에서는 Global GAP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시판을 허용하고 있다.

Global GAP 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준수해 제품 가치 제고, 새로운 지역과 글로벌 고객과 시장, 공급업체·소매업체 등 거래처 발굴과 접근 용이, 식품 등 제품 안전에 대한 위험 감소,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경쟁력 강화 등이다.

Global-GAP 인증 범위 및 구분

구분		내용
통합 농장 보증 표준 (IFA)	모든 농장 기반	CB (농작물 기반) · FV - 과일·채소 · FO - 꽃·장식물 · CC - 결합작물 · TE - 차
		AB (양식업 표준) · 물고기, 갑각류 및 연체동물
		LB (가축 기반) · PG - 돼지 · PY - 가금류 · TY - 칠면조 · PG - 돼지 · PY - 가금류 · TY - 칠면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인증 신청 절차

18



Global-GAP 인증대상별 심사기준

구분	옵션1	옵션2
인증대상	개별생산자(개인 또는 법인)	생산자 단체
인증품판매	개별생산자 판매 가능	생산자 단체만 판매 가능
QMS	선택적 운용	필수 운용
내부평가	생산자가 직접 전 생산지, 제품 및 생산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내부감사원-QMS, 취급시설 감사 내부심사원-전체 생산자 및 내부 심사
인증기관심사	해당 생산지, 취급시설 심사	QMS, 해당 생산자 및 취급시설 심사

Global-GAP 심사항목

- ① 검사범위 내 모든 컨트롤포인트 검사
- ② 검사범위 내 모든 제품 검사
- ③ 모든 생산, 저장, 가공 위치 방문
- ④ 사용 기계 검사
- ⑤ 개인 인터뷰
- ⑥ 기록 평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 SQF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radio"/>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	--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SQFI (Safe Quality Food Institute)
관련 사이트	https://www.sqfi.com/home
도입 시기	1994년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동물 생산 -1차 식물 생산 -양식업 -식품 제조 -동물성 제품 제조 -건강 보조 식품 제조 -애완 동물 식품 제조 -동물 사료 제조 -식품 포장 제조 -저장 및 유통 -식품 소매 -식품 서비스
유형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	1년
취득 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 가능
등록 소요 시기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안전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7065:2012 - SQF Fundamentals, Edition 1 - SQF Food Safety Code, Edition 9 - SQF Quality Code, Edition 9



• SQF •

SQF(The Safe Quality Food) 인증은 국제 인증이자, 시스템 인증이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인증으로, 미국 FMI의 하위조직인 SQFI에서 관리하고 있다. 제품이 아닌 식품업계 경영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SQF code는 3가지 레벨의 인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레벨 2와 3이 GFSI의 승인을 받았다. 레벨 2는 HACCP를 근간으로 한 식품안전계획, 레벨 3은 레벨 2의 요건에 품질경영시스템을 추가한 인증이다. 글로벌 식품회사인 McDonalds, Costco, Walmart, Woolworths, Aldi 등의 많은 국가의 소매점에서 인정하는 인증이란 것이 장점이다. 레벨 3부터는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GSFI로부터 동등성을 인정받은 6개 국제식품안전 경영시스템 표준 중의 하나로 식품안전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둔 식품안전관리 인증 체계다.

농장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식품 산업 전체에 해당하는 모든 공급업체가 SQF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범위가 넓다. SQF Food Safety Audit Edition 9 버전, SQF Food Safety Audit Edition 8.1 버전 등으로 구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지속해서 SQF 표준이 업그레이드돼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SQF 인증의 취득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레벨의 선택이다. 인증은 총 3단계의 레벨로 구성된다, 레벨 1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개 수준이다. 강력한 식품안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중소 식품 공급업체를 위한 표준으로 권장한다. 레벨 1은 식품 수출 때 수입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흔히 취득하는 레벨 2는 GFSI 공인 식품안전 표준으로, HACCP에 기반을 뒀 식품 안전성을 높여준다. 레벨 3은 Codex HACCP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품질 관련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표준이다. 레벨 2의 취득으로 식품안전을 증명하고, 레벨 3으로 식품 안전과 품질 경영을 함께 성취할 수 있다.

□ SQF 인증 코드

- 1 Production, Capture and Harvesting of Livestock and Game Animals
가축 및 식용야생동물 생산, 포획
- 2 Indoor Growing and Harvesting of Fresh Produce and Sprouted Seed Crops
신선 농산물과 싹이 튼 종자 작물의 실내 재배 및 수확
- 3 Growing and Production of Fresh Produce and Nuts
신선 농산물 및 견과류의 재배 및 생산
- 4 Fresh Produce and Nuts Pack-house Operations
신선 농산물 및 견과류 포장 창고 운영
- 5 Extensive Broad Acre Agriculture Operations
광범위한 Acre 농업 운영
- 6 Harvest and Intensive Farming of Seafood
해산물의 수확과 집약적 양식
- 7 Slaughterhouse, Boning and Butchery Operations
도축장, 정육 작업
- 8 Processing of Manufactured Meats and Poultry
가공육류 및 가금류 가공
- 9 Seafood Processing
해산물 가공
- 10 Dairy Food Processing
유제품 가공
- 11 Apiculture and Honey Processing
양봉 및 꿀 가공
- 12 Egg Processing
계란 가공
- 13 Bakery and Snack Food Processing
베이커리와 스낵 식품 가공
- 14 Fruit, Vegetable and Nut Processing, and Fruit Juices
과일, 야채 및 견과류 가공 및 과일주스

- | 15 Canning, UHT and Aseptic Operations
통조림, UHT 및 무균 작업
- | 16 Ice, Drink and Beverage Processing
얼음, 음료 가공
- | 17 Confectionery Manufacturing
제과 제조
- | 18 Preserved Foods Manufacture
보존식품 제조
- | 19 Food Ingredient Manufacture
식품 원료 제조
- | 20 Recipe Meals Manufacture
조리법 제조
- | 21 Oils, Fats, and the Manufacture of oil or fat-based spreads
오일, 지방 및 지방기반 스프레드 제조
- | 22 Processing of Cereal Grains
곡물의 가공
- | 23 Food Catering and Food service Operations
음식 케이터링 및 음식 서비스 운영
- | 24 Food Retailing
식품 소매업
- | 25 Repackaging of products not manufactured on site
현장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의 재포장
- | 26 Food Storage and Distribution
식품 보관 및 유통
- | 27 Manufacture of Food Packaging
식품부문 포장제조
- | 31 Manufacture of Dietary Supplements
건강 보조 식품 제조
- | 32 Manufacture of Pet Food
애완동물 사료 제조
- | 33 Manufacture of Food Processing Aides
식품가공 보조제 제조
- | 34 Manufacture of Animal Feed
동물 사료 제조

출처:SQFI(<https://www.sqfi.com/the-sqf-code/choose-your-code/code-selector/>)

SQF 인증 취득 절차 단계

- 1단계:** 심사의뢰를 받은 대행업체에서 인정기관에 제안서 제출, 승인요청
- 2단계:** 보유 직원 중 한 명 이상을 SQF 실무자로 지정(SQF 평가 데이터베이스에 회사를 등록할 때 교육수료증 첨부, 업체 내 전문가 보유 증명)
- 3단계:** 선택적 사전 심사(약점 사전 대비)
- 4단계·5단계:** 문서 심사와 현장 심사(직원 인터뷰·기록 검토 등 진행)
- 6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점검 후 SQF 인정 여부 판정

» IFS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radio"/>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IFS (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관련 사이트	https://www.ifs-certification.com/en/
도입 시기	2003년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제조 -가정용품 및 개인 위생용품 제조 -식품, 가정용품 및 개인 위생용품, 포장재 도매 -물류 서비스 -중개업 -1차 및 2차 포장재 제조
유형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	1년
취득 방법	국가별 인증발급기관에서 인증 취득 가능
등록 소요 시기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공급망에서 소비자에게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급업체와 소매업체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 *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S Food (Version 7) - IFS HPC - IFS Wholesale / Cash & Carry - IFS Logistics - IFS Broker - IFS PACsecure (Version 2)



IFS

IFS(International Featured Standards) 인증은 국제 인증이자 시스템 인증이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영국소매협회가 주도하는 BRCGS의 대안으로 독일 소매협회가 개발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유통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GFSI의 승인을 받았다. 식품과 비식품 표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품생산·가공회사가 식품안전·위생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식품을 생산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의 생산·포장·운송·보관 등에 대한 특정 조건을 포함하는 식품안전 표준이다.

농장 출하 후, 시장 진입 전까지 식품을 가공·포장하는 업체 대상으로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영어·불어·독일어 등 5개국 언어로 제공되며 식품제조·브로커·물류·생활용품·위생용품·도소매 유통 등 6개 섹터로 구성돼 있다.

IFS 인증을 받으려면 HACCP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안전 중심의 공장 환경, 과학 기반의 공정과 제품 제어 시스템, 우수한 직원 교육과 위생 습관이 필요하다. 정직성, 투명성, 핵심 식품 안전 전략, 장기 계획, 국제적 비전과 자원 투자 의지는 경영에 필요한 IFS 인증 조건이다. 중소기업이라면 컨설팅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IFS의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IFS 인증을 취득하면 독일 등 유럽 수출 기회를 늘리고, 여러 감사 비용을 줄이고, 유럽의 주요 소매업체의 신뢰를 얻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을 얻고, 식품 안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IFS 인증 범위

구분	내용
1	Red and white meat, poultry and meat product
2	fish and fish products
3	egg and egg products
4	Dairy products
5	Fruit and vegetables
6	Grain products, cereals, industrial bakery and pastry, confectionary, snacks
7	combined products
8	Beverages
9	Oils and fats
10	Dry goods, other ingredients and supplements
11	Pet food

IFS 인증 범위

구분	내용
A	멸균 공정
B	저온살균 및 UHT 공정
C	자외선 조사, 장기 보존 처리(염장, 절임 등), 건조공정
D	(급속) 냉동공정, 향균 공정(훈증 등)
E	MAP 진공포장, 클린룸(멸균실) 취급 공정 분리 공정(여과, 역삼투압 등)
F	A~E 제외 공정(발효, 가열, 절단, 증류 등)

IFS 주요 요구사항

- 1) 고위 경영진 책임
- 2) 품질 및 식품 안전 경영시스템
- 3) 자원관리
- 4) 계획 및 생산 프로세스
- 5) 측정·분석·개선
- 6) 식품 방어

IFS KO(Knock out) 요구사항

- 1.2.4) 최고경영자의 책임
- 2.2.3.8.1) 각 중점 관리 기준(CCP)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 3.2.1.2) 개인 위생관리
- 4.2.1.2) 원재료 규격 기준
- 4.2.2.1) 제조법 준수
- 4.12.1) 이물질 관리
- 4.18.1) 이력추적제도
- 5.1.1) 내부 심사
- 5.9.2) 제품 회수 및 철수 절차
- 5.11.2) 시정조치

□ 인증 신청 절차



IFS 인증 취득 절차

- 1) Senior Management Commitment
 - 조직구조, 책임 및 관리 권한 등
- 2) HACCP-based system(Food Safety Plan)
 - HACCP 식품안전팀, 선행요건 프로그램, CCP 결정, 각 CCP의 한계 기준 설정, HACCP 계획 검토 등
- 3) Product Safety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
 - 내부심사, 공급업체와 원재료의 승인 등
- 4) Site Standards
 - 현장 보안 및 식품 방어, 설계구조, 원재료 관리, 가공, 보관 구역, 해충 관리, 불만 관리, 제품 리콜에 대한 관리 등

» HACCP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radio"/>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	--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각 국가별로 인증기관이 상이함)
관련 사이트	https://www.haccp.or.kr/
도입 시기	*1995년 (*우리나라 기준)
적용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유형	권장 인증
유효기간	3년
취득 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나, 국가의 개별적 법률체계에 기반을 둔 인증 취득 필요
등록 소요 시기	약 40일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식품의 전 단계에 걸친 위생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도입 ◦ 국가마다 관련 규정 마련

25



HACCP

HACCP 제도는 잠재적인 모든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결정해 위해요소의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제도다. HACCP(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다. 위해요소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예측해 그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 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HACCP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식품제조 과정에서 위험을 줄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향상할 수 있다. HACCP 시스템은 기업의 우수한 식품위생 관리 전통에 기초한다. *GMP, 직원 교육, 장비 유지 관리, 제품 라벨링, 배치 관리 등은 HACCP 인증의 기본이다. HACCP 인증에선 중요 관리점의 관리를 강조한다. HACCP 인증을 받더라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다.

HACCP은 우주에서의 항공우주 계획을 위해 1960년대 미국의 필스베리사가 미국 항공 우주국(NASA) 등과 협력하여 확립한 표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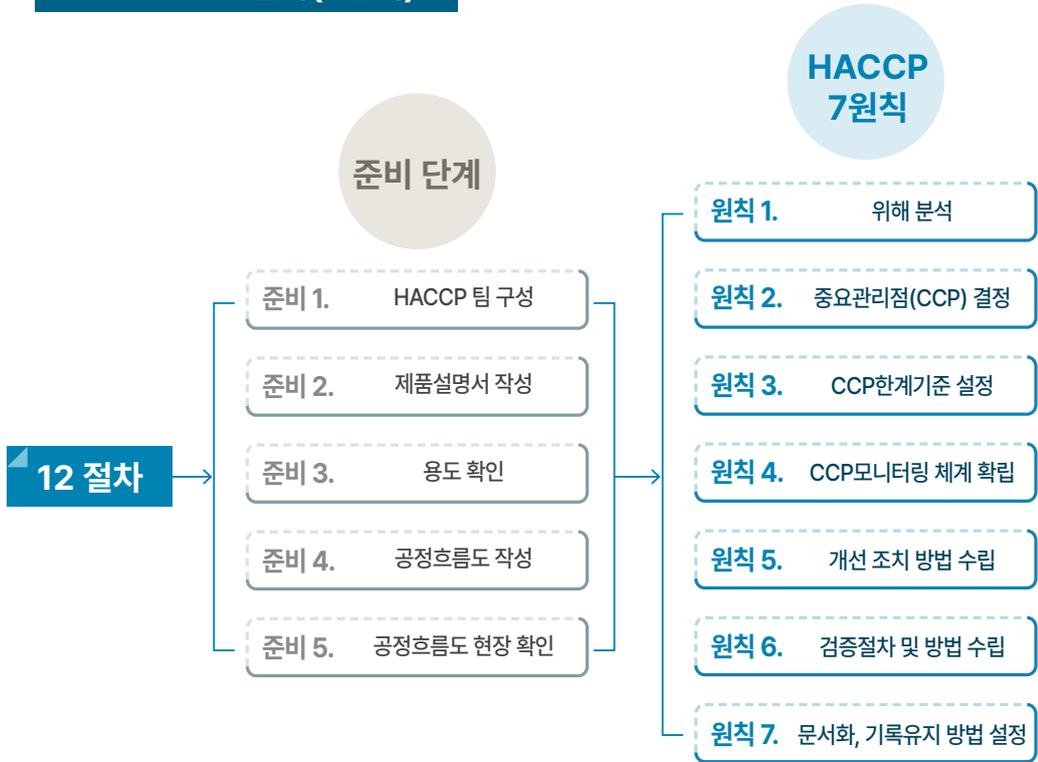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과 위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HACCP 인증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고품질의 우수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조사의 원료 구매로부터 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인증제도

결정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HACCP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중국과 국제기구(Codex·WHO·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썬을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HACCP는 1999년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정한 7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HACCP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출·입 식품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국가 운영제도로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도 글로벌 HACCP와 다른 점이다. 글로벌 HACCP는 내수, 수출·입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비즈니스의 기회 창출과 확대 등의 목적이며, 글로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국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인증기관이 존재한다는 것도 글로벌 HACCP의 특징이다.

HACCP 12 절차(7원칙)



[자료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 인증 신청 절차



2.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아시아권

일본

일본 후생노동성 사전 등록 / JAS 유기 인증 /
스마일케어식 인증 / JGAP 인증

중국

GACC 등록 / 중국 유기산품 인증 / 중국 신식품 원료 등록 /
중국 HACCP 인증 / 중국 GAP 인증

베트남

베트남 VFA 식품 적합성 공표 등록

홍콩

홍콩 식품환경위생부(FEHD) 수입 허가

태국

태국 식약청(FDA) 등록

대만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TFDA) 등록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BPOM 등록 / 인도네시아 SNI 인증 /
인도네시아 신할랄 인증

필리핀

필리핀 FDA 등록

싱가포르

싱가포르 SFA 등록

말레이시아

SIRIM 인증 / JAKIM 할랄 인증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사전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厚生労働省(일본 후생노동성,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적용 품목	-농축수산물 등의 1차 생산품과 단순 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과 식품 -식품 첨가물
유효기간	3년
등록 대상	일본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국내 담당 기관을 통해 등록 가능
관련 사이트	https://www.mhlw.go.jp/index.html
통용 국가	일본 한정
등록 소요 시기	일본 후생노동성 업무 처리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일본의 식품위생법에 반하는 식품 등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했으며,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되는 시간 축소

*근거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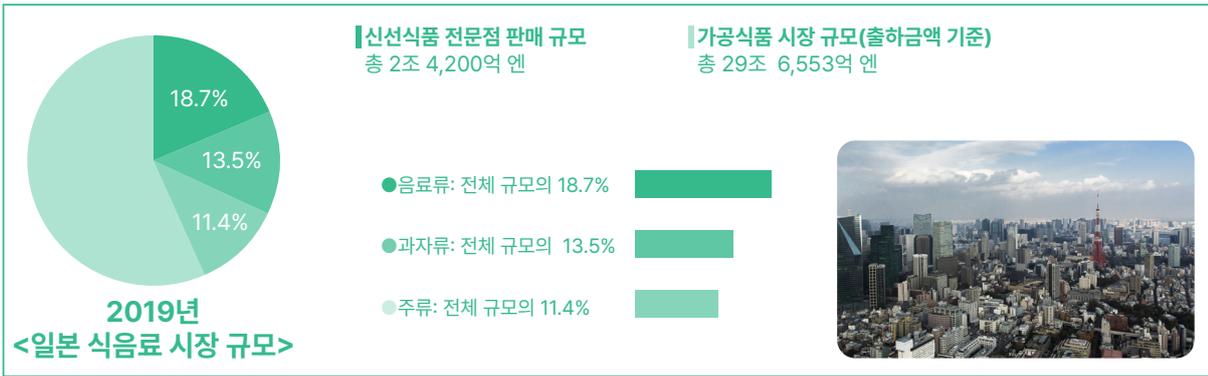
- 일본 식품위생법(소화 22 <1947>년 법률 제233호)
- 일본 후생노동성 생활위생국장 통지"수입식품 등 사전확인 제도실시에 관한 통지"
- 식품표시법(평성 25 <2013>년 법률 제70호)
- 식품표시기준(2015년 내각 부령 제10호)
- 식품안전기본법(법률 제 70호)
- 식품, 첨가물 등의 기준 규격(1959년 후생성 고지 제370호)
- 식물 방역법(농림 수산 식품 부령 제56호)
- 가축 전염병 예방법(소화 26 <1951>년 법률 제166호)
- 관세법(소화 26 <1951>년 법률 제166호)
-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991년 법률 제59호)



- 국명 : 일본(Japan)
- 수도 : 도쿄
- 위치 : 동북아시아
- 면적 : 377,914km²(한반도의 약 1.7배)
- 행정구역 :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
- 언어 : 일본어(공용어)
- 통화 : 엔(JPY,円) (US\$1≒JPY148.87)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코트라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사전 등록

일본의 식품 품질과 안전성을 규율하는 주요 법률은 식품위생법(FSA)이고, 식품표시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식품표시법으로 서로 다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사전 등록 제도는 해외의 농식품 제조업체가 일본에 수출하는 식품의 품목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식품 등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수입자가 반복 수입하는 농식품 등 자사 제품에 대해서 사전 등록을 하면 수입신고서의 기재 사항·수입자 입력 사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시험 성적서의 첨부도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국내 담당 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 소속 검역소가 부여한 등록 번호를 신고서에 기재한다. 사전 등록엔 유효기간이 있다. 등록된 농식품 등이 등록 유효기간 이내이면, 일본 정부의 지도 검사가 면제된다.(검사 명령이나 모니터링 검사 대상인 농식품 등은 제외)

제출 서류

1. 후생노동성 산하 검역소(식품검역소) 지정 양식

- 품목 등록 요청서
- 해외의 공적 기관 혹은 일본의 등록검사기관에 의한 시험 성적서

2. 품목 등록 번호

검역소의 심사, 품목 등록 신청서의 교부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역소는 품목 등록 요청서에 품목 등록 번호를 기재해,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사전 신고 제도(事前届出制度)

일본 후생노동성은 모든 농식품 등에 대해, 화물의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검역소 창구 수입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심사 결과, 검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수입 신고에 대해서는 화물의 도착 직후 신고 서류가 수입자에게 교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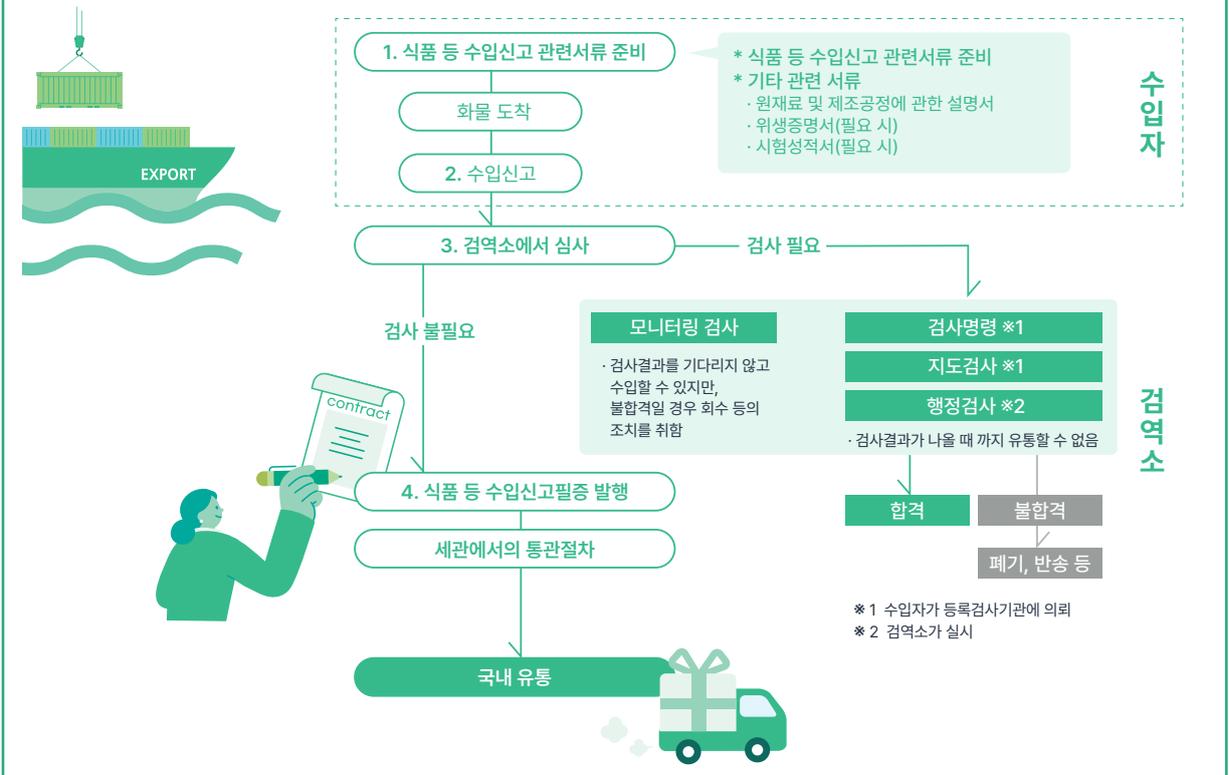
기구·용기 포장·유아용 장난감이나, 위생 관리 설명서가 제출돼 과거 반년간 위생상의 문제 발생이 없고, 해당 화물의 수송·보관 방법에 특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농식품에 대해서 화물 도착 전 신고서가 수입자에게 전달된다.

계획 수입 제도(計画輸入制度)

계획수입제도는 특별히 정해진 농식품 등에 대해, 같은 농식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업체의 신고서에 수입계획과 수입 실적을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농식품 수출업체는 1년 또는 3년간의 수입계획과 제출일 전 3년간의 수입 실적을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정되면 해당 업체는 수입할 때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의 공적 검사기관에서 사전 검사를 받아 발행된 시험 성적서가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으면 해당 항목의 지도 검사는 면제된다. 단, 수송 도중 변할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곰팡이 독 등)은 예외로 한다.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첫 번째 수입 시 업체가 자사 화물에 관한 시험 성적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고 이를 심사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농식품과 같은 농식품을 반복해서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선 다음 회부터 일정 기간, 지도 검사가 면제된다. 단 검사 명령 등 별도 통지를 받은 업체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입수속 순서도



| 자료출처: 일본 후생노동성(<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수출허가

식품을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에 따라 해당 식품에 대해 필요한 심사를 거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절차는 수입 신고 접수부터 시작한다. 필요한 심사와 관세·소비세 납부를 거친 후 수입 허가서 발급을 받으면 수입 허가 절차가 완료된다. 일본 비거주자도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입 허가를 받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식품 검사다. 관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의 허가·승인이 요구되는 제품이라면 수입신고서와 함께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신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할 식품, 식품첨가물, 기기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시 후생노동성 산하 검역소에 신고해야 한다. 검역소의 서류심사 시 식품 위생검사관은 수입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제조 기준에 적합하지, 첨가물 사용이 기준에 적합하지, 수입 제품에 독성 또는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중점 심사한다.

식품 위생검사관의 서류심사와 화물검사(cargo inspection) 결과 해당 화물이 관련 법규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검사에 합격한 화물), 통지 증명서(Certificate of Notification)를 수입업자에게 전달한다.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화물(검사에 불합격된 화물)은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다. 후생노동성 검역소는 해당 화물이 어떻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지 수입업자에게 통보한다. 수입업자는 검역소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수입 허가에 드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선박 운송 화물은 약 60시간, 항공 화물은 약 15시간이다.

수입허가 소요 시간



선박 운송 화물
약 60시간



항공 화물
약 15시간

* 품목마다 소요 시간 상이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식품명
- ② 사용 기한/최적 사용 기한
- ③ 제조업체 이름·주소(수입 식품의 경우 수입업체)
- ④ 보관지침
- ⑤ 원료
- ⑥ 포함된 양
- ⑦ 첨가제
- ⑧ 영양 성분(열량·단백질·지방·탄수화물·나트륨 등)
- ⑨ 원산지

원산지 표시

표시 규정상 국내 식품은 국내산임을 표시하고, 수입식품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JAS 유기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農林水産省(일본 농림수산성,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인증 민간 인증기관
적용 품목	유기농 농산물 또는 JAS 규격 준수 식품
유효기간	1년
등록 대상	일본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일본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는 국내 담당 기관을 통해 등록 가능
관련 사이트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html
통용 국가(동등성인정)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캐나다, EU회원국, 영국, 뉴질랜드, 대만 등
등록 소요 시기	2개월 이상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저농약” 등 표시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품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 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법) (쇼와 25년 법률 제175호)



일본 유기농 기준은 '유기 식물에 대한 일본 농업 표준(JAS)',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JAS', '유기 사료에 대한 JAS', '유기 가축에 대한 JAS'에 따른다. JAS 표준은 유기농 식품의 생산·가공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제조자(가공자)·재포장 업자·수입업자가 유기농 제품을 생산·가공하려면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운영 검사를 받아 유기농 일본 농업 표준(JAS) 인증을 받아야 한다.

JAS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제품에 유기농 JAS 마크를 붙이거나 유기농 식품이라고 광고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제품에 유기 JAS 마크를 붙이는 사업자는 농림수산물의 표준화 등에 관한 법률(JAS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 #1

- **유기 농산물**: 토양에 최소 2년 이상 퇴비를 사용하거나 금지된 합성 화학물질(농약·비료)을 사용하지 않거나 GMO(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 **유기 가공식품**: 유기 농산물 95% 이상 사용해 약제나 유기가 아닌 원재료 또는 제품 등이 섞이지 않도록 제조한 식품

참고 #2

- JAS 유기인증은 제품 품질 외에도 환경적 요소 등을 함께 평가한다.
- 일본은 미국, EU 등 여러 국가와 유기 농산물 및 유기 가공식품 인증 제도에 대해 상호 인정한다.(미국, 아르헨티나 등 유기 인증 동등성 인정국가에서 수입하는 인증 제품은 일본에서 유기제품으로 표시하여 자유롭게 유통)
-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서 유기 인증 받은 식품(제품)인 경우 우리나라 인증 로고나 일본의 JAS 유기인증 로고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주의

- **우리나라에서 유기 인증받은 식품이라도 일본 농림수산물성 등록인증기관 통해 JAS 인증을 따로 받아야 유기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다.**
- JAS 유기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는 자사 제품에 유기, 오가닉표시와 같은 의미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 JAS 유기 인증 발급 후 12개월 내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로 방문하여 사후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받지 않을 시 해당 인증은 사전 경고 없이 자동 무효 처리된다.
- 검사 후 기관의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증 발급 무효 처리 된다.
- JAS 유기 인증 후에도 연 1회 이상 조사 받아야 한다.



JAS 유기인증 대상

- 1 농산물(곡류, 채소, 과일, 버섯) 등 흙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농산물
- 2 축산물(축산동물의 우유, 달걀, 고기, 생체) 소, 말, 양, 염소, 돼지, 닭, 메추라기 등
- 3 가공식품(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유기 주류 등), 원료의 95%~100% 이상이 상기 1, 2, 3으로 구성되는 가공식품
- 4 사료(목초, 사일리지, TMR 등)
- 5 조류(다시마, 미역, 김 등의 해조류 외에 담수산의 조류나 미세조류 등) 조류를 건조시킨 것, 염장시킨 것도 대상

1~5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 수산물(조류 제외), 주류, 양봉산물, 화장품, 섬유제품, 잡화 등은 유기 JAS의 인증 대상에서 제외

* 수산물, 주류, 양봉산물, 화장품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에 근거한 인증이 가능하다.

□ 인증 신청 절차





스마일케어(Smile care)식 인증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신청

인증 발행
소요 기간
2개월이내

사후 심사 중
미통보심사
1회

2014년 일본 농림수산성이 대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새로운 개호 식품의 애칭이다. 개호 식품이라고 불리던 것의 범위를 고령자뿐만이 아니라, 씹는 것과 삼키는 것,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넓혔다.



| 스마일케어식 로고

건강 유지상 영양 보급이 필요한 사람용 식품에 청색 마크, 씹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식품 황색 마크, 삼키기가 어려운 사람용 식품에 적색 마크를 표시한다. 식품의 딱딱함 등의 정도에 따라 황색 마크 표시의 식품은 4단계, 적색 마크는 3단계로 세분된다.

스마일케어식 식별 마크는 인증을 받은 식품에 붙일 수 있다. 마크를 보면 소비자가 '씹지 않고도 삼킬 수 있는 것', '혀로 눌러도 쉽게 으개지는 것' 등 해당 식품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스마일케어식 식별 마크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

청색마크: 음식을 씹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건강 유지상 영양 보충을 해야 하는 사람 대상
먹는 양이 적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등의 걱정거리를 가진 사람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식품



열량 100g(또는 ml)당
100kcal 이상 / 단백질 8.1g(100kcal당 4.1g 이상) 기준

황색마크: 음식을 씹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 대상
부드러운 정도와 형태에 따라 2~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의 숫자가 낮을수록 부드러운 식품



2등급
씹지 않아도 되는 식품



3등급
혀로 으갠 수 있는 식품



4등급
잇몸으로 으갠 수 있는 식품



5등급
쉽게 씹을 수 있는 식품

적색마크: 삼키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 대상
부드러운 정도와 형태에 따라 0~2등급으로 구분



0등급
그대로 삼킬 수 있는 젤리 형태와 비슷한 식품



1등급
일정 정도 으개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2등급
덩어리가 있는 식품



JGAP 인증

일본
GAP 협회
홈페이지
신청인증 발행
소요 기간
약 4주*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비용 상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이란 농업 생산 공정 관리다.

글로벌 GAP(GGAP)은 독일의 비영리 회사인 FoodPLUS GmbH가 개발한 EUREPGAP가 모태다. 2007년 글로벌 GAP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GAP의 국제 기준이 됐다. 글로벌 GAP은 제3자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글로벌 GAP 표준은 농작물 전반과 축산 외에도 수산 양식에도 적용된다.

GAP을 도입하면 식품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노동 안전 확보, 경쟁력 강화, 품질 향상, 농업 경영 개선과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소비자와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GAP에는 ASI AGAP(아시아 갭)과 JGAP(제이 갭)이 있다. JGAP는 식품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농장에 부여되는 일본의 인증제도이다. 2006년 일반재단법인 일본 GAP 협회가 설립됐고, 2007년부터 제3자 인증제도(JGAP)가 시작됐다.

JGAP의 대상은 청과·곡물·차다. 이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 JGAP의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일본은 JGAP 외에 ASIAGAP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ASIAGAP의 대상은 곡물·청과·차다.

일본 GAP 협회 홈페이지

<https://jgap.jp/gap/certification.html>

JGAP 취득 절차

일본
GAP 협회
홈페이지
신청인증 발행
소요 기간
약 4주*

* 인증기관 및 품목에 따라 비용 상이

JGAP 인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네 단계를 밟아야 한다.

① 'JGAP 관리점과 적합 기준'을 입수
(일본 GAP 협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일본 GAP 협회 사이트 등을 방문해 정보 수집

② 자가 점검·농장 관리 순서 정비해 실천

③ 심사·인증기관에 심사를 신청 후
심사 일정 조정 후 심사수행
*부적합 경우 심사인증기관에 시정조치내용 제출

④ 신청업체가 인증기준 충족 인정 후
심사·인증기관 명의를 인증서 발행
*추가 품목이 있으면 심사·인증기관에 신청,
인정되면 인증서 재발행

JGAP이나 ASIAGAP 심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농장이나 단체뿐이다. 농장이란 개인 농가(개인 사업주)나 농업생산법인 등 하나의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단체란 단체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복수의 농업경영체가 모인 단체를 가리킨다. 일본 GAP 협회와 계약한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이 ASIAGAP이나 J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장 또는 단체를 방문해, ASIAGAP이나 JGAP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 관리·단체 관리가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심사는 농장이나 단체의 상황이나 인증기관에 따라 다르다.

농장이 처음 받는 심사를 '초회 심사'라고 한다. 2년 후에 인증 갱신을 위해 재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갱신 심사'라고 한다. 초회 심사와 갱신 심사의 내용은 별 차이는 없다. 두 심사의 중간에 '유지심사'를 한 번 받아야 한다. 유지심사는 인증기관이 시기를 정한다. ASIAGAP이나 JGAP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본 GAP 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GAP 협회 홈페이지 GAP 대처방법 안내
(<https://jgap.jp/gap/approach.html>)

»중국 해관총서(GACC)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적용 품목	모든 식품 품목 *해관총서 추천 등록 18가지 식품 유형 1. 육류와 육가공품 2. 수산물 3. 유(乳) 제품 4. 제비집과 그 제품 5. 케이싱 6. 벌꿀제품 7. 알과 알 가공품 8. 식용유지와 유지 제조 원료 9.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10. 식용곡물류 11. 곡물제분 공업제품과 맥아 12.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13. 조미료 14. 견과와 씨앗 15. 건조 과일 16.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17. 특수 선식 식품(特殊膳食食品) 18.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유효기간	5년(6개월 전 갱신 신청)
등록 대상	모든 해외 식품 생산·가공·저장 기업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생산, 가공, 보관 불포함
취득 방법	(1) 수출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 중국 해관 총서의 동등성 평가 심사 통과 시 (2) 수출 국가의 주관 정부 당국의 합법적 허가 아래 설립 및 감독을 받는 경우 (3) 식품 안전 위생 관리와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생산·수출을 하며 중국의 식품 법규에 부합될 경우 (4) 해관총서와 수출 해당 국가 간의 검역 요구사항에 부합이 될 경우
관련 사이트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 수출입식품안전국- http://jckspj.customs.gov.cn/
통용 국가	중국 한정
등록 소요 시기	신청 품목에 따라 다름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근거 규정(22년 1월 1일부터 정식시행) -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방법(249호령) -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안(248호령) *이전에 진행된 규정들은 모두 폐지 처리



중국

-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 수도 : 베이징
- 면적 : 약 9,630,000km²(세계 3위, 한반도의 44배)
- 민족 : 한족(약 92%)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
- 행정구역 : 4개 직할시, 23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행정구로 구분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충칭(重慶)
- 통화 : 위안(CNY, 元)(US \$1≐CNY 7.14)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19년도 기준
중국 식품 수입 규모
908.1억 달러



8.2조 위안
(전년 대비
0.3% 증가)

2019년
<중국 식품공업 산업 매출 규모>

2019년 중국 식품 수입 규모 908.1억 달러
(한화 약 116조 8,543억 원)

- 최근 3년간 중국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한 식품산업 발전으로 가공 수준이 낮은 농부식품 가공업의 매출 비중보다 가공 수준이 높은 식품제조업 위주의 매출 비중이 높게 증가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중국 해관총서(GACC) 등록

인증
유효기간
5년

등록연장
6개월 전
신청

중국 해관총서(GACC)는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비슷한 기관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수출입식품안전국이 수입식품 기업 등록도 담당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GACC 등록부터 해야 한다. 해외 식품 제조업체는 GACC에서 등록 번호를 받은 후 GACC 등록 번호는 수입 식품의 중국어 라벨에 인쇄돼야 하며, 그런 다음 중국 세관에 식품을 신고할 수 있다. 2022년부터 해외 식품 제조업체의 GACC 등록 번호가 18자리 수로 변경됐다.

중국 약자	원산지코드	식품분류코드	승인날짜	GACC 일련번호
C	U	S	A	23042302018888

| GACC 등록번호

해관총서는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 제품, 알과 알 가공품, 식용유지와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 제분 공업 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 선식 식품, 보건의약품 등 18가지 식품 유형에 대해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정부가 해당 업체를 추천해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출국이 한국이라면 한국의 식품생산·안전위생을 감독 관리하는 정부 부서가 중국 GACC(해관총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심사·검사를 수행해야 하고, GACC의 등록 요구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심사를 한 후 관련 자료를 해관총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18개 식품군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자체 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서면검사·영상검사·현장검사 등을 통해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평가·심사하고 있다.

제조장소 이전, 법적 대표 변경, 수출국에서 부여한 등록 번호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미 등록된 업체에 유효 감독 관리를 실시, 이미 등록된 업체가 지속해서 GACC 등록 요구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

18개 식품군 등록을 위한 신청 서류

- (1) 중국 수출 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 (2) 중국 수출 기업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 (3) 중국 수출 기업의 신분 증명 서류(수출국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등)
- (4) 중국 수출 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GACC 등록 규정의 요구에 맞다는 성명(聲明)
- (5) 중국 수출 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당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검사 보고서 필요한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과 방호체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체 공장·작업장과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제조공정 설명 등

18개 식품군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 제조업체가 GACC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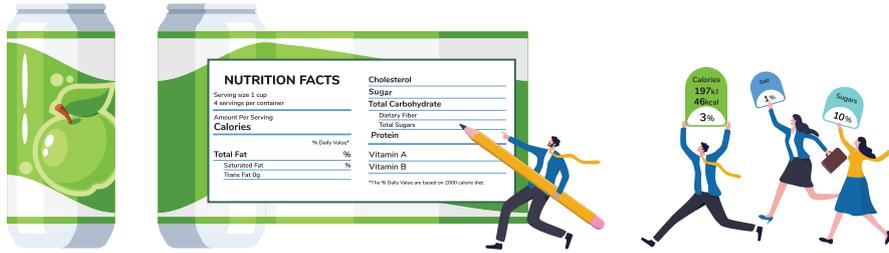
- (1) 중국 수출 기업 등록 신청서 : 업체명, 소재 국가(지역), 제조장소 주소, 법정 대표인, 연락처,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승인한 등록 번호, 등록을 신청한 식품 유형, 제조 유형, 제조 능력 등
- (2) 중국 수출 기업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수출국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등)
- (3) 중국 수출 기업이 GACC 등록 규정의 요구에 맞다는 기업의 성명(聲明)

GACC	품목	AQSIQ
중국 해관총서	정부 기관 이름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시행 중	현재 상태	2018년부터 취소
2019년부터 시행	해외 식품수출업체 등록	2012년~2019년
11자리	수출자 등록번호	11자리

GACC	품목	AQSIQ
중국 해관총서	정부 기관 이름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시행 중	현재 상태	2018년부터 취소
2019년부터 시행	해외 식품제조업등록(저위험군)	2012년~2019년
2019년~2021년 전환 기간: 10자리 2022년 이후: 18자리	제조자 등록번호(GACC-1-1형)	10자리
중국 해관총서	해외 식품제조업등록(중위험군)	해당 카테고리 없음
시행 중	제조자 등록번호(GACC-1-2형)	해당 카테고리 없음
2019년부터 시행	해외 식품제조업등록(고위험군)	2012년~2020년 종료
11자리	제조자 등록번호(GACC-1-3형)	원산지 국가에 따라 자릿수 상이
5년	등록 유효기간	4년

자료출처: <http://transcustoms.com/Articles/Article.asp?id=345>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a) 제품명
- (b) 제조업체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 (c) 전체 성분의 2% 미만을 구성하는 성분을 제외하고, 부피/양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식별된 성분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강제 국가 표준(GB 2760-2011)에 의해 추가로 규제되며 강제 국가 표준에 표시된 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나 이름 또는 INS 코드가 포함된 기능으로 라벨에 식별되어야 한다. 제품 라벨에 특정 식품첨가물의 추가 또는 부족이 강조되어 있다면 해당 식품첨가물의 양이 성분 목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사전 포장된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제품 라벨의 모든 정보는 사실이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생산 날짜와 만료 날짜
- ②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식품 표준
- ③ 규격, 식품 순 가치
- ④ 보관 조건
- ⑤ 생산 허가 번호
- ⑥ 기타 법률·규정 또는 식품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표시 내용

원산지 표시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에 관한 요건을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중국 유기산품 인증

인증기관
위탁 신청

인증
소요 기간
4~6개월

* 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상이

유기산품 생산자·가공업자: 인증기관에 신청 위탁

수입제품 제조·판매·수입·대리업체: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인증기관에 신청 위탁

중국 유기산품 인증은 국가 유기농 표준에 따라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정받아 생산·가공·판매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유기 원료 함량이 95% 이상인 가공 제품(물과 소금 제외)에 대해 유기산품 인증을 해준다. 인증을 취득하면 제품 포장이나 라벨에 '유기(Organic)'라는 글자를 표기할 수 있고 유기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6개월이다.

모든 신청된 유기산품에 대해 검사할 때 검사 결과에서 금지된 물질(농약 잔류)의 함량은 '0'으로 규정돼 있다. 중국 유기산품의 '유기 농업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재배 시 유전자변형 생물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합성된 농약·화학 비료·생장조절제·사료 첨가제 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중국 유기산품 인증 목록' 안에 포함된 제품만 중국 유기산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유기산품 인증목록(127품목)

비가공 식품



채소, 과일, 곡물,
축산물, 수산물 등

가공 제품



가공제품, 수산가공제품, 과즙, 채소즙,
견과류, 유제품, 전분, 곡물 가공제품,
식물성 기름 등

인증 불포함



구기자, 담배 등

유기산품 생산자·가공업자는 인증기관에 위탁해 유기산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제품에 대해 중국 유기산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수입 제품 제조업체·판매업체·수입업체·대리업체는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인증기관에 인증을 위탁해야 한다. CCIC Korea·COFCC·만태인증·ECO CERT 등 인증기관을 통해 유기 유기산품 인증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중국 CQC (중국 질량 인증 중심)가 설립한 CCIC Korea는 상품 라벨링과 통관 업무 지원까지 수행하고 있다.

중국 유기산품 인증 절차는 유기산품 인증 시행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유기산품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각 인증기관별로 인증 절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인증인가조례, 유기산품인증 관리 방법, 유기산품 인증 실시규칙,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라 과정검사, 필요한 생산품과 산지의 환경 검사와 모니터링, 인증 후 감독이라는 통상적인 유기식품 인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유기산품 인증기관이 공표한 인증 절차에도 업무 처리 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유기산품의 인증 비용은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수수료 표준에 근거하여 책정한다. 인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기농 마크를 인증받은 후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판매 요구사항에 따라 라벨과 마케팅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

유기 제품 인증조사표	대기 환경보고서	유기 제품 생산계획
유기 제품 생산관리기준서	사업자등록증(영문)	이미 취득한 유기인증서 등
유기 제품 인증신청서	수질검사보고서	인증 마크
행정위치도	법률법규 리스트	

□ 유기산품으로 인증받기 위한 기본 조건

- ① 생산 장소는 최근 3년 이내에 농약·화학 비료 등 금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종자 또는 종자 동식물은 자연계에서 공급되며 유전자 변형 기술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 ③ 생산업체는 장기적 토지 비옥, 식물 보호, 농작물 윤작과 가금 양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④ 생산 장소는 수토 유실과 기타 환경문제가 없어야 한다.
- ⑤ 농작물은 수확·세척·건조·저장·운송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오염을 받지 말아야 한다.
- ⑥ 정상적 재배에서 유기 재배로의 전환은 2년 이상 전환기가 필요하며 새로 개간한 황무지는 예외로 한다.
- ⑦ 생산 과정에서 완벽한 기록 서류가 있어야 한다.



중국 신식품원료 등록신청(新食品原料注册申报)

중국의 신식품 원료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37조에 따르면 새로운 식품 원재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신규 식품첨가물·신규 식품 관련 제품을 이용해 식품 제조 활동을 하려면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식품 원료는 식품 원재료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요구하는 영양·건강·안전성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독성이 없고 해가 없으며, 인체 건강에 급성·아급성·만성 또는 그 외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신식품원료 범위

- 동물·식물·미생물
- 동물·식물·미생물로부터 분리한 성분
- 원래 구조에 변화가 생긴 식품 성분
- 새롭게 연구 개발한 기타 식품 원재료

중국 신식품원료 신청 시 필요 서류

- (1) 신청서 (2) 신규 식품 원료 개발 보고 (3) 안전성 평가 보고서
- (4) 생산기술 (5) 집행 상관 표준(안전 요구사항·품질 사양·검사 방법 등 포함)
- (6) 라벨과 지침 (7) 국내외 연구 활용 현황과 관련 안전성 평가 자료
- (8) 신고 위임장(신고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제공) (9) 검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정보

수입 신식품원료 등록 신청 시 추가 서류

- (1) 수입한 신식품원료를 수출하는 국가(지역)의 관련 부서나 기관이 발행한 인증자료
- (2) 해당 제품이 해당 국가(지역)에서 생산·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자료
- (3) 수입 신식품원료 생산회사가 위치한 국가(지역)의 관련 부서나 기관이 발행한 생산회사의 심사 또는 인증을 위한 인증자료

중국 신식품원료 등록 시 필요한 시험·검사

- (1) 성분 분석 : 주요 성분과 잠재적인 유해 성분의 시험 결과와 시험방법
- (2) 위생 검증 : 대표 시료의 오염물·미생물의 시험 결과와 시험 방법(3 로트)
- (3) 독성학 평가 결과
- (4) 미생물 약물 내성 시험과 독소 생산성 시험 결과 : 미생물류 신식품 원료에만 적용
- (5) 안전성 평가 의견 : 위험 인자의 식별, 위험 특징의 규명, 노출 평가, 위험성 특징 규명 원칙과 방법에 따라 실시



중국 HACCP

갱신심사
연 1회

CHINA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에 대한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다.

CHINA HACCP는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GFSI)승인 규격이며, 중국의 공인인증원인 CNCA(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이 인증은 중국 외 식품생산업체가 중국 식품 수입 규정과 국가 표준을 더욱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 위생에 위협을 주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요관리점 (CCP)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식품안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수산물·육류·냉동 채소·과일(채소 주스 포함)·고기와 수산물을 함유한 냉동식품·통조림까지 총 6가지 식품군 제조사에 대해 중국 수출 시, CHINA HACCP 인증 획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 수출 시 중국 HACCP 인증을 통해 중국 법규를 만족하게 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면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해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중국 HACCP의 대상 품목은 식품과 외식업이다.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 이후, 유제품의 품질안전 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8일 중국 국무원에서 '유제품 질량 안전 관리 실시 조례'를 제정했다.

제출 서류

신청표	직책 설명서	생산과 계측 설비 리스트
사업자등록증	공장 위치도면	첨가물 리스트 등
제조허가증	작업장 평면도	
HACCP 품질 설명서	주요 원부자재·제품 설명서	
HACCP PLAN 조직구성도	제조공정 흐름도/공정별 묘사	

□ 인증 신청 절차





중국 GAP인증

인증
소요 기간
약 1개월

중국 우수농업관리기준(China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은 1차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환경 보호를 촉진하며, 종사자의 직업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이다.

중국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GAP 인증 목록에 포함된 1차 농산물생산자다. GAP 인증을 받으려면 식품 안전과 추적성, 환경 보호(생물 다양성 포함), 종사자 건강, 안전과 복지(동물 복지), 통합 작물 관리(ICM), 통합 해충 방제(IPC), 품질관리 시스템(QMS)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 GAP은 농작물 재배, 가축과 가금류 사육, 수산 양식, 꿀벌 사육 등의 제품에 적용된다.

인증 심사에서 현장검사가 완료되고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면 28일 이내에 중국 GAP 인증서가 발급된다. 중국 GAP 인증서를 취득하면 인증된 농작물·과일·채소의 소매 포장에 중국 GAP 인증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신청시 필요 서류

1. 영업허가증, 생산허가증 (해당하면)
2. 토지 임대 계약서·재산권 증명서 등 합법적인 토지 사용 증명서
3. '우수농업관리기준 인증 제품 카탈로그'에 포함된 제품
4. 생산 장소의 수질은 국가 표준의 요구사항 충족
5. 인증 신청자는 중국 GAP 인증 요구사항에 따라 관리시스템 구축

43



중국 GMP인증

인증
소요 기간
약 3개월

갱신
심사
연 2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고품질의 우수 식품·의약품·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조사의 원료 구매로부터 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인증제도이다. 중국의 GMP는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뼈대 중 하나를 맡고 있다.

중국 GMP 인증 대상 품목은 영유아 조제분유·유제품 등이다.

제출 서류

신청표	직책 설명서	생산과 계측 설비 리스트
사업자등록증	공장 위치도면	첨가물 리스트 등
제조허가증	작업장 평면도	
HACCP 품질 설명서	주요 원부자재·제품 설명서	
HACCP PLAN 조직구성도	제조공정 흐름도/공정별 묘사	

»베트남 VFA 적합성 공표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Bộ Y Tế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 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
적용 품목	-병 생수, 천연미네랄워터, 식용얼음(식품 가공용 얼음 포함) -기능성 식품 -식품 보충 미량영양소 -첨가제, 향신료,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 -기타 산업무역부와 농업 및 농촌개발부 관할 품목 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등록 대상	베트남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베트남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신청하여, 식품의 적합성을 공표한 후 등록
관련 사이트	https://vfa.gov.vn/
통용 국가	베트남 한정
등록 소요 시기	21일

° 베트남은 자국 내 저품질 식품과 식품 정보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식약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을 설립하여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안전관리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근거 규정**
- 식품 안전법(No. 55/2010/QH12)
 - 식품 안전법의 일부 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 (No. 15/2018/ND-CP)



베트남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수도 : 하노이
-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라오스·캄보디아와 접경
- 면적 : 33만 341km²(한반도의 약 1.5배)
- 기후 : 북부- 아열대성, 남부- 열대 몬순(연평균 기온 24.1도, 습도 월평균 83%, 연평균 강우량은 한국의 약 2.4배)
- 민족 : 베트남족 87% 기타 54개 소수민족. 화교 약 100만 명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 통화 : 베트남 동(VND, đ)(1달러 약 23,000 VND 내외)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베트남 식음료 총매출
628억 5,800만 달러**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베트남 VFA 적합성 공표 등록

인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인증 만료
6개월 이내
갱신 신청서
제출

VFA(Vietnam Food Administration, 베트남 식품청)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의 식품안전국으로, 베트남 국내 식품 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각 시도의 지방 식품 당국은 해당 시도의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식품 당국은 인간의 건강·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위반 사항에 가장 관심이 많다.

베트남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품 적합성을 공표해 VFA에 등록해야 한다. 적합성 공표, 식품 안전 규정 준수 공표 외에도 수입업자나 무역업자는 '유통 센터의 식품 위생과 안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 위생, 관련 거래자의 사업장 안전 기준과 직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이 증명서는 식품을 수입·보관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업체(무역업자)에도 필요하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수입업자 또는 무역업자가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거래하기 위해선 인증서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인증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 등록

베트남 수입 식품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적합성 공표(Conformity Announcement) 또는 식품 안전 규정 준수에 관한 공표 (Announcement On Conformity With Regulation)는 담당 국가 기관에 등록한다.
- 식품 수입 요건 준수 증명서는 각 화물에 대해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다.
- 기능성 식품·미량영양소 강화식품·유전자변형 식품·조사처리 식품은 반드시 자유 판매증명서 또는 위생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수입허가

베트남 식품법은 식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입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해당 식품을 유통하려면 수입업자/무역업자는 다음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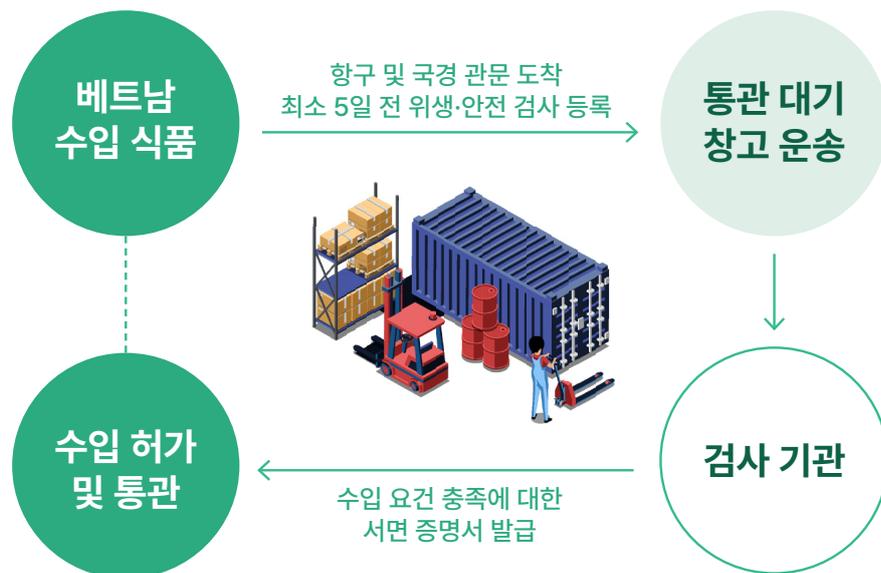
- 적합성 공표 또는 식품 안전 규정 준수에 관한 공표를 VFA에 등록한다.
- 식품 수입 요건 준수 증명서(Certificate of Compliance with the Foods Import Requirements)를 취득한다.
- 식품위생 안전 인증서(Certificate of Food Hygiene and Safety)를 취득한다.

이 과정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수입식품 검사와 시험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를 받는다. 수입식품은 식품 안전 검사 등록을 마쳤을 때만 통관 대기 중 보관을 위해 창고로 운송된다. 통관은 수입 요건 충족에 대한 서면 증명서가 있어야 이뤄진다.

수입자는 물품이 항구나 국경 관문에 도착하기 최소 5일 전에 담당 검사기관에 위생과 안전 검사를 등록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충분한 기술적 여건과 역량을 갖춘 기술 전문기관이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건부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다(예: 특정 시·지방의 위생과 공중 보건 연구소). 통관 검사에 따른 검사 관련 비용과 지연을 피하고자 수출국은 식품 안전 인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베트남과의 협약을 활용할 수 있다. 상호 인정을 평가할 때 수출국의 담당 당국이 베트남 관련 부처에 등록 서류를 보내게 돼 있다.





수출허가/통관

수입 요건은 제품이나 수출국에 따라 다르다. 베트남 담당 당국은 수출국에서 요청하면 수입 식품에 대한 자유 판매 증명서·건강 증명서·원산지 증명서·기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각 포장 식품 유형에 따라 라벨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식품명
- ② 식품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과 주소
- ③ 식품 원산지
- ④ 수량
- ⑤ 제조 일자와 유효기간
- ⑥ 성분 또는 성분량
- ⑦ 경고에 관한 정보(있는 경우)
- ⑧ 사용과 보관 지침



원산지 표시

모든 포장 식품에는 해당 식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국가를 식별하는 문구가 포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는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제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라벨에 기록해야 한다. 제품의 원산지를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Manufactured in”, “Produced in”, “Country of origin”, “Origin”, “Manufactured by” 라는 단어 뒤에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기재한다.

제품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이름은 약어로 표기할 수 없다. 원산지 표시 의무사항은 모든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

» 홍콩 식품 환경 위생부(FEHD) 수입 허가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홍콩 식품 환경 위생부) / Centre for Food Safety(식품 환경 위생부 산하 식품 안전센터)
적용 품목	냉동/냉장육 및 가금류, 계란, 우유와 유제품 및 빙과류(frozen confection) 등
유효기간	품목마다 상이
등록 대상	홍콩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국내 검사 결과를 인정하여 홍콩 식품 환경 위생부에서 허가증 발급
관련 사이트	https://www.fehd.gov.hk
통용 국가	홍콩 한정
등록 소요 시기	약 15일 내외(국내 위생증명서 발급 기간 제외)

◦ 식품이 인체 소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등록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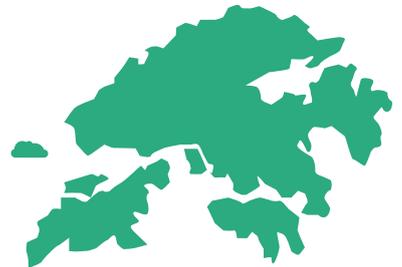
- *근거 규정**
- 홍콩 식품 안전법
 - 공중보건 및 시립의무령/the Public Health and Municipal Services Ordinance(Cap. 132)
 - 식품 안전령/Food Safety Ordinance(Cap. 612)



홍콩

-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위치 : 중국 남동부 해안에 위치(중국 광저우에서 약 144km, 마카오에서 약 64km)
- 면적 : 1,104km²(홍콩섬 81km², 주룽반도 47km², 신계와 도서 976km²)
- 기후 :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기온 22~33도)
- 언어 : 중국어(광둥어), 영어
- 통화 : 홍콩달러(HKD, \$)(US \$1≒HK \$7.78)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홍콩 식음료 총매출
1,324억 홍콩달러**



홍콩 식품 환경 위생부(FEHD)

홍콩 식품 환경 위생부(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FEHD)는 홍콩의 식품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FEHD는 특정 식품 유형에 대한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문제 있는 식품의 수입과 공급을 금지하며, 해당 식품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식품 안전 조례(FSO)는 식품 수입업자와 식품 유통업자를 위한 등록 체계를 다루고 있다. FSO에 따라 FEHD는 식품의 수입·공급을 금지하거나 식품을 회수·압수·격리·폐기하도록 지시하는 식품 안전 명령서를 발부한다. FSO에 따라 식품 거래자는 식품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이동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식품 수입업자와 식품 유통업자는 식품 환경 위생부(FEHD)에 등록해야 한다.

홍콩 식품 환경위생부(FEHD) 수입 허가

홍콩의 기본 식품법은 식품 구매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 부적합 식품·불량 식품 판매와 관련한 범죄, 식품 구성과 표시, 식품 위생, 부적합 식품의 압수와 폐기를 다루고 있다. 판매용으로 제작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식품은 인간이 섭취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구매자가 요구하는 특성·내용·품질을 갖춰야 한다. 식품에 대한 모든 설명은 사실이어야 한다.

식품 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 CFS)

식품 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 CFS)는 FEHD 산하 세 부서 중 하나다. CFS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건강에 좋고, 오염되지 않았으며, 라벨이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 식품과 현지 생산 식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한다.

CFS는 수입된 살아있는 식용 동물에 대한 검사와 통제를 통해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식품과 공중 보건 문제와 관련한 위험관리 조치에 대해 대중에게 조언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관세 등록

식품 안전 조례(FSO)에 따라 식품 수입 또는 식품 유통 사업을 하려면 FEHD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서엔 기업이 수입하거나 도매로 공급하는 모든 식품의 주요 식품 카테고리 및 식품 분류를 명시해야 한다.

수입허가

부패하기 쉽거나 위험성이 높은 다음과 같은 식품을 홍콩으로 반입하려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a) 사냥감, 육류와 가금류
- (b) 우유와 우유음료
- (c) 냉동 과자
- (d) 수산물

이 외의 식품은 수입 허가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통관 중에는 식품 검사가 없다.

수출 허가/통관

일반적으로 식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수출 허가나 통관 검사가 불필요하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식품 라벨은 영어로만, 중국어로만 작성하거나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소비기한 등 표시는 영어와 중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라벨에 두 언어가 모두 사용됐다면 제품명과 원재료명 목록도 영어와 중국어로 모두 표시해야 한다.

각 포장 식품 유형에 따라 라벨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식품명
- ② 원재료명 목록(무게 또는 부피의 내림차순)
- ③ 알레르기 유발 물질 8종 중 하나라도 있을 시 신고
- ④ CODEX 기능 등급과 특정 명칭 또는 식별 번호
- ⑤ 규정된 형식으로 날짜 표시(중문 및 영어 표기)
- ⑥ 사용과 보관 지침
- ⑦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 이름·주소(또는 FDR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름)
- ⑧ 수량
- ⑨ 무게 또는 양

원산지 표시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에 관한 요건을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태국 식약청(FDA THAI)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로고	태국 보건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제외하면 로고 사용 불가능
등록기관	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태국 보건부 산하 식약청, Food Administration Thailand, FDA THAI)
적용 품목	-특별 통제 식품 -표준 식품 -라벨 부착 식품 -일반 식품
유효기간	3년
등록 대상	태국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수입 허가(Import License)가 있는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을 태국 식품의약청에 등록(Product Registration)해야 함
관련 사이트	https://www.fda.moph.go.th/
통용 국가	태국 한정
등록 소요 시기	-특별 통제 식품, 표준 식품: 약 28일 -라벨 부착 식품, 일반 식품: 약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 제품의 품질, 안전 및 효과를 감독하기 위해 도입 ◦ 국제법에 따라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준으로 건강 제품을 규제 및 모니터링 함. 또한, 소비자가 건강한 제품에 대한 지식, 이해 및 올바른 소비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비정부 단체의 국제 경쟁력을 증진하고 강화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p>*근거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식품법 Food Act B.E. 2522(1979) - 태국 공중보건부 통지/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 태국 정부 규정/Ministerial Regulations - 태국 식약청 명령/Order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태국 식약청 고시/Announcement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태국 식약청 규정/Regulations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식품 일련번호, 라벨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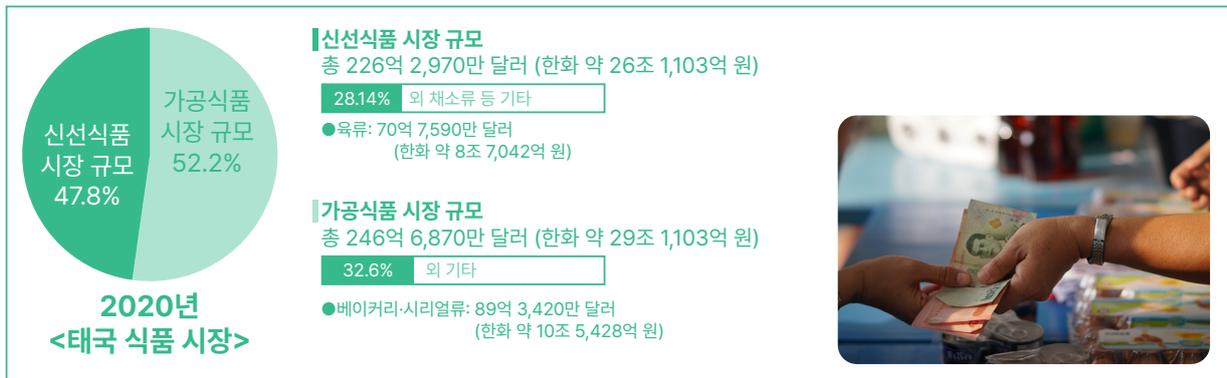
태국

- 국명 :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
- 수도 : 방콕
-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중국·라오스·캄보디아와 접경
- 면적 : 33만 341km²(한반도의 약 1.5배)
- 기후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며, 3계절로 크게 나뉨(3~5월 고온, 6~10월 우기, 11~2월 비교적 저온, 단 푸켓 등 남부는 12월이 우기)
- 민족 : 타이족 85%, 화교 12%, 말레이족 2%, 기타 1%
- 언어 : 타이어(공용어)
- 통화 : 밧 또는 바트(THB, ฿)(1달러 약 36THB 내외)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태국 식음료 총매출
472억 9,840만 달러**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태국 식약청(FDA THAI)

태국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land, TFDA)의 주요 역할은 기업이 태국 식품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조 라이선스 또는 수입 라이선스 부여, 품질관리, 광고 라이선스 등이 포함된다.

태국 FDA는 식품 안전과 관련해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허가증(License) 보유자에게 생산 장소 또는 식품 저장 장소를 바꾸거나 개선하도록 서면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둘째. 허가 없이 제조된 식품 또는 승인된 식품의 제조·수입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셋째.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식품이 불결하거나, 가짜이거나, 표준 이하이거나, 대중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이 명백하거나, 활용 시 해로움이 명백한 용기를 사용했음이 확인된다면 식품 검사 결과를 대중에게 발표할 수 있다.



태국 식약청(FDA THAI) 등록

태국의 식품법은 식품 품질과 안전성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식품법은 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제조와 수입에 적용된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태국으로 식품을 제조나 수입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음료와 주류에는 소비세법이 적용된다.



관세 등록

식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거나 태국으로 수출하려면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관세법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허가

태국으로 판매할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업자는 식품법에 따라 태국 FDA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거나 상품 수출입법에 따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드시 수입 허가(Import License)가 있는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을 태국 FDA에 등록(Product Registration)해야 한다.

태국 FDA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필수 서류 전체를 제출한 날로부터 처리하는 데 영업일 기준으로 약 7일이 소요된다. 상무부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을 때의 처리 기간은 수입 제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태국 비거주자는 FDA 또는 MOC에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허가 처리에 사용되는 언어는 태국어이므로 현지 기관에서 수입 라이선스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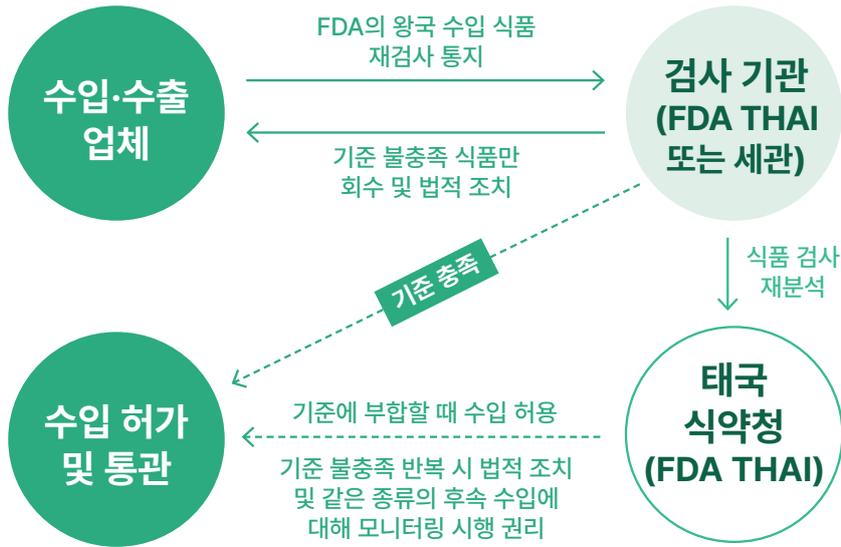
수입식품 검사와 시험

태국에서 판매용으로 수입된 식품은 FDA의 왕국 수입 식품 재검사 통지(Notice of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 Inspection of Foods Imported into the Kingdom)에 따라 국경에서 FDA나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와 분석 결과 수입 식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당국은 수입자에게 문제의 식품을 회수하거나 수입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하도록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이전에 태국으로 수입된 것과 같은 종류의 식품을 후속 수입하는 업체 제품의 검사와 분석 결과 최근 수입된 식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해당 식품을 수입 장소에 시료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재분석 결과 해당 식품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수입이 허용된다. 분석 결과 해당 식품이 계속해서 해당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관련 당국은 수입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하거나 같은 종류의 후속 수입에 대해 모니터링 조치를 시행할 권리가 있다.

수입자가 관련 당국의 명령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충족하도록 식품을 바르게 개선했을 때 TFDA는 모니터링 조치의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식품법은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식품명
- ② 식품 일련번호
- ③ 제조자·포장 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수입식품의 제조국)
- ④ 미터법 단위를 사용한 식품의 무게 또는 양
- ⑤ 양이 많은 순서대로, 중량의 대략적인 비율로 표시된 원재료
- ⑥ 식품 알레르기 정보
- ⑦ 국제번호체계에 따른 첨가물의 명칭과 수
- ⑧ 천연 향료 첨가/인공 천연 향료 첨가/합성 향료 첨가/천연 향료 첨가/인공 천연 향료 첨가
- ⑨ 제조 일자/월/년, 유통기한 일자/월/년 또는 'best before' 라는 문구와 함께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일자/월/년
- ⑩ 경고(있는 경우)
- ⑪ 식품 보관 방법(있는 경우)
- ⑫ 조리 방법(있는 경우)
- ⑬ 영유아 또는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식품에 필요한 사용 설명 방법
- ⑭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원산지 표시

라벨에 수입 식품의 제조 국가가 포함돼야 한다.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TFDA)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대만 위생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적용 품목	건강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첨가물 등
유효기간	품목마다 상이
등록 대상	대만에 식품 등 수입·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특정 식품(건강식품) 수출 시, TFDA에서 요구하는 시험과 증명을 거쳐 서류 신청 후 등록번호 발급
관련 사이트	https://www.fda.gov.tw
통용 국가	대만 한정
등록 소요 시기	신청 품목에 따라 다름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건강식품 관리에서 행정관리 업무, 검사, 조사 등 업무의 통합을 통해 과학적 실증을 기반으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

*근거 규정

- 식품 안전 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 건강식품 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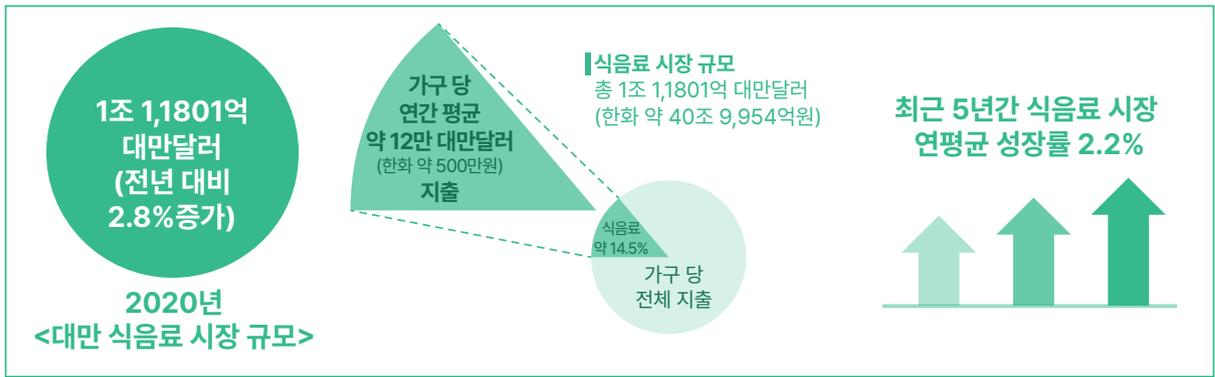
대만

- 국명 : 대만(中華民國, Republic of China)
- 위치 : 동아시아
- 면적 : 36,000km²
- 기후 : 아열대 동북 몬순 기후(연평균 기온 21.5도)
- 언어 : 공용어(중국 표준어), 현지어(민남어)
- 통화 : 대만달러(TWD, NT\$, 元)(US \$1≒TWD \$32.03)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대만 식음료 총매출
1조 1,1801억 대만달러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대만 식약청(TFDA) 등록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FDA).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신규 식품(Novel foods)을 제조·가공·조리·포장·운송·저장·판매·수입·수출·선물로 증정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의 건강 기능성은 TFDA에서 인증한다.

특정 카테고리의 식품을 수입하려면 TFDA에 사전 제품 등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식품첨가물(단일원료), 유전자변형 식품,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일반 식품(정제 또는 캡슐 식품), 건강식품, 특수 식이 식품, 진공포장 콩 즉석식품 등이 포함된다. 정제 또는 캡슐 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면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TFDA 사전 제품 등록 필요 식품



건강식품
소요 기간
16~22개월



유전자변형식품
소요 기간
최소 12개월



특수 식이 식품
소요 기간
최소 6개월



식품 첨가물
소요 기간
약 2개월



캡슐 또는 정제된 일반식품
소요 기간(출원 포함)
약 3개월

제품등록 신청자와 제품 보유자는 현지 법인이어야 한다. 상품등록을 통해 제품 보유자는 등록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입할 식품의 종류에 따라 대외무역국(BOAT), 동식물 위생 검역국(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BAPHIQ) 또는 TFDA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식품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한 문서 요구사항이나 프로세스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완료됐다면 수입 허가를 받는 데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최대 2~3일이 소요된다. 다만 비거주자도 식품 수입자가 될 수 있다.



| 자료출처: Tse-Yue Int'l (<https://cy-clean.com/>)

" 2010년대 초반
잇따른 불량 식품 파동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음 "

대만에서 유기농 표시는 '농업 생산과 인증법'에 따라 인증된 유기농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배·가공·포장해 인증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다. 유기농 제품이나 이를 가공한 제품에는 당국에서 허용한 것 이외의 화학 농약·화학 비료·동물용 의약품·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을 유기농이라고 표시하면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판매자에게 최대 NTD 100만(약 USD 34,08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만의 식품 포장에는 TFDA 등록 표시 외에도 여러 식품 품질 마크를 붙일 수 있다. 대만의 식품 품질 마크 중엔 TFDA가 인증한 건강식품 마크 등 대만 정부가 인증한 식품 품질 마크가 있다.

대만 품질 식품협회(Taiwan Quality Food Association) 등 민간 식품협회가 인증한 대만 품질 식품 마크(Taiwan Quality Food, TQF)도 붙일 수 있다. 외국 건강 등급 또는 로고가 사실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한, 대만으로 수입되는 식품 포장에 외국 건강 등급 또는 로고를 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식품 검사 중 보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외국 건강 등급 또는 로고를 뒷받침하는 입증 필요할 수 있다.



관세 등록

기업이 대만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록 요건이 있다. 수입/수출 등록(import/export registration)이다.

이 등록 절차는 세관이 아니라 대외무역국(Bureau of Foreign Trade, BOFT)에서 밟아야 한다. 수출입 활동을 포함하는 도매·소매 판매 및/또는 국제 무역 사업에 종사하는 대만 법인(외국 회사의 자회사 또는 지점 포함)은 BOFT에 수입업자/수출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수입허가

식품업체가 BOFT에 수입업체/수출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대만으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식품이라면 개별 사업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주류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수입/수출 등록 전에 재무부로부터 주류 수입업자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허가/통관

대만에 반입되는 식품에는 '수입 식품과 관련 제품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규정(Act and Regulations of Inspection of Imported Foods and Related Products)'이 적용된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유전자 변형 원료 등은 TFDA의 특별 검사를 받는다. 이때 식품 수입자는 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관세 상품 코드와 분류에 따라 식품 관련 정보를 TFDA에 신고해야 한다.

TFDA는 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검사 실적이 우수한 식품수입업자에 대해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는 수입업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 및 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식품의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중국어나 공통 기호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 ① 식품명
- ② 성분 함량 목록(두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 혼합했다면 각 첨가물 명칭 별도 표시)
- ③ 알레르기 유발 물질(새우·게·망고·땅콩·우유·계란)
- ④ 새로운 식품이나 재료 사용에 대한 권고문
(ex: 알로에 함유 식품에 해당 제품이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 명시)
- ⑤ 유전자변형식품 원료
- ⑥ 식품 순 중량
- ⑦ 부피 또는 수량
- ⑧ 원산지
- ⑨ 만료일(expiry date)
- ⑩ 영양표시
- ⑪ 제조업체 또는 담당 국내 회사 이름·전화번호·주소

원산지 표시

식품의 용기 또는 외부 포장에는 중국어와 공통 기호로 원산지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는 수입품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해당 식품이 최종 생산되는 장소
2. 가공 또는 제조공정에 둘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이 관련했다면 해당 식품이 최종으로 실질적 변형된 곳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품감독청(BPOM)인증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적용 품목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유효기간	3년
등록 대상	인도네시아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신청, 현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취득
관련 사이트	https://www.pom.go.id/
통용 국가	인도네시아 한정
등록 소요 시기	<p>품목별로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일반 가공식품: 2~6개월 -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 2년 이상 <p>° 국내외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을 감지, 예방 및 제어할 수 있는 의약품과 식품 관리·등록 시스템을 도입</p>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p>*근거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식품법 No 18/2012 - 인도네시아 식약청 규정(Regulation No. 27 of 2013) - No. 83/M-DAG/PER/12/2012 - No. 61/M-DAG/PER/9/2013 - No. 73/M-DAG/PER/10/2014 - No. 36/M-DAG/PER/7/2014

59



인도네시아

-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 수도 : 자카르타
-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다습
- 면적 : 190만km²(한반도의 약 9배)
- 인구 : 약 2억 6,058만 명(세계 4위)
- 언어 : 바하사 인도네시아(총 600여 종의 지방어)
- 종교 : 이슬람교 87%, 기독교 6%, 가톨릭교 3%, 힌두교 2%, 불교 1%
- 통화 : 루피아(IDR,Rp), US \$1≒IDR 15,593.75)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식품시장
886억 5,490만 달러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인도네시아 식품 의약품감독청(BPOM) 등록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종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외에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유통하는데 필요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인종이다. 통상 화장품과 일반 가공식품의 인종을 취득하는데 2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 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등은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한국의 수출사나 제조사가 직접 인도네시아 BPOM 등록을 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는 수입과 유통에 대한 책임 관리제라는 명목으로 수입사만 BPOM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해당 수입사만이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출 기업은 인종 취득과 수출을 위해 수입사에 인종이 유효한 기간 의존하게 된다. 수입사에서 첫 발주 후 추가 수입을 거부하면 수출사와 수입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BPOM 인종을 취소할 수 있다.

BPOM을 취득할 때는 한국의 수출사 또는 본래의 브랜드 사가 인도네시아 수입자에 위임장(LOA)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서류의 브랜드에 대한 독점 권리를 부여한다는 표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독점 조항 표기는 필수가 아니다. BPOM 인종 철회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BPOM 인종 취득 후 신규 수입사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기존 수입사가 BPOM을 취소하고 신규 수입사가 인종을 처음부터 다시 취득하거나, 기존 수입사가 수입하고 신규 수입사에 현지 유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존 수입사가 인종 철회를 거절하면 BPOM의 법무 심사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1년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수입사의 BPOM 인종 등록 이력, 수입사 주소, 수입사의 현지 유통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BPOM 현지 등록접수 비용

접수비·심사 등록비 등 품목별 약 30만 원

건강보조식품 50~100만 원

신 원료 성분 제품 150만 원이상

인종 취득을 위한 서류 구비·검토·인건비 등 실제 취득 비용 실비 이상 소요

수입허가

BPOM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식품과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입 가공식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구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식품 수입 또는 유통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원산지 국가의 관련 수출 회사가 작성한 지정서(계약서 형식)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식품의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 유통 관행(good distribution practices)을 준수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분쟁이 해결된 후에만 등록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BPOM 등록 신청 방법

제조업체 또는 대리인이 BPOM에 등록을 신청한다. BPOM 등록 신청은 소정의 양식에 필요 서류를 첨부해, e-BP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유통 허가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청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신청서에 결함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3회까지 재신청할 수 있다.

① 회사 등록

양식 작성 후 e-BPOM에 필요한 모든 지원 문서를 올린다. 제출 후 회사 등록 결과를 이메일로 전송해 준다.

② 제품 등록

회사 등록 정보가 확인되면 제품의 기술 자료(예: 제품 자료, 원자재 자료, 분석 결과, 영양가 자료 등)를 제출해 제품등록을 할 수 있다. 회사와 제품등록 과정은 일반적으로 식품·음료의 경우 3~4개월 소요 된다. 등록 라이선스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재등록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입증명서 취득 (Surat Keterangan Impor)

현행 인도네시아 수입법에 따라 BPOM 등록 외에도 수입업자는 수입 증명서(SKI 또는 Surat Keterangan Impor)를 받아야 한다.

수입 제품은 제품이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될 때 제품의 보관 기간이 상당 시간 남아 있어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래 유통 기간의 2/3 이상 남아야 한다. BPOM 등록 라이선스가 발급돼야 e-BPOM을 통해 수입증명서(SKI)를 신청할 수 있다.

SKI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BPOM에서 1~2일 이내에 SKI를 발급해 준다.



▶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무역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포장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식품 포장의 일부로 식품에 라벨링을 해야 한다.



- ① 제품명
- ② 사용한 재료 목록
- ③ 순 중량 또는 순 함량
- ④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주소
- ⑤ 만료일(the date of expiration)

라벨의 세부 사항은 아랍어 숫자와 라틴 문자를 사용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라벨에 포함된 문자와 그림은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한다.



원산지 표시

수입 식품이라면 외국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외에 수입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SNI 인증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의 줄임말이다.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인증제도이다.

SNI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강제 퇴출당한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엔 SNI 마크가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마크가 없으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이 국가규격은 국제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다. 해당 인증은 ISO 등 여타 공인된 국제 표준화 인증과 유사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을 지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식품 등을 수출하려면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도 SNI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한다. SNI 강제 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인증 취득이 불필요하지만, 자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기도 한다.

SNI 분류는 Type 1a, Type 1b,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ype N 등이 있다. 식용 소금·카카오 가루·라면·생수 등은 Type 5에 속한다.



인증 종류별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관련 활동이 다르며, 인증비용과 소요 기간도 제각각이다. SNI 인증 신청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입업체 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조업체가 할 수 있다.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또는 제조사의 대표부(대리점·지사·위임사)를 통해 SNI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입사가 SNI 인증을 신청하면 1개 제조사당 1개 브랜드만 인증이 가능하다. 제조사의 위임사(대표부)가 신청하면 1개 제조사당 여러 브랜드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수입과 유통은 브랜드별 권리 수입사가 하게 돼 있다.

SNI 인증 발급 절차

- 1) BSN 웹 사이트에 등록된 SNI 인증 표준 목록을 통해 SNI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2022년 5월 기준 최신 SNI 의무 적용 대상 제품의 목록은 <https://bsn.go.id/main/berita/detail/11826/regulasi-teknis-sni-yang-diwajibka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LSPro)을 확인한다.
-LSPro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가 인가위원회(KAN)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KAN의 인가를 받은 LSPro의 종류·소재지·인증 진행 가능 품목 등은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LSP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수입업자 등 인증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증받은 기업 정관 사본, 영업허가(SIUP), 납세자 고유번호(NPWP), 사업자 고유번호(NIB), 특허청으로부터의 브랜드 등록 증명서(상표 출원서 사용 가능)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 LSPro는 신청 서류의 적합성과 완성도와 기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 5) 제조공정 평가와 제품 표본을 시험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한 관련 운영시스템을 평가한다.
- 6) 넷째와 다섯째 과정에서 수집한 서류와 표본 검사, 제조공정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검토한다.
- 7) SNI 인증 발급과 사후 관리

SNI 인증 준비 서류

인증
소요 기간
6~1년 내외

인증
유효기간
품목별 상이

세부 서류
관련 문의
시험인증기관
(LS pro)

초기 신청 시 필요 서류

신분증(KTP) 사본 / 납세자 고유번호(NPWP) / 영업 허가증(SIUP) 사본/ 회사정관(Akta Pendirian) / 사업자 고유번호(NIB)/ 브랜드 등록 증명서(Bukti Pendaftaran Merk) / 품질 가이드(Paduan Mutu)/ 제조·유통과정 흐름(alurproses produksi dan distribusi)등 및 시험검사·관련 기술적인 서류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SNI 인증에 드는 기간은 근무 일수 기준 41일이다. 이는 시험검사 기간을 제외한 행정 처리 기간으로, 시험 검사 기간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하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인증 기간이 필요하다. SNI 인증 취득비용은 인도네시아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 사이에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할랄 인증

기존 MUI
발행 할랄 로고
24년 10월까지
유효

MUI 인증
종료 3개월 전
새 인증 신고 및
등록 필수

할랄 인증청
(BPJPH)에서
신청

인증
유효기간
4년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8,000만 명으로, 이중 약 87%가 이슬람교도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의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Indonesia Halal Markets Report 2021/2022'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의 할랄 제품과 서비스 소비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였다. 2025년까지 연평균 14.96% 성장해 시장 규모는 2,816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할랄 인증 마크

2014년 제정된 '할랄 제품 보장법(할랄 법, Law No. 33/2014 on Halal Assurance)'은 식품과 음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할랄 법 이전에는 할랄 인증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다. 할랄 법에서 할랄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입·유통·거래되는 모든 제품이다. 할랄 법 적용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할랄 인증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을 설립했다. 할랄 법은 비할랄 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비할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고기·알코올 등 하람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람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할랄 인증제도 시행 및
할랄 인증 발급(BPJPH)시작"**

신할랄 인증제도 홈페이지
<https://bpjph.halal.go.id/>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 인증청의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시행 준비의 부족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는 5년 추가 유예됐다.

일반 가공식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예정 있다.

(*전통의약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화학·유전공학제품 : 2026년 10월 17일 계도기간 종료 예정)

신규 할랄 인증을 받았다면 새 할랄 인증 로고를 사용해야 한다. MUI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MUI 인증 종료 3개월 전에 할랄 인증청(BPJPH)에 새 인증 신고와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 신할랄 인증 신청 절차



인도네시아에 식품 등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LPH(할랄 심사기관)를 선택해 할랄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2021년 39호 할랄 제품보장법 개정에 따라 해외 할랄 심사기관(LPH)으로 LPPOM MUI, Sucofindo Indonesia, Surveyor Indonesia 등 3곳이 지정됐다. 할랄 심사 절차의 표준 업무 지침은 MUI 산하 단체가 LPPOM MUI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수출사 등은 온라인을 통해 할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4월 20일부터 LPH(할랄 심사기관)에선 할랄 인증 명칭을 기존 'Certification halal'에서 'Halal Decree'로 바꿔 발급하고 있다. 할랄 확인서(Halal Decree)의 유효기간 4년이다.

할랄 인증청(BPJPH)이 상호 승인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없이 별도의 등록 과정만 거치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2023년 11월 18일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한국 민간 할랄 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한국 할랄 인증원(KHA)간에 할랄 인증 상호인정협약(MRA)이 체결되었으며 할랄인증청(BPJPH)은 한국 외에도 여러 국가들과 상호인정을 맺었다.

상호인정협약(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은 인도네시아 BPJPH와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 맺는 협약이다. 협약이 체결돼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받은 할랄 인증도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된다.

해외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절차

신청 시
SINALAL
계정 필요

인도네시아 내
수입자 또는
위임자 제출



일반 등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SIHALAL계정이 요구된다.
해외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신청서는 인도네시아 내 수입자 또는 위임자가 제출하게 돼 있다.
해외 제품 신청 시 다음 내용을 추가 준비해야 한다.

제출 서류

수입자가 작성한 신청서(수입자 레터헤드와 직인 포함)와 위임장
외국 사업자(PULN)가 발급한 대표 위임장
해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인도네시아 수입자의 사업자 식별번호(NIB)
대표 위임자 명의로 개설된 SIHALAL 계정 사용

할랄 인증 일반 등록 홈페이지
<https://ptsp.halal.go.id/>

SIHALAL로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대행업체 통한 인증 진행 가능)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한국 제조사와 인도네시아 위임사) /
할랄 관리팀(할랄 관리팀 필수 포함, 무슬림 확인 가능 서류 제출 필요) /
제품 목록·재료 목록 / 제품 제조 공정도 / 할랄 보장시스템(Halal Assurance System) 설명서 /
할랄 관리 책임자의 할랄 감독자 교육 훈련 수료증(BPJPH 지정이나 승인 훈련기관)
할랄 감독자 자격증(BNSP 지정 전문 인증기관)(수출 제조사 또는 인도네시아 위임 사 중 1곳 필수)

할랄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제품명
- ② 성분목록
- ③ 식품첨가물
- ④ 생산자·수입자 이름 및 주소
- ⑤ 할랄 정보
- ⑥ 생산 일자 및 코드
- ⑦ 소비기한
- ⑧ 유통 허가 번호
- ⑨ 특정 식품 성분의 원산지
- ⑩ 알레르기 유발성분
- ⑪ 2차원 바코드

인도네시아, 국내 할랄 인증 인정, 상호인정협약 체결

"2023. 11. 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 민간 할랄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KMF), 한국 할랄 인증원(KHA)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 체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과 한국의 민간 할랄 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KMF)·한국 할랄인증원(KHA) 간 할랄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이 체결됐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의무화(신선 농산물 제외)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의 인증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민간 할랄 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할랄 인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라 현재 할랄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농식품 수출기업은 할랄 인증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할랄 인증 비용, 상담, 성분분석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식품연구원(해외 식품 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사진 출처: 농림축산식품부(<https://bit.ly/3TMchL2>)



- *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에 상호인정 심사 신청, 2022년 12월 서류심사·현장 심사를 완료
- * 2023년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농식품부는 인도네시아종교부와 할랄식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 필리핀 FDA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로고



등록기관

FDA(필리핀 식품의약품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적용 품목

가공식품 전반(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

유효기간

1~5년

등록 대상

필리핀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필리핀 소재의 제조, 수입, 유통 거래 또는 재포장 등에 종사하는 업체가 신청하여 등록

관련 사이트

<https://www.fda.gov.ph/>

통용 국가

필리핀 한정

등록 소요 시기

품목별로 상이

◦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도입함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근거 규정

- 식품 시설 허가에 관한 규칙 및 규정(Administrative Order No. 2014-0029)
- 2009년 식품의약품청(FDA) 법(Republic Act No. 9711)

67



필리핀

- 국명: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수도: 마닐라
- 면적: 약 30만km²(한반도의 1.3배)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 언어: 영어·타갈로그어(공용)
- 종교: 가톨릭 83%, 개신교 9%, 이슬람교 5% 불교와 기타 3%
- 통화: 페소(PHP, ₱), US \$1≒PHP 55.49)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필리핀 식품시장
822억 9,782만 달러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필리핀 FDA 등록

필리핀 FDA는 필리핀 보건부(DOH) 산하의 규제 기관이다. 필리핀은 일부 수입 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필리핀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수입 허가서·등록증명서·영업허가증이 필요하다. 가공식품 수입업체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절차를 준수해 영업허가증(LTO, License to Operate)을 발급받고, 제품등록(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을 완료해야 한다.

필리핀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필리핀 FDA의 LTO를 받고 제품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필리핀 FDA 등록 절차는 신청 서류 제출, 담당 부서 검토, 제품등록 승인의 순서로 이뤄진다. 영업허가증(LTO) 발급 절차는 필리핀 FDA 공식 홈페이지(<https://www.fda.gov.p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제출 일정 안내문을 받기 위해선 FD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가능한 한 빈칸 없이 작성해 담당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LTO 발급 신청위한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제품 목록위치도
업체등록증명서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
업체 소재지 증명서	제조업체 배치도 등

발급
소요 기간
약 60일

제품등록을 위해선 먼저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인지를 확인하고, 상품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 가공식품은 그 제품이 안전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필리핀 FDA 홈페이지에 제품등록을 해야 필리핀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수입허가

등록 증명서는 수입 전에 필리핀 FDA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필리핀에 소재한 기업 또는 사업장만 상품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발급 시 1년간 유효하며, 갱신한 뒤에는 5년간 유효하다.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해당 국가의 규정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필리핀 FDA 등록 시 가공식품 카테고리

카테고리 1
등록 소요 기간
3~4주

카테고리 2
등록 소요 기간
3~6개월

필리핀 FDA는 가공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2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카테고리별로 필리핀 FDA 등록 소요 기간과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카테고리 1(저위험 가공식품)

빵 및 관련 제품, 사탕과 과자, 비알코올음료, 음료 믹스, 커피, 차, 소스, 드레싱, 젤라틴, 유제품, 수산물, 과일, 채소, 포장 육류제품, 면, 기름, 지방, 스낵, 시리얼, 설탕 및 관련 제품



카테고리 2(중·고위험 가공식품)

알코올음료, 식품 보조제, 차, 병에 담긴 생수, 영유아와 어린이용 식품, 특별식이 식품, 유전자변형 식품, 필리핀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식품 등

가공식품 등록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필리핀 FDA 서식) / 제품 라벨 / 제품 사진 / 기술·영양·의학·건강 관련 주장을 입증할 서류(기술 또는 영양 관련 영양보고서, 시장조사 자료, 과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 등) /
-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 수출업체가 제공) /
- 해외대리점 계약서(Foreign Agency Agreement, 수출업체가 제공) /
- 대리점 임명장(Appointment Letter, 수출업체가 제공) /
- 판매 대리권 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수출업체가 제공) /
- 우리나라 식약처 등 당국이 발행한 위생/검역 관련 서류(수출업체가 제공) /
- 제조업체 GMP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서 /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 ISO 22000 인증서 또는 HACCP / 자유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제품명
- ② 상품명 혹은 상표
- ③ 성분 목록(높은 함량 순으로 기재)
- ④ 중량(실 중량 표기)
- ⑤ 제조업체·포장업체·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회사 이름·전화번호·주소
- ⑥ 제품번호(제품 포장 용기에 양각 혹은 영구적인 형태로 기재)
- ⑦ 보관 조건(실은 보관이 아닌 제품이라면 보관 조건을 명시)
- ⑧ 소비기한('일/월/연'으로 표기하며 날짜와 연도는 숫자, 월은 문자로 표기)
- ⑨ 알레르기 정보(성분 목록 아래에 기재)
- ⑩ 섭취 방법(식품의 적절한 섭취법을 기재)
- ⑪ 영양 정보(단백질·탄수화물·지방·나트륨·열량을 표의 형태로 표기)

»싱가포르 SFA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SFA(싱가포르 식품청, Singapore Food Agency)
적용 품목	모든 수입 식품 - 육류 및 어류, 과일 및 채소류, 신선란,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식품 전반
유효기간	1년
등록 대상	싱가포르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관련 사이트	https://www.sfa.gov.sg/
통용 국가	싱가포르 한정
등록 소요 시기	1~5일

- 싱가포르는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료품의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엄격히 관리
- 싱가포르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식품 수입업체의 수입 라이선스 및 등록 제도 운용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근거 규정**
- Control of Plants Act(Chapter 57A)(2000 Ed)
 - Sale of Food Act(Chapter 283)(2002 Ed)
 - Wholesome Meat and Fish Act(Chapter 349A)(2000 Ed)
 - Animals and Birds Act(Chapter 7)(S 27/2011)



싱가포르

- 국명 :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
- 위치 : 아시아 동남부 말레이반도 최남단
- 면적 : 716km²
- 인종 : 중국계(75.9%), 말레이계(15%), 인도계(7.5%), 기타(1.6%)
- 언어 : 영어(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 통화 : 싱가포르 달러(SGD, S\$)(US \$1≒SGD 1.34)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싱가포르 식품시장 규모
77억 6,350만 달러**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싱가포르 SFA(Singapore Food Agency) 등록

기존 식품 안전과 동물 위생규제를 통합 관리하던 싱가포르 농식품 수의청(AVA)이 2019년 4월 1일 싱가포르 식품청(SFA, Singapore Food Agency)과 동물 및 수의청(AVS) 등 두 기관으로 분리됐다. 싱가포르 식품청이 식품 안전과 식량 보안 감독기관으로서 모든 식품 관련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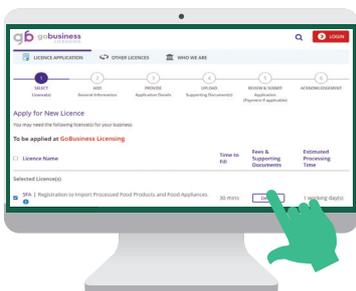
싱가포르 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수입·수출·운송을 위해선 싱가포르 SFA의 무역업자 라이선스(Licence) 발급 또는 등록(register)을 마쳐야 한다. 이는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공란, 가공식품과 식기류 수입업자는 라이선스 취득(허가) 없이 등록만 돼 있으면 수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 육류·생선 제품을 수입·수출 또는 옮겨 실거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수입·옮겨 실거나 신선한 식탁용 계란을 수입하려면 SFA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가공식품과 식품 기구 등을 수입하려면 SFA 등록이 필요하다.

□SFA 라이선스(허가) 또는 등록 사전 준비



5
웹사이트 통해 라이선스 발급·등록 신청

싱가포르 SFA의 라이선스(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선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회계 기업청(ACRA)에 업체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UEN) 발급, 싱가포르 CPF Medisave 등록, 비용 납부를 위한 GIRO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이어 Licence One 웹 사이트를 통해 라이선스 발급과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싱가포르 SFA 라이선스 신청 사이트
<https://licence1.business.gov.sg/licence1/authentication/showLogin.action>



| 싱가포르 Go Business Licensing로고

건강식품의 제조와 수입업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싱가포르 SFA 또는 보건과학청(HSA)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복용량 없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건강식품 또는 건강보조제는 SFA, 서양 의약품·중의학 의약품·화장품 등은 HSA가 담당한다

SFA 등록 후 회사나 사업의 세부 사항(예, 회사 주소·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즉시 SFA에 알려야 한다. Go Business 라이선스 웹 사이트에 로그인 후 회사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싱가포르에 식품 등을 수출하는 회사가 더 이상 사업 및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SFA에 라이선스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 취소를 위해선 Go Business 라이선스 웹 사이트에 로그인 후 라이선스/등록 취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소 요청이 수락되면 대치어 없음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된다.

LTO 발급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	제품 목록위치도
업체등록증명서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
업체 소재지 증명서	제조업체 배치도 등

발급
소요 기간
약 60일

SFA에 라이선스·등록 신청 절차

1) 회계기업청에 회사 등록

-무역 회사 또는 사업체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싱가포르 '회계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등록해야 한다.

ACRA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회사에 고유 법인 번호(UEN)를 발급한다.

2) 싱가포르 세관에 UEN 등록과 활성화

-식품을 수입·옮겨 신기·수출하려는 업체는 싱가포르 세관에 UEN을 등록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세관(65-6355-2000)에 문의한다.

3) GIRO 계좌 개설과 유지

-수수료와 허가증 지급을 위해 SFA를 통해 GIRO 계정을 개설하고 유지한다.

*GIRO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면 새로운 GIRO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SFA에 GIRO 계정이 없으면 라이선스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새 GIRO 계정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GIRO 계정을 유지해야 한다.

4) 추가 요구사항 확인

□ 라이선스 신청 및 등록 방법



1단계

Go Business Licensing 웹 사이트를 통해 관련 라이선스 또는 등록 창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한다.

2단계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한다.
GIRO를 통해 또는 전자 결제(NETS 또는 신용 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한다.

□ 라이선스와 등록 비용



육류·생선제품
수입·수출·환적 허가증
연간 S\$84



신선과일·채소
수입·수출·환적 허가증
연간 S\$378

일반 서비스: 영업일 기준 1일 소요
특급 서비스: 당일 처리, 라이선스 비용과 동일한 추가 비용 지급



*식용 계란
수입 허가 무료



*가공식품과 식품기준
수입업 등록 무료



*동물사료
수입 등록 무료

* 각 등록 소요 기간: 영업일 기준 1일

라이선스·등록 갱신

1단계: SFA는 라이선스 만료 2개월 전에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 갱신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2단계: 정부 무역 라이선스를 갱신하는 자영업자라면 Medisave 기부금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한다.

3단계: 갱신 요청을 제출하려면 GoBusiness 라이선스 웹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4단계:

- 식품 회수 계획에는 식품(식품 기구 포함) 수입자가 식품 회수 중에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자세히 설명돼 있다.
- 모든 식품과 식품 기구 거래자는 식품 회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의 세부사항이 최신인지 확인하고 회사의 식품 리콜 계획을 첨부한다.
- 식품 회수 계획은 첫 번째 갱신 시 필요하고 이후 갱신 시 2년마다 한 번씩 제출한다.
- 신선 계란 수입업자는 식품 회수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단계: 갱신 수수료 지급

- 갱신 수수료는 GIRO를 통해 또는 전자 결제(NETS 또는 신용 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 연간 갱신 수수료는 라이선스/등록 신청 시의 라이선스 수수료와 같다.

6단계: 갱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SFA로부터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된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제품명
- ② 원료 정보
- ③ 알레르기 정보
- ④ 용량(순 중량)
- ⑤ 제조업체 정보
- ⑥ 원산지
- ⑦ 소비기한
- ⑧ 사용 방법
- ⑨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특정 감미료
- ⑩ 특별한 목적을 지닌 식품 라벨 저열량·무가당 등 영양 정보
- ⑪ 특정 카테고리 식품에 대한 라벨링
- ⑫ 특정 원료에 대한 정보 표기

원산지 표시

74

수입식품의 라벨에 원산지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SIRIM 임의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SIRIM(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적용 품목	설탕, 밀가루, 소스류, 즉석 면류 등 가공식품 일부에 대해 적용
유효기간	1년
등록 대상	말레이시아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SIRIM QA International Bhd 질의서 양식 작성 제출
관련 사이트	https://www.sirim.my/
통용 국가	말레이시아 한정
등록 소요 시기	약 2개월 이상

◦ 인증 도입을 통해 제품 품질 및 안전이 입증된 제품만 말레이시아 내 유통할 수 있도록 관리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근거 규정

- 말레이시아 표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 회사법(Companies Act 1965)
- 말레이시아 식품법(Food Act 1983)

75



말레이시아

- 국명 : 말레이시아(Malaysia)
- 수도 : 쿠알라룸푸르
- 민족 : 말레이계(62%), 중국계(21%), 인도계(6%), 외국인 및 기타(11%)
- 면적 : 33만 252km²(한반도의 1.5배)
- 언어 : 말레이어(공식어), 영어(통용), 중국어
- 통화 : 링깃(MYR, RM), US \$1≒MYR 4.67)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말레이시아 농식품 시장 규모
374억 340만 달러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말레이시아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인증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은 말레이시아 재무부 산하의 기관이다. 제품 표준과 품질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SIRIM 인증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 인증이다. 이 인증은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지만, 일부 품목을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려면 의무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제품 인증은 원칙적으로 의무(Mandatory)가 아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의무 인증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려면 식품 등이 의무 인증 품목에 해당하면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말레이시아로 수입과 유통을 할 수 없다.

임의 인증 품목에 해당하면 표준(Standard)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 인증이 가능하다. 의무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해당 인증 표준을 따라야 한다. 의무 인증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SIRIM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SIRIM은 해당 표준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신청자에 인증 진행 여부를 알려주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 인증이 가능한지는 SIRIM에서 결정한다. 특정 제품에 말레이시아 표준(Malaysia Standard)이 존재하는지는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 사이트(<https://www.jsm.gov.my/>)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의무 인증이 아니라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의무 인증·임의 인증 모두 SIRIM 마크를 사용한다.



신할랄 인증(JAKIM)

인증비용
2,100링깃
(아세안 회원국
한정)

인증비용
2,100달러
(아세안 외
국가)

할랄의 사전적 의미는 '허용된 것'으로,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한다. 과일·채소·곡류 등 모든 식물성 식품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이 이에 해당한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이 할랄이다. 할랄의 반대는 '금기시되는 것'이라는 뜻인 하람(haram)이다.

할랄 제품은 하람 성분이 들어가지 않거나, 하람 방식으로 제작되지 않은 제품을 가리킨다. 육류는 할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에서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것만 수출할 수 있다.

콜라젠 등 동물성 성분과 알코올이 들어있지 말아야 한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한 동물, 알코올성 음료와 취하게 하는 모든 식품, 육식동물과 맹금류와 이런 하람 성분을 함유한 모든 가공식품이 금지돼 있다. '부적절하게 도축한 동물'이 금지된다는 말은 섭취가 허용된 동물이라도 이슬람 도축방식으로 도축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 할랄푸드 템페(tempeh)

말레이시아에서는 할랄 인증과 관련해 세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할랄 인증 지침과 표준화 작업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산하의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가 맡고 있다.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에서 담당한다. JAKIM은 이슬람 복지를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총리실 산하 단체다. 통상산업부 산하 단체인 할랄 산업개발 공사(HDC, Halal Development Corporation)는 할랄 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와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JAKIM은 할랄 인증 개발과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HDC는 말레이시아 할랄 브랜드 개발, 홍보와 마케팅, 할랄 관련 상품과 서비스 홍보 업무에 주력한다.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KMF 인증을 포함해 46개국 85개의 할랄 인증과 상호 인정된다. 말레이시아 내 유통되는 할랄 제품은 JAKIM 인증 마크 또는 JAKIM과 상호 인정되는 할랄 인증의 마크만 부착할 수 있다. JAKIM이 인정했지만,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미국 IFANCA 인증 등을 활용해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JAKIM 인증신청 대상자는 제조업체·생산자·대리점·상인·재포장업체·도축장·물류 기업이다. 해외 업체의 JAKIM 할랄 인증 비용(연간 수수료)은 아세안 회원국 업체 2,100링깃, 아세안 외 국가 2,100달러다. 검사 부대비용(항공료·숙박료 등)은 신청기업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JAKIM이 인정하였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취득이 수월한 미국의 IFANCA 인증 등을 활용하여 말레이시아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 말레이시아 신할랄 인증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로컬: <http://apps.halal.gov.my/myehalal/pemohon/>
- 해외: <http://apps.halal.gov.my/international/e-halal.php?new=>

- 2) 서류 제출(온라인 등록 후 5일 이내)
- 3) 수수료 청구서 발송(서류에 이상 없으면 1~5일 이내)
- 4) 수수료 납부(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 5) 현장실사와 시료 분석(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
- 6) 인증서 승인
- 7) 인증서 발급(인증서 승인 후 5일 이내)

신할랄 인증 취득 필요 서류

회사소개서 / 법인 등록 사본 / 원료 목록 /
 인증제품 소개서 / 제품 제조공정과 절차 /
 공장 및 부지 지도 / 포장 재질 종류 /
 재료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이름·주소 /
 제품에 사용되는 생산 원료에 대한 할랄
 인증 사본 / 타인증서(HACCP·ISO·GHP·GMP)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절차 간소화 추진 소식

"2023. 9. 9~12 개최된 글로벌 할랄 정상회담(GHaS)의 할랄 부문 포럼에서 말레이시아 부총리 아마드자히드는 JAKIM 할랄 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승인 기간 단축 지시"

- 부총리는 JAKIM에 할랄 인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1년에 3회 워크숍을 추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시
- JAKIM은 할랄 인증 정책 2.0을 도입(국내 할랄 인증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0일, 해외 신청은 3달 내)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신속 이니셔티브 적용함으로써 인증 신청부터 취득까지 23일 내로 단축될 예정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https://bit.ly/41kqjY>)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3RrRmeB>)



▶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제품명
- ② 성분
- ③ 중량
- ④ 제조사 및 수입업체 정보
- ⑤ 소비기한
- ⑥ 보관방법(소비기한이 보관방법을 따라야 할 경우)
- ⑦ 기타 정보(영양 정보·GMO 여부·식품 첨가제·조사처리 식품 여부 등)
- ⑧ 수입식품은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병행하여 표기 가능

농 식품 해외 인증 · 등록 정보 종합 가이드

2.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북미권

미국

미국 FDA 등록 / 미국 식품시설등록 /
USDA Organic 인증 / 미국 GRAS제도

캐나다

SFC 라이선스 / 노블푸드

»미국 FDA 식품 시설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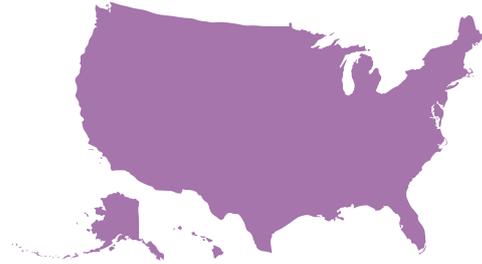
로고	
등록기관	FDA(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적용 품목	<p>FFR(식품 시설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소비되는 동물사료,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식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시설(육류, 가금류, 육가공품, 달걀 등의 경우, 미국 농무부(USD) 산하의 위생 검역국(FSIS, Food Safety & Inspection Service)에서 검사 및 규제를 시행함) <p>FCE(식품 제조공장등록, Food Canning Establish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 및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 제조 시설 <p>SID(공정등록, Scheduled process Identific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 및 저산성식품(Low-Acid Canned Food)
유효기간	-
등록 대상	미국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FFR(식품 시설등록)은 국내 기업이 온라인 FDA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록이 가능하나, 반드시 미국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하여 FFR 진행
관련 사이트	https://www.fda.gov/
통용 국가	미국 한정
등록 소요 시기	-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p>◦ 미국에서는 식품 안전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을 규제하고 있음</p> <p>*근거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연방 규정 제21편(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415조(FD & C Act(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 section 415) -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미국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비와 대응 법률 305조 (Bioterrorism Act section 305) - 공정 포장 및 표시법(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미국

- 국명 :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수도 : 워싱턴 DC
- 면적 : 9,826,675km²
- 언어 : 영어(일부 관공서는 스페인어도 사용)
- 종교 : 개신교 약 50%, 개신교 약 20%, 유대교와 이슬람교 등
- 통화 : 미국 달러(USD, \$), 1,290.5 KRW ≒ US \$1

| 자료출처: 외교부, KATI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미국 식품 시장 규모
8,987억 달러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미국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록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 즉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미국 보건복지부 DHHS(Department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 연방 정부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 식품 기업은 Food 분야 FDA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미국 세관에 제품이 억류(압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FDA 등록(Registration)과 승인(Approval)에는 차이가 있다. 'FDA 승인'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등록은 FDA에 기업 정보·제품 정보·공장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 시에는 식품 등 제품의 시험·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 제조·가공·유통하는 시설은 FDA 시설등록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또한 미국 FDA에 등록을 거쳐야 한다. FDA 마크는 미국 FDA의 로고로, 수출 제품에 표기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FDA 승인·인증·허가 등의 문구를 제품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FDA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는 식품·동물사료·식품첨가물·저산성 식품(LACF)·산성화 식품 등이 있다. 산성화 식품(Acidified Food)이란 pH 4.6 이하이고, 수분 활성도 0.85 이상인 식품을 가리킨다. 저산성 식품과 산성화 식품은 미국 내 유통 전 또는 미국으로 수출하기 전에 제조공장과 제품 생산 공정을 등록해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저산성과 산성화 식품의 제조공장)와 SID(Submission Identifier, 제품 생산 공정) 번호를 받아야 한다. 육류나 가금류 제품(미국 농무부에서 관리)을 제외한 모든 식품, 병 포장의 식수, 도수 7% 이하(7% 이상 미국 재무성에서 관리), 음료 등도 FDA 등록을 받아야 한다.

□ 미국에 식품 수출 과정



○ 식품 시설 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 번호
부여
2주 이내

2년 주기
짝수 연도
10~12월 사이
갱신 필수

식품 시설 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은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공급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FDA에 FFR를 진행하고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FFR 신청 시 '국제 사업자등록 번호'로 알려진 'DUNS number'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FDA 등록 후 '식품 시설등록 번호'를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 미국 수출 회사가 새로운 식품 카테고리를 생산하거나 제품명을 변경하면 FDA 등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식품 수출 전에는 반드시 사전 신고(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s)를 하게 돼 있다. 사전 신고는 미국에 주재하거나 사무실을 가진 식품 수입자나 에이전트가 하면 된다.

사전신고필요 서류 및 정보

물품 정보	선적국
제조자와 발송자	예상 도착항
원산지(국가)	도착 일시 등

사전신고 신청자

미국에 주재 또는 사무실을 가진 식품 수입자	미국 내 에이전트
--------------------------------	--------------

FDA 식품 등록엔 미국 내 대리인(Agent)가 필요하다. 'FDA 식품안전 현대화법'에 따라 미국 외의 회사는 FDA 검사 때의 의사소통과 동의를 위하여 FDA 미국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한다. 미국 내 대리인의 조건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내 사업장을 유지하며,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전화를 받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FDA가 외국 공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으로 수입 또는 수입되는 외국 공장 식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하는 것도 대리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FDA는 외국 업체에 직접 또는 신속하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 관련 정보나 문서를 미국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외국 업체에 동일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에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FR 번호(제조시설과 수출자의 시설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가 필요하다. 'FDA#' 또는 'FDA 등록'이라고도 한다. FFR는 2001년에 미국에 테러 발생 이후에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미국 바이오 테러리즘 법(Bioterrorism Act)에 근거해 FDA는 미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의 FDA 등록을 의무화했다.

FFR 번호를 받은 후 이를 FDA 인증이나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과대·허위광고가 될 수 있다. FDA는 공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거나 인증을 직접 하지 않는다. 다만 VQIP(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 수입자 적격제도)가 생겨서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FSMA 규정 준수를 심사한 뒤 이를 VQIP으로 승인해 주는 사례가 있지만 이도 FDA 인증이나 허가와는 무관하다. FFR 등록은 무료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FDA에 OAA(<https://www.access.fda.gov/oaa/>)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 FFR 등록 시 필요 정보(영문 작성)

- ① 회사명·회사주소·회사 전화번호·Fax(옵션)
- ② 회사대표 이름 / 담당자 이름
- ③ 담당자 이메일 주소
- ④ 생산 품목
- ⑤ 미국내 에이전트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Fax(옵션) 등



| 출처: FFR 등록 웹사이트
(<http://www.access.fda.gov/oaa/>)

| FFR 등록 방법 등 가이드 참고자료

DUNS넘버발급 및 FFR등록방법(사용자가이드) 2022.10
- 한국식품연구원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https://bit.ly/3Rxn2PC>)

FFR 등록 신청은 본인 또는 US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우선 OAA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통해 ID를 받는다. 비밀번호는 본인이 지정할 수 있다. 자문 업체가 대신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FDA 규정상 ID와 비밀번호를 해당 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으면 다시 접속해 시설등록을 할 수 있다.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클릭한 뒤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다 입력하고 제출하면, FDA에서는 US 대리인에게 먼저 확인 이메일을 발송한다. US 대리인이 확인해야 FFR 번호가 부여된다. 보통 며칠에서 2주 정도 걸린다. FFR 등록 후 2년에 한 번씩(매 짝수 연도) 갱신해야 한다. FDA 온라인 ID와 비밀번호는 잘 관리해야 한다.



USDA Organic 인증

인증 발행
소요 기간
6~10주

인증
유효기간
5년

미국 농무부(USDA)는 미국 내의 영농(Farming)·삼림(Forestry)·농산물을 담당하는 연방 부서다. USDA에선 유기농(Organic)을 '토지 위 자원의 순환을 돕고 생태계의 균형을 촉진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문화적·생물학적·기계적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정의했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취급된 식품 혹은 농산 제품을 '유기농 농산물'이라 한다.

미국 농무부는 2002년 10월 21일부터 유기농으로 표시된 모든 식품이 준수해야 하는 국가 표준을 정했다.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USDA Organic)은 유기농 규정에 따라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유제품·축산물·수산물 등에 발급되는 인증이다.

미국에서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표시해 판매되는 모든 식품·농산물·상품은 반드시 USDA의 유기농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기농 표시를 하려면 USDA가 공인한 인증기관에서 USDA 상세 규정에 따라 '유기농'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현재 미국 내 공인 유기농 인증기관 리스트는 'ORGANIC INTEGRITY DATA 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상품이 USDA의 규정에 충족되지 않음을 알고도 해당 상품을 '유기농'으로 라벨링 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위반 건당 최대 1만 7952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출처: 유기 무결성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

USDA 공인 인증기관 리스트 확인 페이지
<https://organic.ams.usda.gov/integrity/Certifiers/CertifiersLocationsSearchPage>

유기농 농산물로 인증받으려면 해당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 적어도 3년 동안 해당 토양에 금지 물질을 사용해선 안 된다. 유전공학(유전자 변형) 기술이나 하수 찌꺼기, 이온화 방사선(조사처리) 기술의 사용도 금지된다. 토양의 비옥도와 농작물의 영양분은 적절한 경작 활동, 돌려짓기, 사이짓기, 허용된 합성 재료 사용 등을 통해 유지 또는 보완돼야 한다. 농작물에 병충이나 잡초가 발생하면 우선 물리적·기계적·생물학적 방법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 방법으로 병충과 잡초 통제가 되지 않으면 '허용 및 금지 물질에 대한 국가 규정'에서 허용한 생물학적·식물학적 또는 합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농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유기농 씨앗과 묘목을 사용해야 한다. 유기농 씨앗과 동등한 품질을 시종에서 구할 수 없으면 유기농이 아닌 일반 씨앗을 사용할 수 있다.

가축이나 가금류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도축의 대상이 되는 가축은 유기농에 적합한 관리 방법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 유기농 농작물로 된 사료를 먹여야 한다. 단, 허용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는 먹일 수 있다. 아프거나 다친 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금지 물질로 치료한 동물은 '유기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모든 유기농 가축과 가금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야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제나 항생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축이나 가금류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도축의 대상이 되는 가축은 유기농에 적합한 관리 방법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 유기농 농작물로 된 사료를 먹여야 한다. 단, 허용된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는 먹일 수 있다. 아프거나 다친 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금지 물질로 치료한 동물은 '유기농'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모든 유기농 가축과 가금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야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제나 항생제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기농 제품의 라벨에 표기하는 유기농 관련 문구는 4가지(100% Organic/Organic/Made with Organic/Organic Ingredients)로 나뉜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100%이면 USDA 마크와 100% Organic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95% 이상이면 USDA 유기농 인증표시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70% 이상이면 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Made with Organic이라는 문구의 사용은 가능하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70% 미만이면 Organic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라벨의 성분 목록에 해당 유기농 원료를 표기할 수는 있다. 유기농 성분 함량이 95% 이상인 제품만 'Organic Seal'을 표시할 수 있다.

100% Organic	Organic	Made with Organic	Organic Ingredients
		✗	✗
유기농 성분 100%	유기농 성분 95%이상	유기농 성분 70%이상	유기농 성분 70%미만
USDA 유기농 마크, 100% Organic 문구 사용 가능	USDA 유기농 마크, 인증 표시 사용 가능	USDA 유기농 마크 사용 불가 Made with Organic 문구 사용 가능	USDA 유기농 마크 사용 불가 Organic 문구 사용 불가 - 라벨링 성분 목록에 해당 유기농 원료 표기는 가능

2014년 7월 발효된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유기'(Organic)로 표시해 수출할 수 있다.

2023. 01. 18. 미국 USDA, 유기농 식품 규정 강화 발표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의 강화는 인증된 유기농으로 기존 제품을 판매하는 공급업체의 유기농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 혼동과 유기농 인증에 대한 신뢰 확보 위함"

- 기존 USDA 유기농 식품은 제3자 인증기관이 USDA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증하였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인증이 기준에 부합하지않고 식품 사기 등 부작용 생김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기농 식품, 재료 및 서비스 공급망의 일부인 기업은 2024년 3월 19일까지 준수해야 함**
- USDA의 감독없이 운영되는 유기농 공급망 내 인증되지 않은 업체는 퇴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 필요
-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기농 제품에 대해 NOP 수입 증명서를 사용함으로써 USDA에서 요구하는 서류-데이터 등을 철저히 갖춰야 함
- 앞으로 USDA에서 더 자세한 가이드가 나올 전망이니 예의 주시 필요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https://bit.ly/41FSZIZ>)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47hFQY3>)





미국 FDA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제도

미국에는 노블푸드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새로운 식품과 식품 성분을 그라스(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성분) 규정이나 식품첨가물 규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라스는 미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다.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성분을 뜻한다. 소금·후추·식초·베이킹파우더·MGS 등 일반 식품 원료도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 그라스에 해당한다. 우수 제조 기준(GMP)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한 성분도 그라스로 포함할 수 있다. 미국연방규정집 21CFR170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과학적 절차에 따라 그라스 인정을 받거나, 1958년 이전 식경험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GRAS 성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라스 규정은 1997년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식품첨가물 중 안전성이 높은 성분을 필수 승인 대상에서 면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GRAS 신고 제도

그라스 신고 제도(GRAS Notification)는 식품사업자가 사용 성분을 그라스로 판단한 사실을 FDA에 자율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라스 여부 평가를 위해선 신고한 성분의 섭취 등 사용 관련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이를 검토해 해당 성분이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한지를 평가한다. 그라스 신고 성분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그라스 통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제조업자는 FDA가 그라스 신고 식품(성분)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면 성분 사용을 중단하는 등 책임이 부과된다.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국가 등
- 신청 물질 통칭명
- 신청 물질 용도
- 적용 제품
- 제품에 대한 사용량
- 사용 목적
- 물질의 예상수요 등
- GRAS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
- 신청 물질에 관한 모든 인원과 화학 자료·제조 방법·규격 등에 관한 자의 정보
- 신청 물질의 사용량
- 신청 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할 독성 및 임상자료
- 기타 GRAS 물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FDA의 추가 자료 요청 있을 수 있음



| 미국 GRAS 인증 마크

FDA 사이트 내 GRAS 관련 정보·가이드 확인 페이지
<https://www.fda.gov/food/food-ingredientspackaging/generally-recognized-safe-gras>

그라스는 규정상 식품첨가물 정의에 속하지 않으나, 미국에선 그라스와 식품첨가물을 같은 범주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그라스 성분은 식품사업자의 자가 판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FDA의 규제력이 닿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식품첨가물 관리기관은 FDA 식품첨가물실(OFAS), 식품첨가물 리스크 평가 기관은 FDA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FSAN)다. 관련 법령은 기본법인 연방식품의약품법(FFDCA)과 연방규정집(CFR) 제21편이 있다.

미국의 식품첨가물(Food additive) 규정에서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추가돼 간접 또는 직접 식품의 성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정의돼 있다. 식품의 생산·가공·처리·포장·운송·보관에 사용되는 성분도 식품첨가물의 범주에 포함된다. 미국에서 식품첨가물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는 이유는 미국 시장 내 관련 식품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라스 인증을 받은 성분이나 FDA가 승인한 성분은 미국의 식품첨가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첨가물은 미국 FDA의 시판 전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 식품첨가물 규정에선 식품 사업자가 자사의 새로운 식품 성분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정보를 FDA에 직접 제출하게 돼 있다. FDA는 이를 검토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안전하다는지를 판정한다. 식품첨가물 규정에 따라 FDA가 승인한 성분에 대해선 사용량 등 기준이 정해지며, 식품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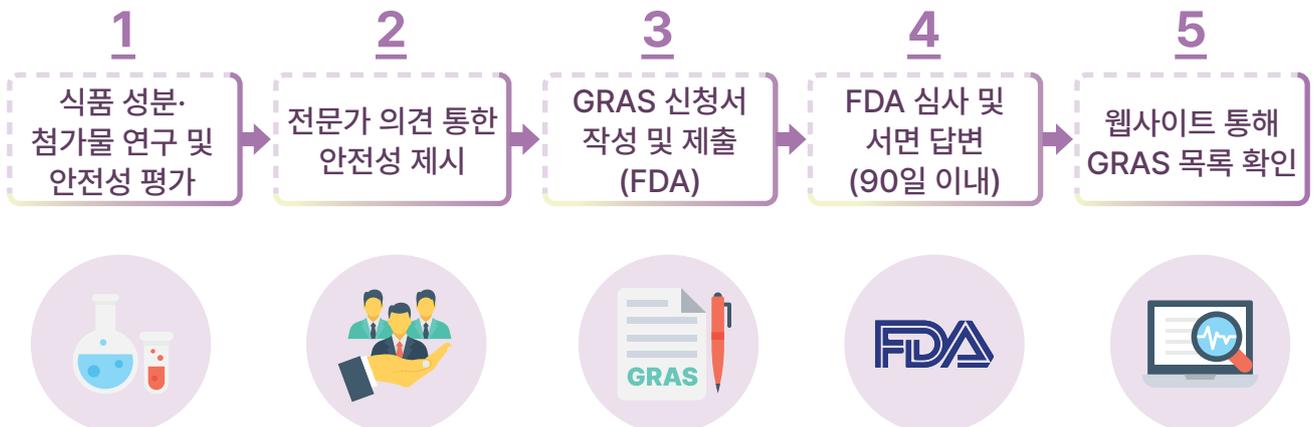
미국에서 그라스 규정과 식품첨가물 규정에서 다루는 대상은 식품과 식품 화학성분으로,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 식품 사업자가 사용하려는 성분이 식품첨가물인지, 그라스 성분인지 불분명하면, 식품첨가물 DB(Substances Added to Food)를 검색해 봐야 한다. DB에서 성분을 찾을 수 없으면 FDA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성분이 DB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FDA는 코덱스(Codex) 첨가물 일반 기준을 토대로 답변하고 있다. DB에서 성분을 검색했다라도 연방 규정집 조항번호(REGNUM)가 없는 성분이라면 FDA에 용도 규제 현황에 대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그라스와 식품첨가물 모두 안전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FDA에 추가 연구 결과를 제출하거나 신고·청원을 철회할 수 있다. 그라스 성분과 식품첨가물은 검토 과정만 다를 뿐 안전성 기준은 같다.

Substances Added to Food Inventory

FDA 사이트 내 식품에 첨가된 물질
(이전 EAFUS) 확인 페이지
<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set=FoodSubstances>

□ 인증 신청 절차(GRAS Notification Process)





신규 식이 원료(NDI)

신규 식이 원료(New Dietary Ingredient, NDI)는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식이보충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식이 원료를 가리킨다. 신규식이 원료나 이를 함유한 식이보충제를 유통·제조하는 업체는 주간 통상 75일 이전 FDA에 이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21CFR190.6에서 상세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신규 식이 원료를 사용해 식이보충제를 유통하면 부정·불량 행위로 간주한다.

사전 신고 서류

-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
- 신규 식이 성분의 명칭
- 신규 식이 성분이 들어있는 식이보충제 설명
- 담당자 사진

사전 신고
제조·유통업자
가능

FDA가 기존(1994년 10월 15일 이전) 식이 원료의 공식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규 식이 원료에 해당하는지는 업체가 자체 판단해야 한다. 미국 영양식품 협회와 영양협회(CRN)가 각각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있으므로 신규 식이 원료인지가 불분명할 때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USP 미국 약전을 참고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식품 원료가 식품첨가물·그라스·색소첨가물·식이보충제 원료(NDI)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그라스 자가 판단(식품첨가물), 그라스 자진신고(그라스), FDA에 식품첨가물 승인 청원(식품첨가물), FDA에 색소첨가물 승인 청원 또는 인증신청(색소첨가물), FDA에 신규 식이 성분 사전 신고(식이보충제 원료) 중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정보 표시면

- ① 제조자·포장업체·유통업체의 정보·이름·주소
- ② 원재료명 목록(사용한 원재료의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나열)
- ③ 알레르기 유발 성분
- ④ 영양 성분
- ⑤ 원산지
- ⑥ 표기 언어(반드시 영어로 표기, 한국어 표기가 포함되면 영어와 한국어 함께 표기)



주 표시면

- ① 제품명
- ② 순 중량(주 표시면 하단에 위치)

»캐나다 SFC 라이선스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CFIA(캐나다 식품 검역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적용 품목	유제품, 알 종류, 가공란 제품, 가공 과일 또는 채소 제품, 수산물, 육류제품 및 식용동물, 신선 과일 및 채소, 꿀 및 메이플 제품, (곡물, 기름, 콩류, 설탕, 음료로 사용되는) 가공하지 않은 식품, 기타 제조 식품 *식품첨가물 및 알코올음료 수입업체는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아님 *(2020년 7월 15일부터 식품추적관리 대상에 해당)
유효기간	2년(갱신 시 CFIA로 비용 지불)
등록 대상	캐나다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캐나다에 수출입, 캐나다 내 생산, 제조·가공, 운반·저장, 조리·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캐나다 내 식품 관련 업체는 CFIA로부터 SFC 라이선스를 발급
취득 방법	*캐나다 내 식품 수입업체는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의 식품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함
관련 사이트	https://inspection.canada.ca/eng/1297964599443/1297965645317
통용 국가	캐나다 한정
등록 소요 시기	15일 이상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식품 관련 기존 4개의 법과 14개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캐나다 식품 안전규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이 2019년 1월 15일부로 발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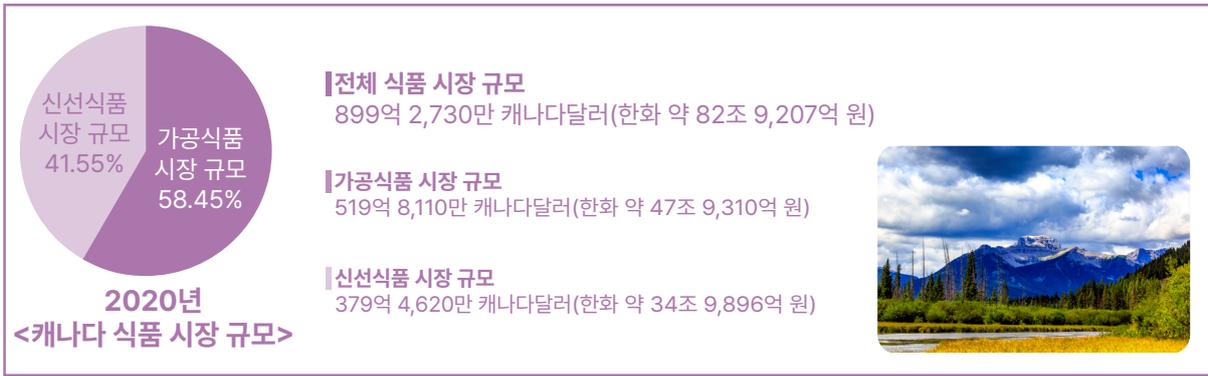
캐나다

- 국명 : 캐나다(Canada)
- 수도 : 오타와(Ottawa)
- 면적 : 9,970,610km²(한반도의 45배)
- 언어 : 영어·불어(이중 공용어)
- 통화 : 캐나다 달러(CAD, \$), US \$1≒CAD 1.36)

| 자료출처: 외교부, KATI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캐나다 식품시장 규모
899억 2,730만 캐나다달러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캐나다 SFC 라이선스(Safe Food for Canadian License)

인증 유효기간 2년

2019년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새로운 식품 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을 발효했다. 새 식품 안전법의 핵심 내용인 식품 안전 규제(SFCR, 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s)는 크게 안전 식품(SFC License, Safe Food for Canadian License), 예방적 관리 계획(PCP, Preventive Control Plan), 식품 추적 시스템(Traceability)으로 구성돼 있다. 캐나다에서는 2022년부터 대부분의 수입 식품이 강화된 SFCR를 받고 있다.

캐나다에 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식품 의약품 규제(Food and Drug Regulation)와 SFCR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수입업자가 SFC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지, 예방적 관리 계획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식품 보존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캐나다 식품 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허용하는 보존료 성분에는 알코올이 제외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정(酒精)과 같은 원료가 보존료에 포함돼 있다면 CFIA로부터 전량 리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캐나다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캐나다 소비자 판매용으로 수출되는 가공식품의 라벨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생산업체나 포장업체라면 영어·프랑스어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라벨링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라벨링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CFI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FIA사이트내 식품 라벨링 정보 페이지
<https://inspection.canada.ca/food-labels/eng/1574436698583/1574436791492>

캐나다로 식품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SFC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SFC 라이선스 신청비용은 250 캐나다 달러로, 발급 후 2년간 유효하다. 해당 라이선스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의 식품 기준을 따른다.



캐나다 노블푸드(Novel Food)

인증
소요 기간
45~90일

인증
유효기간
2년



캐나다의 노블푸드(Novel food) 규정은 국가 내에 시판되는 신식품과 유전자변형 식품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1999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생물 공학기술(유전자변형)에서 파생된 식품을 포함한 노블푸드의 시판 전 통지와 검토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의 규정과는 달리 유전자변형 식품(GMO)을 노블푸드 규정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노블푸드는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제조한 식품, 안전하다고 증명된 적이 없는 식품, 유전자변형으로 제조한 식품을 포함한다.

안전사용 이력이 없는 식품, 과거에 활용되지 않은 식품 제조공정을 통해 크게 변화한 식품, 식물·동물·미생물의 유전적 변화로 파생된 식품 등 노블푸드의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캐나다 시장 내 시판 전 노블푸드 승인이 필요하다.

캐나다 보건부가 정한 노블푸드 범위

- 안전하다고 증명되지 않은 미생물을 포함한 물질
- 다음 과정으로 생산·처리·보관·포장된 식품
 - 적용 제품
 - 과거에 사용되지 않았던 생산방법
 - 식품의 구조나 구성이 크게 변화
 - 식물·동물·미생물의 유전적 변화에서 파생된 식품
 - 과거 식물·동물·미생물의 성질에서 관찰되지 않은 새로운 성질
 - 과거 식물·동물·미생물의 성질이 현재 더 나타나지 않음
 - 식물·동물·미생물의 하나 이상의 성질이 더 예측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캐나다 노블푸드 규정은 주로 시판 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노블푸드 생산자와 수입자는 캐나다 보건부에 노블푸드 판매와 판촉 활동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노블푸드 생산자나 수입자가 노블푸드 승인을 신청하면 이를 캐나다 보건부가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캐나다에서 노블푸드 승인은 식품관리국 내 노블푸드부(Novel Foods Section in the Food Directorate)가 주관한다.

노블푸드 제조기업이 캐나다 노블푸드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관련 정보는 화학안전국(Bureau of Chemical Safety)·영양과학국(Bureau of Nutritional Sciences)·미생물유해국(Bureau of Microbial Hazards)에 전달된다. 화학안전국은 독성과 화학물질에 대한 검사, 영양과학국은 식품의 영양 성분에 대한 검사, 미생물유해국은 미생물과 분자생물학적 측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캐나다 식품법위원회(Food Rulings Committee)에서 노블푸드로 최종 승인하면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된다. 일반적으로 노블푸드 승인 기간은 45일이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통보와 검토에 90일이 소요된다. 노블푸드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캐나다 내에서 해당 노블푸드의 판매와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노블푸드는 200여 건이다. 노블푸드 도입 시기는 EU와 비슷하지만, 캐나다는 노블푸드에 유전자변형 식품이 포함돼 승인 건수가 더 많다. 캐나다에서 승인받은 대표적인 노블푸드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북극 후지산 사과·고올레산 조류(藻類) 기름 등이 있다.

노블푸드 판매와 판촉 활동 신청서류 내 기재 정보

- 1) 노블푸드 시판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반명(common name)
- 2) 생산자명과 주소, 캐나다 외 국가에서 생산돼 수입된 제품이라면 수입자 명과 주소
- 3) 노블푸드에 대한 설명
 - 식품생산과 개발 정보
 - 생산·처리·보관·포장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 식품의 주요 변화(major change)에 대한 세부 사항
 - 사용 목적에 대한 정보
 - 캐나다 외 국가에서의 안전 사용 이력에 관한 정보
 - 해당 노블푸드의 소비안전과 관련한 정보
- 4) 해당 노블푸드의 예상 소비량과 관련한 정보
- 5) 해당 노블푸드에 사용할 라벨 관련 문서
- 6) 통지자의 직함, 서명과 서명 날짜

| 자료 출처: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제품명(주 표시면에 표시)
- ② 이중 언어 라벨링(사전 포장 식품에 대한 필수 정보는 영어·프랑스어 함께 표기)
- ③ 원산지
- ④ 소비기한
- ⑤ 해당 식품 제조·준비·생산·저장·포장 업체 또는 사람의 이름과 주요 영업소 주소
- ⑥ 원재료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 ⑦ 순 중량

23.10.31. 한국·캐나다 유기농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OEA) 체결

"양국 간 동등성 인정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 유기농식품은 인증 취득 절차 없이 캐나다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최종 가공되어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 식품으로 인정받은 유기농식품은 양국에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유기농식품 동등성 인정 식품을 대상으로 한 필요 서류 요건과 식품 라벨링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OEA를 통해 캐나다로 수입되는 한국 유기농식품의 수입 요건(필요 서류, 식품 라벨링 요건)을 준수 해야 함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캐나다 정부, CFIA(<https://bit.ly/3Rw0jCK>)
농림축산식품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3NHPxI5>)



농 식 품 해 외 인 증 · 등 록 정 보 종 합 가 이 드

2.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유럽권

유럽 공통

EU 노블푸드 등록 / EU 식품안전관리 제도 / 유로 리프 인증

» EU 노블푸드 등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EFSA(유럽 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적용 품목	<p>제3국에서 수입된 노블 푸드를 포함한 EU 내에서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노블 푸드</p> <p>*제외 식품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EC) No 1829/2003의 범위에 속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 - Regulation(EC) No 1332/2008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효소; - Regulation(EC) No 1333/2008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첨가물; - Regulation(EC) No 1334/2008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향료; - Directive 2009/32/EC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사용되도록 의도된 추출 용매
유효기간	무기한
등록 대상	유럽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노블푸드 범위에 속하는 식품군 제조회사는 유럽으로 수출하기 전 노블푸드 관련 규정 준수
관련 사이트	https://www.efsa.europa.eu/en
통용 국가	EU 회원국 내
등록 소요 시기	약 10개월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p>°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식품들이 생겨남에 따라 EU 시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1997년 노블푸드 규정(Novel Food Regulation)을 마련하였다. 규정은 1997년 5월 15일 이전까지 유럽연합에서 상당한 수준(significant degree)으로 이용되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성분을 노블푸드(이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식품)로 정의하고, 시장 출시 전 반드시 허가 받도록 함</p> <p>*근거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블푸드에 관한 법령(Regulation (EU) 2015/2283) - 노블푸드 등록 절차에 관한 법령(Regulation (EU) 2018/456) -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EU 노블푸드(Novel food) 등록

노블푸드(Novel Food)는 일반적으로 식용 이력이 없고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을 뜻한다. 현재 노블푸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연합(EU)·캐나다·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등이다. 오세아니아는 1996년, EU는 1997년, 캐나다는 1999년부터 노블푸드 규정을 도입했다.

EU와 오세아니아에선 유전자변형 식품(GMO)을 노블푸드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새로운 식품과 식품 성분에 대한 관리를 식품첨가물 규정과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중국에선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관리 방법'으로 규율하고 있다.

EU는 EU 내에서 소비되지 않았던 식품의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확인하기 위해 노블푸드 규정을 도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노블푸드를 '새롭게 개발되거나,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기술 혹은 생산 과정을 통해 제조한 EU 이외 지역에서 소비된 식품 또는 성분'이라고 정의했다.

EU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노블푸드

비타민K(메니퀴논)



남극 크릴새우 오일



치아시드



노니주스 등



EU가 노블푸드의 안전성을 평가·승인하기 위해 1997년 처음으로 제정한 법령은 Regulation(EC) No.258/97이다. 2003년 공표한 Regulation(EC) No. 1829/2003에선 GMO를 노블푸드 범위에서 분리했다.

식품첨가물·식품 효소·식향료·유전자변형 식품·식품이나 식자재 생산에 사용하거나 지침 2009/32/EC의 범위에 포함된 추출 용액 등 5가지 식품 또는 성분은 노블푸드 승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블푸드 승인 대상(10가지 범주)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U 시장 내 유통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성분이 노블푸드 승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식품 사업자의 법정 의무다. EU 시장에 노블푸드 시판하기를 원하는 식품 사업자는 해당 식품이 노블푸드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블푸드 규정에는 식품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와 대상이 포함돼 있다.

노블푸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원재료와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 노블푸드로 승인받으려면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고, 소비자의 오해 소지가 없는 올바른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 노블푸드가 기존의 다른 식품을 대체한다면 영양상으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EU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이미 노블푸드로 승인돼 있다면 기존의 노블푸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미 노블푸드로 등록된 식품을 수출한다면 식품 카테고리, 사용 수준, 생산 과정 등과 관련한 기존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식품 사업자가 EU 내 판매하고자 하는 식품이 노블푸드 범주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유통을 희망하는 국가의 당국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식품사업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를 EU 회원국에 제공하면 해당 국가는 이를 토대로 해당 식품이 노블푸드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통보해준다.

노블푸드 확인위한 제공 정보

- 해당 식품 관련 설명서
- 식품 사용조건
- 식품 생산과정 등

2018년 1월, EU는 기존의 노블푸드 규정을 개정했다. 새로운 규정의 핵심 내용은 기존의 '개별 노블푸드 신청자 특정' 방식에서 '포괄적 적용' 방식으로 변경이다. 이 개정을 통해 한 식품사업자가 유럽식약청(EFSA)에서 노블푸드로 승인을 받으면 같은 식품을 취급하는 다른 기업도 EU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FSA의 승인을 받은 노블푸드와 동일한 제품을 시판하고자 하는 식품사업자는 노블푸드 등록 절차를 따로 받지 않아도 EU 내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EU 시장 내 유통에 필요한 조건(라벨링·제품설명 등)은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노블푸드의 등록과 승인 범위가 기존 4가지에서 10가지로 확대됐다. 새로운 생산방식과 신기술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을 노블푸드의 범주에 포함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승인절차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혁신적인 식품이 시장에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게 했다. 과거에는 EU 회원국에서 노블푸드 신청서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나, 현재는 EFSA에서 승인시스템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노블푸드 승인절차를 간소화했고 신청자(업체)의 편의성을 높였다. 노블푸드 승인을 받은 뒤 EU의 노블푸드 목록에 등록되면 EU 회원국에 바로 판매할 수 있다.

EU 노블푸드 규정 간소화로, EU 내에서 소비되지 않았으나 다른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섭취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EU 시장 접근이 과거보다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블푸드 등록 신청에서 최종결정까지는 1~3년의 기간이 걸린다. 승인 규정이 까다로워 등록이 좌절되는 사례도 많다.



곤충 식품이 노블푸드로 승인되기 전까지 식용 곤충에 대한 법규는 EU 회원국별로 크게 달랐다. 곤충 식품의 정의와 범위, 관련 규정이 불명확했다.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에서는 곤충이 식품으로 자주 사용됐지만, 독일에서는 곤충 식품의 판매·제조를 엄격하게 관리했다. 2018년 1월, EU는 곤충 자체뿐만 아니라 곤충 함유 제품을 노블푸드로 승인했다.

상업화를 위한 표준과 허가 절차를 규정하여 식품으로 판매하는 모든 곤충 제품은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받아 유럽 집행위원회를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EFSA가 승인신청서를 심사·평가하고, 회원국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현재 EU에서 곤충 식품은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인식돼 일부 슈퍼마켓 등 식료품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EU 노블푸드 등록할 수 있는 식품 목록

- 1)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 회원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의도적으로 변형된 분자구조의 식품
- 2) 미생물·곰팡이·조류로 구성되거나 이로부터 분리되거나 생산된 식품
- 3)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 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생산 과정을 통해 제조된 식품
(생산 과정이 식품의 구조에 변화를 주어 영양·신진대사 등이 크게 변한 식품)
- 4)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거나, 분리되거나, 생산된 식품
(식품이 EU에서 안전사용 이력이 있다면 제외,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 내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 제외,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전통적으로 행해진 식품 생산방식은 아니지만, 식품의 구조·영양 성분·신진대사 등에 변화를 주는 식품생산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 제외)
- 5) 동물 혹은 동물의 부분으로 구성되거나, 분리되거나, 생산된 식품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에서 식품생산 방식에 활용된 전통적 육종방식으로 얻은 동물, 안전사용 이력이 있는 동물 제외)
- 6) 광물 원산의 물질로 구성되거나 분리되거나 생산된 식품
- 7) 동물·식물·미생물·곰팡이·조류에서 얻은 세포배양 또는 조직배양으로 구성되거나, 분리되거나, 생산된 식품
- 8) 조작된 나노물질로 구성된 식품
- 9) 비타민·미네랄과 다른 성분으로 2002/46/EC, 규정 (EC) No. 1925/2006 혹은 규정 (EU) No. 609/2013 에 따라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사용하지 않은 생산방식으로 제조한 식품이나 조작된 나노물질을 함유하거나 구성된 식품
- 10) 1997년 5월 15일 이전 EU 내에서 오직 식품 보조제(food supplement)로 활용된 식품

| 자료 출처: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판매 위한 EFSA 승인신청서 주요 내용

- 1) 신청자의 이름·주소
- 2) 생산 공정 설명
- 3) 노블푸드에 관한 상세 설명
- 4) 노블푸드가 인체 건강에 위험 초래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

제3국의 전통식품을 EU 내 시장에 출시하려는 신청자(기업)가 EFSA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내용

- 1) 신청자 이름·설명
- 2) 전통식품 이름·설명
- 3) 전통식품 상세 구성
- 4) 전통식품 원산지 국가
- 5) 제3국에서 안전한 식품 사용 이력 입증하는 문서자료

»EU 식품안전관리 제도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EFSA(유럽 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적용 품목

식품: 가공, 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 또는 제품

- *제외 품목
- 사료
 - 살아있는 동물
 - 수확 전 식물
 - 의약품
 - 화장품
 - 담배
 - 마약
 - 잔류물
 - 의료기기

유효기간

무기한

등록 대상

유럽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국내 식품기업은 유럽 수출 전 식품 관련 규정 준수

관련 사이트

<https://www.efsa.europa.eu/en>

통용 국가

EU 회원국 내

등록 소요 시기

별도 소요 기간 없음(유럽 식품 안전 규정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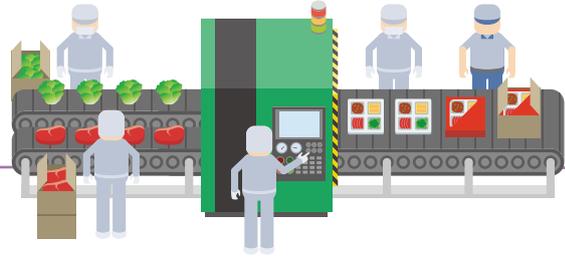
-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전문기관으로 유럽 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설립
- EU 내 식품 유통을 위해 준수 필요
- EU 모든 회원국에 식품 안전·품질에 관한 일괄 규칙 적용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근거 규정
- 유럽 식품 안전 기본법(Regulation (EC) No. 178/2002)
 -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333/2008)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 물질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935/2004)



EU 식품안전관리 제도



EU 회원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EU 공통 식품법과 개별국가 식품법 규정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EU 27개 회원국은 EU 식품법에 근거해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통으로 다루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EU 식품안전관리 제도는 법(Law), 집행을 위한 규정(Regulation)의 규율을 받고 있다. EU 식품안전관리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에서 담당한다. EFSA는 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한 EU의 독립적인 외부 기구다. EFSA는 식품 안전을 감독하고, 회원국의 담당 기관, 관련 이해 단체와의 협력·협의를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위협 요인과 향후 위험이 될만한 요인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의사소통을 수행한다.

식품첨가물 규정은 유럽환경청(EEA)에서 제공하고 있다. EU는 2021년 4월부터 복합식품 수입 시 공중위생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식품 분야의 소비자 보호를 임무로 하는 독립적인 조직인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을 설치했다. 2020년 브렉시트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이후, 수입 농식품 검역 시 영국의 동식물 검역 지침을 따르고 있다.



EU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EU의 일반적인 식품 요건과 위생 요구사항, 즉 EC No 852/2004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 EC No 852/2004는 식품 위생에 관한 일반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식품의 생산·가공·유통단계 전반과 식품 수입을 규율한다. EU의 식품 표시법인 FIC 규정(1169/2011)은 수입식품을 포함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 적용된다.

»유로 리프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유럽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적용 품목	종자 등을 포함한 농작물, 가축류, 사료, 농식품 등
유효기간	1년
등록 대상	유럽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국내 식품기업은 유럽 수출 전 식품 관련 규정 준수
관련 사이트	https://commission.europa.eu/index_en
통용 국가(동등성 인정)	EU 회원국 및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튀니지
등록 소요 시기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함

-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근거 규정**
-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C) No 834/2007)
 - 유기농 생산, 라벨링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규칙 (Regulation (EC) No 889/2008)
 - 제3국에서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려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규칙 (Regulation (EC) No 1235/2008)
 -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18/848)



유로 리프(Euro Leaf) 인증

유로 리프(Euro Leaf)는 유럽 내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통일하기 위해 유럽 국가가 연합해 만든 유기농 농산물 인증제도이자 로고다. EU는 세계유기농업 운동연맹(IFOAM)에 기준에 맞춘 유기농 식품인증제도를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유기농의 생산·가공·유통·라벨링 등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유로 리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로 리프 인증을 받으면 유기 제품을 EU에 상용화할 수 있다.

유로 리프는 인증 심사도 까다롭다. 유기농 식자재와 친환경 방식을 철저히 따르는 기업에만 허용된다.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변형(GMO) 식품을 함유하지 않는 등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유로 리프 마크를 붙일 수 있다.

유로 리프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U가 정한 유기농 기준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것을 뜻한다. 마크 옆에 표시된 코드는 농산물 원료 생산지와 인증기관을 나타낸다.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한 유기농 포장 식품은 유로 리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U 소비자는 유로 리프에 대한 신뢰가 높다. 마트에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 유로 리프를 통해 유기농 제품을 판별하고 유기농 제조 방식을 확인한다. 유기농 소비량이 많은 EU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도움을 받는 인증이다. 유로 리프는 EU에서 만든 유기농 인증이지만, 유럽에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농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 2015년 '한국-EU 간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협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EU와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농식품은 각각 상대 국가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 있다.

유로 리프 인증받기 위한 기본조건

- ① 기후와 환경 보호
- ② 토양 비옥도 보전
- ③ 생물 다양성 보전
- ④ 자연 순환과 동물 복지 존중
- ⑤ 화학과 합성 제품의 미사용
- ⑥ GMO의 부재



한국 또는 EU 규정에 따른 유기농 식품 인증 조건

- ① 생산자와 가공업체는 허용된 생산 과정과 첨가물만 사용
- ② 제조자는 유기농 제품 생산 전 EU 회원국에 인가받은 유기농 인증 시험기관으로부터 심사 필수
- ③ 기존 일반 농장은 최소 2년간의 유기농 농지로 전환기를 거쳐야 하며, 농지와 제조공정은 심사 필수 대상
- ④ 인증 취득을 통해 적합성 여부 판단 필수
- ⑤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 ⑥ 가공식품의 범위는 수입국의 분류 기준 적용
- ⑦ 제품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사용

단,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한국 내에 EU가 인정한 한국 기관이 있는데(EU 등재 한국 인증기관), 이 EU 승인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농 인증과 인증 코드만 인정된다. 한국 내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EU가 승인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EU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EU가 승인한 한국 내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유기농 인증 코드 번호를 제품 외 포장지나 라벨에 기재해야 한다. 코드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한국 유기농 인증 로고만으로는 EU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못하며, 라벨에도 '유기농' 표시를 쓸 수 없다.

부여받은 코드 번호를 EU 회원국 내 유통국 담당 관청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EU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유통하기 위해선 통관 과정에서 한국의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와 EU에 있는 수입업체 모두 각각 유기농 제품 취급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생산업체가 유기농 제품 취급 인증이 없는 수출업체를 통해 EU로 수출하고자 한다면, 수입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

EU에 있는 유기농 수입자는 TRACES 시스템(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에 수입하고자 하는 유기농 식품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고, 유기농 검사인증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OI)를 작성해야 한다.



새로운 유기농 규정 주요 변경 사항 3가지

첫째, 유기농 인증 범위 확대

기존의 유기농 인증 범위인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에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타 제품'이 추가됐다. 기타 제품 목록은 규정의 부속서 1에 명시돼 있으며, 소금·효모·방향유(essential oil) 등이 포함됐다.

둘째, 유기농 인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유기 가공식품 생산 규정 변경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타 제품'도 유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GMO·이온화 방사선·나노기술 등 활용도 금지했다.

셋째,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기 규정 개정

사전포장된 제품이라면 유기농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유기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선 제품에 2% 이상 함유된 원료가 원산지 의무 표기 대상이었지만, 변경되는 규정에선 제품에 5% 이상 함유된 원료가 원산지 의무 표기의 대상이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제품명
- ② 원산지
- ③ 원재료 리스트(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첨가물·향료 포함),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강조 표기)
- ④ 성분 또는 성분 카테고리 함량
- ⑤ 식품의 내용량(Net quantity)
- ⑥ 유효기간 및 품질 유지 기한
- ⑦ 알코올 도수(1.2% 초과하는 알코올음료에만 해당)
- ⑧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EU 수입·판매업자
- ⑨ 제조 번호(lot number)
- ⑩ 사용 방법(사용 방법 부재 시 식품 이용이 어려울 경우)
- ⑪ 보관 방법(특별한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
- ⑫ 영양 성분
- ⑬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럽연합,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알림 정보

"2023년 1월~ 8월까지 유럽연합 국가로 수출된 한국 식품 중 슬로베니아로 수출된 면류 제품과 독일로 수출된 건조 김 제품이 라벨링 결함 문제가 확인되어 통관 거부된 것이 확인됨. 이에 한국 식품 기업이 유럽연합 국가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종합하여 공고함"

- 유럽연합 회원국은 기본적으로 《(EU) No 1169/2011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12개의 식품 필수 표기 정보를 판매되는 국가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하게 식품 라벨에 표기해야 하며 필수 표기 정보는 최소 1.2mm 이상의 폰트를 사용해야 함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3RHNoNZ>)

* EU No 1169/2011 소비자에 대한 식품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02011R1169-20180101>)



농 식 품 해 외 인 증 · 등 록 정 보 종 합 가 이 드

2. 국가별 식품인증 가이드

기타 권역권

유라시아

EAC(TRCU) 인증 / 러시아 국가 위생 등록 /
우즈베키스탄 UZSTANDARD 인증

호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EAC(TRCU)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EEC(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적용 품목

곡물, 일반 식품, 채소 및 과일, 지방 및 유제품, 다이어트 식품을 포함한 특정 유형 식품, 식품첨가물, 향료,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제품, 어류와 어류 제품, 생수, 광천수, 주류

TR CU 021/2011 규정 및 기타 11개의 식품 관련 규정은 가공식품에만 해당하며 가공하지 않은 제품 경우에 발행되지 않음

*** 유의 사항**

- 연체동물 생해산물 생 관자 식품은 DoC 대상이 아닌, 국경에서 수의학 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발행 대상
- 수의학 증명서는 수입자가 직접 발행해야 하며, Rosselkhoznadzor (러시아 정부 기관)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유효기간

인증별 상이
(연속인증 1~5년 / 단일인증)

등록 대상

유라시아권역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소재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 가능

관련 사이트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통용 국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소속된 5개국에만 통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록 소요 시기

기관 및 품목에 따라 상이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피하고자 표준과 규범을 설정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 ° 기존의 러시아 인증제도였던 GOST-R 제도에서 2011년 12월 9일에 결정된 N880에 따라 2013년 7월 1일 도입에 식품 관련 규정이 도입됨

***근거 규정**

- 식품 안전 기술 규정 채택에 대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관세동맹 결정 (CCC No. 880, 2011.12.09.)
(Решение КТС от 09.12.2011 № 880)



EAC(TRCU) 인증

TRCU는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의 약어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기술 규정을 뜻한다. 2013년 GOST-R(러시아) 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TRCU 인증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TRCU는 2010년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개국이 결성한 유라시아 관세동맹(EACU, Eurasian Customs Union)과 2015년 구성된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관리하는 통합 인증제도이다. 현재 유라시아 관세동맹·경제연합의 회원국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총 5개국이다. TRCU 인증은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가 규정한 인증 절차를 따른다.

러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으로 식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TRCU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TRCU 인증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간의 상호 인증제도인 셈이다. TRCU 인증을 받은 후 제품·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EAC 마크를 부착해야 해당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 EAC은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이란 뜻이다.

TRCU 인증은 Rosakkreditasiya 웹 사이트에 등록한다. TRCU 인증신청은 러시아 또는 기타 관세동맹 국가에 소재한 업체만 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일반인은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TRCU 인증서는 적합성 인증(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과 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등 두 종류가 있다.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 제품에 요구하는 인증은 EAC DoC다. 일부 제품은 서류심사만으로도 EAC DoC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TRCU EAC 인증이 단발성 수출 등 단일 선적에 대한 인증(One-Shipment: Single Delivery Certification)이라면 유효기간이 생산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에 기재한 계약이행 기간까지다. 지속적인 수출이 예상되는 연속 생산(Serial Production Certification) 제품이라면 1회 인증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유효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TRCU EAC 인증 절차

- 1) 인증기관에 신청서와 제품 관련 제출
- 2) 서류 검토
- 3) 적용되는 인증서 유형 확인
- 4) 시료 시험과 공장심사 여부 확인
- 5) 견적서 발행 및 계약
- 6) 시료 시험 필요시, 시료 발송 후 시험과 시험 성적서 발행
- 7) 공장심사 필요시, 심사 진행
- 8) 인증서 초안 발송과 고객 확인
- 9) 인증서 발행

TRCU EAC 인증 발급 서류 목록

신청서	기술문서(해당 시)	보유 중인 증서
HS Code	제품 설명서(러시아어 또는 수출국 언어)	유라시아 인증 신청자
도면(해당 시)	보유 중인 시험 성적서	

»러시아 국가 위생 등록(SGR)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p>러시아: 러시아 소비자 권리 보호 관리청 카자흐스탄: 보건부, 위생 및 역학 관리 위원회 벨라루스: 공화당 위생 및 역학센터 아르메니아: 보건부 키르기스스탄: 보건부, 질병 예방 및 국가위생 역학감시부</p>
적용 품목	<p>특수 유형의 식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식용 식수를 포함한 이유식용 식품 - 의료용 다이어트 및 질병 예방용 다이어트 식품 -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 첨가물, 복합 식품 첨가물 - 광천수, 미네랄이 1mg/dm³ 이상이거나 미네랄이 더 낮은 치료용 미네랄 워터, 생물학적 활성 물질을 balneological 표준 이상의 양으로 포함 - 운동선수, 임산부와 수유부의 영양을 위한 식품 - 생물학적 활성 식품 첨가물(BAA) - 이 외 저알코올성포함한 주류·맥주 등
유효기간	<p>영구 또는 5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결정/ 2019년 6월 18일 №102에 따름)</p>
등록 대상	<p>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p>
취득 방법	<p>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소재한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발행 가능</p> <p>각 EEU 회원국의 국가 등록 관할 기관에서만 발행 가능</p>
관련 사이트	<p>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p>
통용 국가	<p>유라시아경제연합에 소속된 5개국에만 통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p>
등록 소요 시기	<p>약 12주(국가 및 품목에 따라 상이)</p> <p>° 국가 등록을 통해 인체 건강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어 사용 조건에 따라 대량 비전염성 질병(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음</p>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p>*근거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위생 조치 적용에 대하여» 관세동맹위원회결정 No. 299(Решение КТС от 28.05.2010 №299) - «제품의 국가 위생 등록 인증서 관하여»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 No. 80(Решение Коллегии ЕЭК от 30.06.2017 №80) -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 2017년 6월 30일 №80 개정에 대하여»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이사회의 결정 No. 102 (Решение Совета ЕЭК от 18.06.2019 №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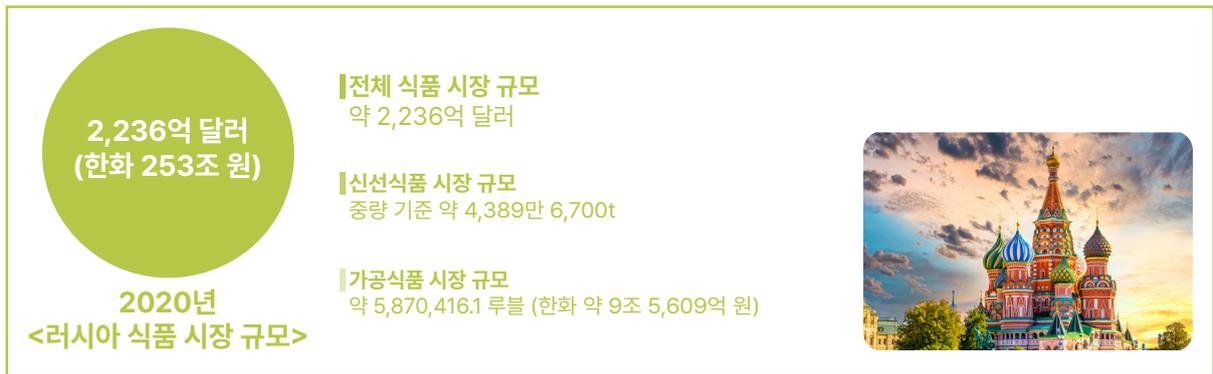
러시아

- 국명 : 러시아(Russia)
- 수도 : 모스크바(1,267만 명, 2020년 1월 기준)
- 면적 : 1,708만km²(한반도의 78배)
- 인구 : 1억 4,674만 명(2020년1월 기준)
- 언어 : 러시아어
- 민족 구성 : 러시아인(78%), 타타르인(4%), 우크라이나인(1%)
- 종교 : 러시아 정교(75%), 이슬람교(5%),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등
- 통화 : 러시아 루블(RUB, ₺) (US \$1≒RUB 90.06)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러시아 식품시장 규모
약 2,236억 달러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러시아 국가 위생 등록(Sanitary Government Registration)

러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할 때 필수적인 국가위생등록, 즉 SGR(Sanitary Government Registration)는 위생 인증(Sanitary Certification)의 일종이다. 수입 제품이 관세동맹 3국의 위생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인증이라고 볼 수 있다. 3국이 관세동맹을 맺으면서 공동 기술 요구사항인 TRCU(Technical Reglaments for Customs Union)가 만들어졌다. 이를 CU(Customs Union) System 혹은 CU Certification이라 하는데, 2013년 2월부터 적용됐다. 이 등록은 정해진 기간 없이 유효하며, 관세 동맹국인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에 식품 등을 수출할 때 적용된다. SGR의 발급과 검사기관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집행위원회(EEC) 지정 시험소와 인증기관이다. 러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인증이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이를 담당 기관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등록된다.

SGR 신청 제출 서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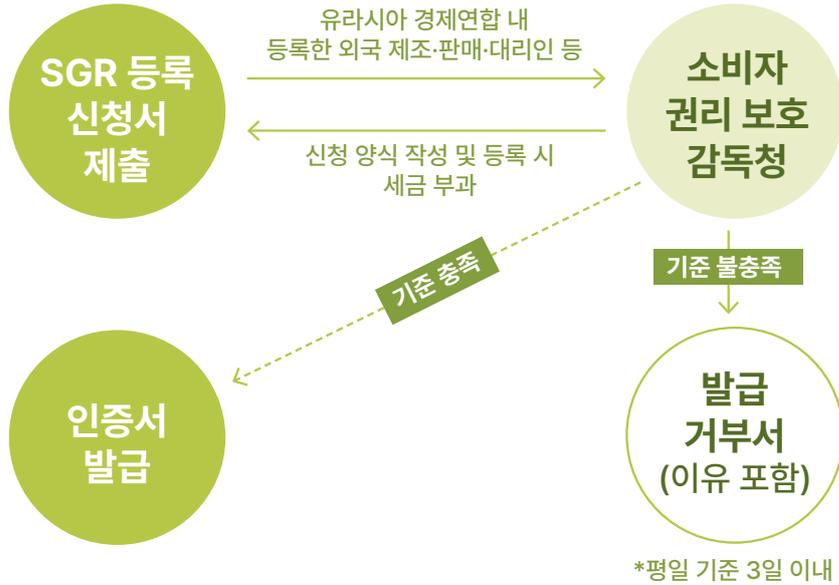
국가 등록증 신청서
공인시험소 시험 성적서
제품 안정성·기술 규정 요구사항
충족하는 증빙서류 등

발급
소요 기간
약 12주

등록비용
5,000루블

SGR 등록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한 제품에만 요구된다. SGR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공인 기관이 등록 주체가 된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러시아 소비자 권리 보호 관리청이 SGR 등록을 담당한다.

SGR 등록 신청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에 등록된 외국 제조업체의 생산자·판매자·공인 대리인이나 대리업자로 활동하는 법인·개인이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SGR 등록 양식을 작성해 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에 제출해야 한다. 양식 작성과 등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이 인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으로 평일 기준 3일 이내로 SGR 신청자에게 발급 거부 이유를 포함한 SGR에서 발급 거부서를 보낸다.



SGR 등록을 할 수 있는 주요 제품 그룹은 광천수·생수·토닉 음료수·저알코올 제품을 포함한 주류·맥주 등 일부 주류다. 이유식, 임산부와 수유부를 위한 식품, 식이 영양제 제품, 운동선수를 위한 식품,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식품첨가물,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식품첨가물 생산을 위한 원재료, 유기농 제품도 SGR 등록 대상 식품이다.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포함하는 유전자변형 식품, 식품첨가물, 복합 식품첨가물, 향료, 향료 물질과 그 원료인 식물성 추출물, 미생물 스타터 배양체와 세균 스타터 배양체, 효소 등도 SGR 등록 대상이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제품명
- ②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정보
- ③ 순 중량 또는 용량 및 수량
- ④ 원료(원재료) 목록
- ⑤ 영양 성분
- ⑥ 소비기한
- ⑦ 보관 방법 및 보관 기간
- ⑧ 제조 일자과 포장 일자
- ⑨ TR-CU 인증(EAC 마크)
- ⑩ GMO 원료 정보(해당 시)

»우즈베키스탄 UZSTANDARD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필수 <input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등록기관	UZstandard Agency(우즈베키스탄 표준청, Th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of Uzbekistan)
적용 품목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국가 인증 대상
유효기간	1년·3년 또는 제품 유효기간에 따라 상이
등록 대상	우즈베키스탄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 가능
관련 사이트	https://www.standart.uz/
통용 국가	우즈베키스탄 한정
등록 소요 시기	약 2~3주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투자무역부 산하 기술 규제 기관(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은 2021년 6월 2일 자 "기술 규제 분야의 행정 개선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 УП-6240에 의하여 Uzstandart 기관을 기반으로 설립됨

*근거 규정

-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ЗПВ 1006-XII 28.12.1993) (최신 개정판: 2014년 12월 11일 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No. ЗПВ-381에 따름)
- 제품 인증 절차에 관한 규정(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т 07.06.2004 № 318, Приложение № 1) (최신 개정판: 2020년 5월 20일 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결의 제302호에 따름)
-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 No. №483-I(ЗПВ №483-I 30.08.1997) (최신 개정판: 2021년 4월 26일 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No. ЗПВ-685에 따름)



우즈베키스탄

- 국명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
- 수도 : 타슈켄트(Tashkent)
- 면적 : 44만 7,400km²(한반도의 약2배)
- 언어 : 우즈베크어(공용어(74.3%)), 러시아어(통용어)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 통화 : 우즈베키스탄 솜(UZS, сўм), US \$1≒UZS 12300)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우즈베키스탄 식품시장 규모
71조 3,554억 솜
(한화 약 78조 9,472억 원)



Uzstandard 인증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표준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했다. 우즈베키스탄 표준 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소비자의 건강, 환경 보호와 함께 자원 생산의 기술적·경제적 변수를 고려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영토 내 반입 시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Uzstandard이다. 이 기관에서 Uzstandard 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와 규칙을 설정하고 필수 인증 대상 제품 목록을 지정해 공시한다.

Uzstandard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험 장소와 인증 비용 등은 법령에 규정돼 있다.

Uzstandard 인증 취득은 식품 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적합성 인증 결과는 제품의 보증기간(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Uzstandard 인증 절차

- 1) 인증 신청서와 품목 설명서 제출
- 2) 실험 프로그램 검정과 시료 조사, 실험
- 3) 품질 평가와 제품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 4) Uzstandard 인증서 발급
- 5) 국가 등록

Uzstandard 인증 신청 필요 서류

신청자 인감으로 봉인한 신청서
 제품 라벨 시료(상품 정보)
 우즈베키스탄 세관 도착 표시된 선적서류(청구서·패킹 리스트 등)
 제품과 관련한 규제 문서 사본(있을 시)
 위생 증명서(있을 시)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제조일
- ② 제조사의 보증 규정
- ③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법 및 조건 명시
- ④ 서비스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 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 ⑤ 제조업체 주소
- ⑥ 소비자 보호 기관 정보
- ⑦ 안전한 사용 및 저장 방법



MSC 인증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는 독립적인 국제 비영리 단체로 1999년부터 수산업 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추구한다.

MSC는 UN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ISEAL(지속가능성 규격을 위한 국제단체)의 지침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산 어종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 규격과 에코 라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SC는 2017년 3월 GSSI(Global Sustainable Seafood Initiative, 글로벌 수산물 지속가능성 계획)가 최초로 인정한 국제 수산물 규격 프로그램이다.

MSC는 에코 라벨과 수산물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MSC 규격은 어업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격이다. 자연산 어종을 어획하는 모든 어업은 MSC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

MSC 인증은 지속가능 어업 인증과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CoC) 인증으로 구분된다. MSC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지속가능한 어업 자원량을 유지해야 한다. 서식지 등의 환경을 관리하는 것도 의무 사항이다. MSC 어업 규격에 따라 인증받은 자연산 수산물엔 MSC 에코 라벨을 붙일 수 있다. 에코 라벨을 통해 소비자는 수산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해 생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SC 인증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 심사
12개월마다
1회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는 독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다. 2009년에 WWF(세계자연기금)와 IDH(Dutch Sustainable Trade Initiative)가 설립했다. 이 단체는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SC는 자체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승인된 3자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다. 공인된 3자 인증기관은 DNV다. DNV는 ASC 표준에 따라 업체를 평가해 인증서를 발행한다.

지속가능한 양식 수산물에 대한 ASC 표준은 WWF(World Wildlife Fund)의 주도로 개발됐다. ASC 표준은 연어·송어·팡가시어스·틸라피아에 적용되는 표준, 전복·굴에 적용되는 표준, 새우 등에 적용되는 표준 등 다양하다. ASC와 MSC가 공동 개발한 해조류(Seaweeds)표준도 있다.

ASC 인증은 지속가능 양식 인증과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CoC) 인증으로 구분된다. ASC 양식 인증은 담수와 해양 중 생물의 양식업에 적용된다.

ASC 양식 표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양식장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유하고, 주요 지표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양식업체의 성과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고, 기타 성과 데이터를 ASC에 제공해야 한다.

인증된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ASC 에코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ASC 인증 양식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신뢰성은 관리 연속성(CoC) 인증을 통해 보장받는다. ASC 관리 연속성 표준은 도매업자·가공업자·소매업자·식당업자·무역업자를 포함해,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수산물 제품의 변형 또는 재포장 등에 관계하는 유통과정의 모든 관련 기업에 적용된다. ASC 표준은 ASC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SC 인증을 받으려면 DNV에 문의해 인증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ASC 사전심사 점검표를 이용해 첫 번째 심사 전에 자료 수집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SC 인증 심사는 지속적인 적합성 증거를 위해 유지 심사를 포함하고 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은 12개월마다 사후 심사를 수행한다.



FSC(국제산림관리협회)는 1990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전 세계의 산림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산림 경영과 산림 제품의 추적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를 개발했다. 특히 Chain-of-Custody(CoC) 인증은 FSC 인증원료가 처음 수확되는 시점부터 가공·제조·유통·인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과정을 인증 대상으로 한다. FSC CoC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제조한 산림 제품에 FSC 인증 라벨을 붙일 수 있다.

FSC 인증 제품의 라벨은 다음 3가지가 있다.

1) FSC 100%

FSC 100%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사용된 원료 전체가 FSC의 환경·경제·사회 기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뜻한다.

2) FSC Mix

FSC Mix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산림 경영을 지지하며, 사용된 목재 부분은 FSC 인증원료, 관리된 출처의 원료, 재활용 원료가 혼합 사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3) FSC Recycled

FSC Recycled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재활용된 원료가 사용된 것을 뜻한다.

FSC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SC 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 기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원료의 추적성 관리 시스템(Chain of Custody Control System)을 실행해야 한다.

FSC 관리 연속성(CoC, Chain of Custody) 인증은 FSC 인증원료가 숲에서 시장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을 따라 이동할 때 비인증·비관리 재료와 식별되고 분리됐음을 의미한다.

FSC CoC 인증을 받으려면 업체가 FSC-STD-40-004 CoC 인증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FSC®(A000509)에 등록된 인증기관인 DNV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FSC CoC 인증심사 프로세스 페이지를 참고하면 인증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FSC CoC 인증심사 프로세스 페이지
<https://brandcentral.dnvgl.com/original/gallery/10651/files/original/bba46956ea7a45b9ad7fe00611ab79f6.pdf>

□ 인증 신청 절차



*적합성인증서(CoC)적용 시점 유예(2024년 1월 1일부터 → 2월 15일부터 적용)

(참고: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42bnBCr>)

카타르, 2024년 1월 1일부터 한국 식품 수출 시 적합성 인증서(CoC) 제출 필수*

"2023. 11. 20. 카타르 공중 보건부(MoPH) 산하 식품 안전 환경 보건국에서 <특정 수입 식품의 예방조치 요건 및 정당성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카타르로 수입되는 일부 식품에 적합성 인증서(CoC) 제출 요건 적용한다고 밝힘"

- 이번 업데이트는 수입 규제 조치 중 카타르의 기술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수출 식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성 인증서(CoC) 제출 요건의 대상 품목을 추가함
- 한국과 필리핀의 가공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 또는 유전자 조작 성분을 함유한 식품, 유기농 식품과 방사선 조사 식품, 걸프 협력 회의(GCC) 회원국 내에서 재수출된 식품, 특정 인도 식품 기업의 식품이 포함되며, 해당 식품을 카타르로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수출 전 카타르 정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를 발급받아 수입 통관 진행 시 제출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47g3T9L>)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가공식품이 발급 대상 품목

*적합성 인증서(CoC) 신청 서류(신청서, 인보이스 및 패키징리스트, 승인된 등록 인증서 또는 식품 등록 번호 등)

*한국 내 카타르 적합성 인증서 신청 가능 기관: TUV, Intertek

»호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로고	
등록기관	DAFF(호주 농수산임업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적용 품목	-곡물·청과, 고기, 계란 및 생선류 -식용유, 유제품, 설탕과 꿀 -무알콜 음료·주류 -특수 목적 식품 -기타 음식(식초, 소금, 껌 등) 등
유효기간	무기한
등록 대상	호주 및 뉴질랜드에 식품 등 수출(예정) 업체
취득 방법	국내 식품기업은 호주로 수출하기 전 식품관련 규정 준수
관련 사이트	https://www.agriculture.gov.au/
통용 국가	호주 및 뉴질랜드 한정
등록 소요 시기	별도 소요기간 없음
도입 취지 및 근거 규정	◦ 호주 농림수산환경부는 호주로 수입되는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한 법률, 정책, 표준 및 프로세스를 구성 *근거 규정 - 생물 보안법(Biosecurity Act 2015) - 생물 보안규정(Biosecurity Regulations 2016) - 수입식품 관리법(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 원산지 라벨 정보에 관한 기준법(Country of Origin Food Labelling Information Standard 2016) - 식품 기준 코드(Food Standards Code) - 수입식품 관리 규정(Imported Food Control Regulations 2019) - 수입식품 관리명령(Imported Food Control Ord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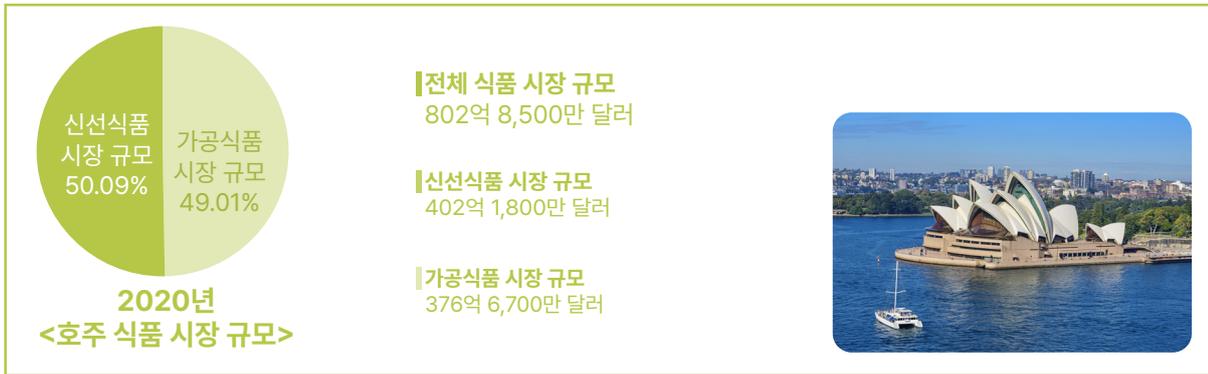
호주

-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도: 캔버라(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
- 면적: 7,686,850km²(한반도의 약 78배)
- 언어: 영어
- 민족 구성: 백인(약 95%), 원주민(약 2%), 아시아(약 1.3%)
- 주요 종교: 오스트레일리아 성공회, 로마 가톨릭
- 통화: 호주 달러(AUD, AU\$) (US \$1≒AU \$1.52)

| 자료출처: 외교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2020년도 기준
호주 식품시장 규모
802억 8,500만 달러**



| 자료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aT)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호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호주 검역청에서 관리하는 검역을 받아야 하고, 호주 식품 표준지침(ANZFS)을 준수해야 한다. 호주 내 유통되는 식품과 수입 식품엔 모두 동일한 기준·규격이 적용된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통되는 식품류에 관한 기준과 관리를 담당한다. 식품의 분류와 기준을 정하고 호주 검역청의 통관 절차에서 적합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며, 호주 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식품 안전과 위험 요소의 수준에 따라 위험 식품을 결정한다.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은 의약품을 포함해 호주 내에 유통되는 식품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호주 검역청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식품의 사전 관리기관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 관리기관으로 볼 수 있다. 호주에 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것은 수입허가 조건(Import Condition)과 수입식품 고시(Imported Food Notice)다.

수입허가 조건(Import Condition) / 수입식품 고시(Imported Food Notice)

호주 검역청(AQIS)에서 호주로 반입되면 안 되는 미생물이나 질병의 오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수입자는 수입절차에 들어가기 전, 호주 검역청이 관리하는 수입식품 고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호주 검역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절차에 필요한 필수 사항 등을 공지하고 있다.

수입자는 이를 통해 통관 부적합 가능성을 줄이거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호주 검역청은 '수입식품 고시' 웹 사이트를 통해 식품이 호주로 수입될 때 필요한 검사와 인증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호주 식품 수입 가이드 등 정보 페이지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



호주 수입식품 고시 등 정보 페이지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goods/food/notices>



호주·뉴질랜드 공동식품 기준(ANZFSC)

호주·뉴질랜드 공동식품 기준(ANZFSC, Australian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이 만든 식품 기준 코드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생산하고,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필요 정보가 나와 있어, BICON 사이트와 함께 호주로 식품 수출 시 매우 유용한 정보원이다.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식품 표준지침(ANZFS)을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호주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은 EU와는 달리, 수출국이나 사업자가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 규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규제·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하는 등 사후 관리를 중시한다. 통관·검역 과정에서 수입식품 검사 프로그램(IFIS)을 통해 생물 보안시스템(BICON)과 호주·뉴질랜드 식품 표준코드(ANZFSC)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품 라벨링 요구사항



- ① 영양 정보
- ② 함유량 표기(%)
- ③ 제품명
- ④ 제품 반환 정보
- ⑤ 알레르기 유의 사항
- ⑥ 식품 기한 표시
- ⑦ 재료 목록
- ⑧ 식품 첨가물
- ⑨ 가독성
- ⑩ 사용기준 및 보관 방법
- ⑪ 원산지

3. 인증별 식품인증 가이드

종교·문화적 인증 / 제품 기능성 인증

할랄 인증(HALAL)

- 말레이시아 JAKIM
- 인도네시아 BPJPH
- 싱가포르 MUIS
- 태국 CICOT
- UAE(아랍에미리트연방) ESMA
- 미국 IFANCA

코셔 인증(KOSHER)

- 글루텐프리(Gluten-free)
- 비건(VEGAN)
- 비유전자변형 식품(Non-GMO)

» 할랄 인증

□ 개요



○ 할랄 인증(HALAL)

HALAL(할랄)은 국제 인증이자, 종교·문화적 인증이다. 식품의 가공부터 포장·보관·운송 등 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한 하람 식품과 철저한 분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증제도이다.

이슬람 국가 정부나 민간기관이 주도해 제품이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제품임을 인증한다. 할랄은 신이 허락했다는 이슬람의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과 보관 과정 중에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는 인증으로 인식돼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식품뿐 아니라 패션·화장품·의약품·관광·물류 산업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신앙을 중시하는 이슬람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할랄 인증기관이 정부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의무화되고 있다.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할랄 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뜻한다. 과일, 채소, 곡류 등 식물성 음식, 해산물 등이 여기 속한다. 이슬람식 도축방식인 다비하(Dhabihah, 짐승의 머리를 메카 방향으로 돌려 눕히거나, 든 채로 날카로운 칼로 고통 없이 목을 치고 모든 피 방혈)에 따라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된 염소·닭고기·쇠고기 등도 할랄이다. 모든 종류의 알코올과 향정신성의약품은 금기인 하람이다. 과자·빵·주스·가공식품에도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한다.

할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할랄 인증기관은 (재)한국이슬람교(KMF), 한국할랄인증원, 한국과학융합시험연구원, (주)이니할랄코리아(IHK)(LPPOM MUI한국지사) 등이 있다.

| 세계 할랄 시장 규모



| 출처: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할랄 소비재 수출시장 현황 및 수출 확대 방안, 2020)

| 2015~2019년간 할랄 소비재 시장 수출 실적 비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UAE 수출 중인 312개 업체 대상)

할랄 인증 기업

수출 증가 58.0%

할랄 비인증 기업

수출 증가 37.4%

| 출처: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할랄 소비재 수출시장 현황 및 수출 확대 방안, 2020)

주요 할랄 인증 종류

인증기관	국가	주요 내용	절차	인증 로고·홈페이지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은 계도기간(5년)을 거쳐 2024년부터 할랄 인증이 의무화 될 예정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halal.go.id
싱가포르 WAREES (MUIS) 할랄 인증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품질경영시스템 을 중심으로 할랄 식품에 대해 심사하고, 음식이나 식품 관련 산업의 성격에 따라 7종류의 할랄 인증이 가능 ·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산하 Warees Halal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의 실질적 업무 담당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 인증 과 교차인증을 체결로 국내 KMF인증을 취득하여 싱가포르로의 할랄 식품 수출 가능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www.muis.gov.sg/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및 육류기반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www.halal.gov.my/v4/
미국 IFANCA 할랄 인증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ANCA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 · 국내에서 시험 및 인증 취득 가능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www.ifanca.co.kr www.ifanca.org
UAE ESMA 할랄 인증	아랍에미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랄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 · 육류 및 육류를 포함한 식품은 할랄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 국내 승인받은 인증대행기관을 통해 검사 및 인증 취득 가능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www.ihcc.co.kr https://eservices.esma.gov.ae
한국 KMF 할랄 인증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료 및 원재료, 제조공정 등이 할랄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하람(HARAM)으로 규정되는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 말레이시아 JAKIM 인증, 싱가포르 MUIS 인증, 대만 THIDA 인증과 교차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www.kmfhalal.org

출처: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할랄 인증 범주 및 분야

구분	범주	내용
A	농업 1 (동물)	동물, 어류, 계란 생산, 우유 생산, 양봉, 어업, 사냥
B	농업 2 (식물)	과일, 채소, 곡물, 향신료, 원예제품
C	가공 1 (썩기 쉬운 동물성 제품)	농업 이후의 모든 활동 포함(동물·가금류 및 도축, 계란, 유제품·어류 제품)
D	가공 2 (썩기 쉬운 식품 성 제품)	신선과일, 신선 주스, 보존과일, 신선 채소, 보존 채소
E	가공 3 (실내온도에서의 장기간 유통기한 갖는 제품들)	통조림, 비스킷, 스낵, 기름, 음료수, 음료, 파스타, 밀가루, 설탕, 소금
F	사료 생산	동물성 사료, 어류 사료
G	음식 서비스	호텔, 식당
H	유통	소매점, 상점, 도매점
I	서비스	상수도공급, 세탁,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제품 개발, 공정 및 장비, 수의학 서비스, 이슬람 금융서비스
J	운송 및 보관	운송 및 보관
K	장비 제조	처리 설비, 자판기
L	화학제품·생화학 제품 제조	식품첨가제, 다이어트 보조식품, 세제, 가공첨가제, 미생물
M	포장 자재 제조	포장자재
N	기타 자재 제조 1, 2	기타 자재 1: 화장품 / 기타자재 2: 섬유, 가죽 제품 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할랄 대상 품목 범위

구분	할랄(HALAL) 범위	하람(HARAM) 범위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농산물 · 생선 · 유제품 · 밀, 쌀, 호밀 등 곡물류 ·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된 동물 · 제조 공정 중 사용된 주정 및 최종성분 알코올 함량이 0.5% 이하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MO 유전자 조작식품 ·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 되지 않은 동물 · 돼지고기와 피 및 파생된 부산물 · 맹수, 맹금, 파충류·곤충류 · 술 등 알코올 성분 · 화학적 또는 생명 공학적으로 처리된 첨가제 젤라틴 및 효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및 제조 과정에 교차오염 되지 않은 물, 완구, 전기제품 등 생활용품 및 공산품 · 의류, 건설 자재, 실내장식 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성 사료와 성장 호르몬 · 나지스(불결한 것)와 의도적 또는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할랄 인증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원료 입고	검사	· 원료 일치 여부 확인
		· 식별 표시 부착(원재료)
		· 하람 혼재 여부 확인
보관 / 이송	시설	· 비 할랄 원료와 구분 보관 · 식별 표시 부착(보관 장소)
	도구	· 이동 수단 구분
	계량	· 전용 계량 도구 사용
		· 식별 표시 부착
		· 사용기록 관리
	변형	· 제조 과정 중 변화
설비	· 하람 사용 공정과 생산 설비 공유 불가 · 설비 위생 확인	
보관 / 출하	표시	· 식별표시 부착(완제품)
환경	작업자	· 개인위생 상태 점검 · 전용 개인위생 장비 사용
국내 인증	교차	· 비 할랄 물질의 혼입(작업자, 설비, 도구)
	시설	· 구내식당 식단관리 · 휴게실, 흡연구역 관리
	환경	· 오염시설 위치 금지 · 야생동물 침입 차단

| 출처: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 인증 신청 절차

»말레이시아 JAKIM(요약)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도입 시기	1994년
관련 사이트	https://www.islam.gov.my/en/
통용 국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48개국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유효기간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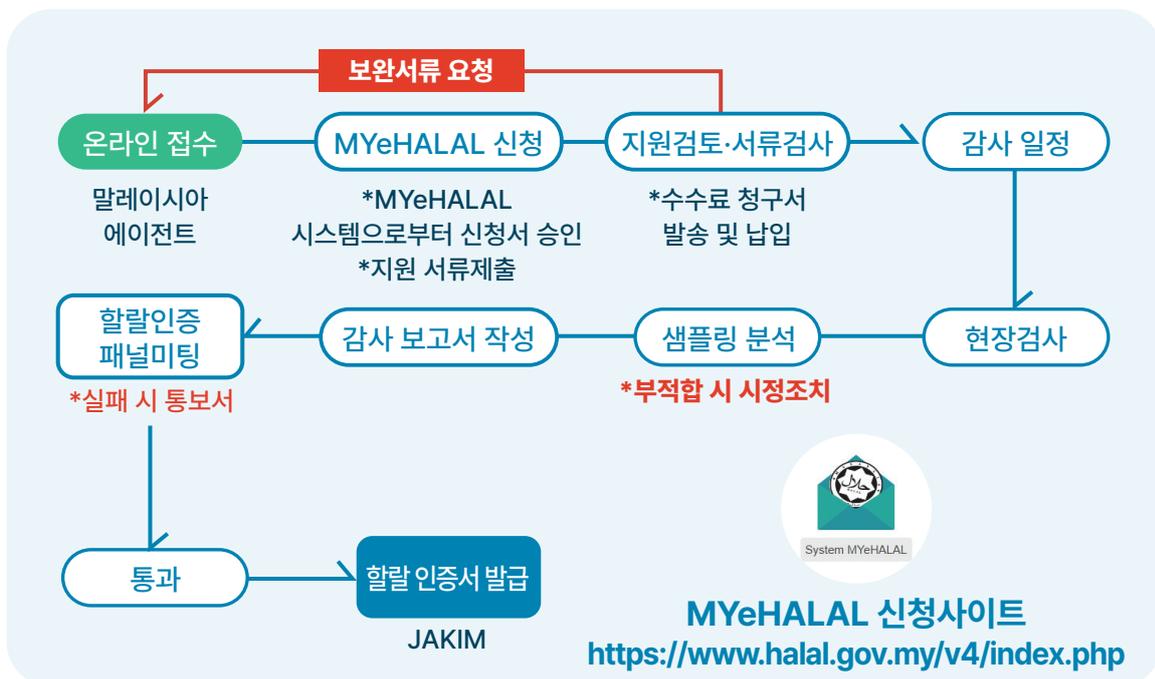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인 JAKIM 신청과 관련한 활동은 말레이시아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에이전트는 JAKIM 심사원의 출장과 현장 심사에 동행한다. JAKIM 할랄 인증 신청은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홈페이지(<http://apps.halal.gov.my>) 통해서 하게 돼 있다.

124

인증 조건과 절차 준수 시 신청에서 인증까지 6~9개월이 소요되었으나 할랄 인증 정책 2.0도입하여 국내 할랄 인증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0일, 해외 신청은 3달 내로 인증서 발급하고 있다.

유효기간(2년) 만료 이전에 재승인 신청 후 같은 절차와 비용 부담을 하면 JAKIM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을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JAKIM에 서면 보고하게 돼 있다.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허가 절차



»인도네시아 BPJPH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 </div> </div>
인증기관 (관할기관)	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도입 시기	1988년
관련 사이트	https://bpjph.halal.go.id/
통용 국가	싱가포르, 타이완, 스리랑카 등 44개국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유효기간	4년(만료일 2개월 전 인증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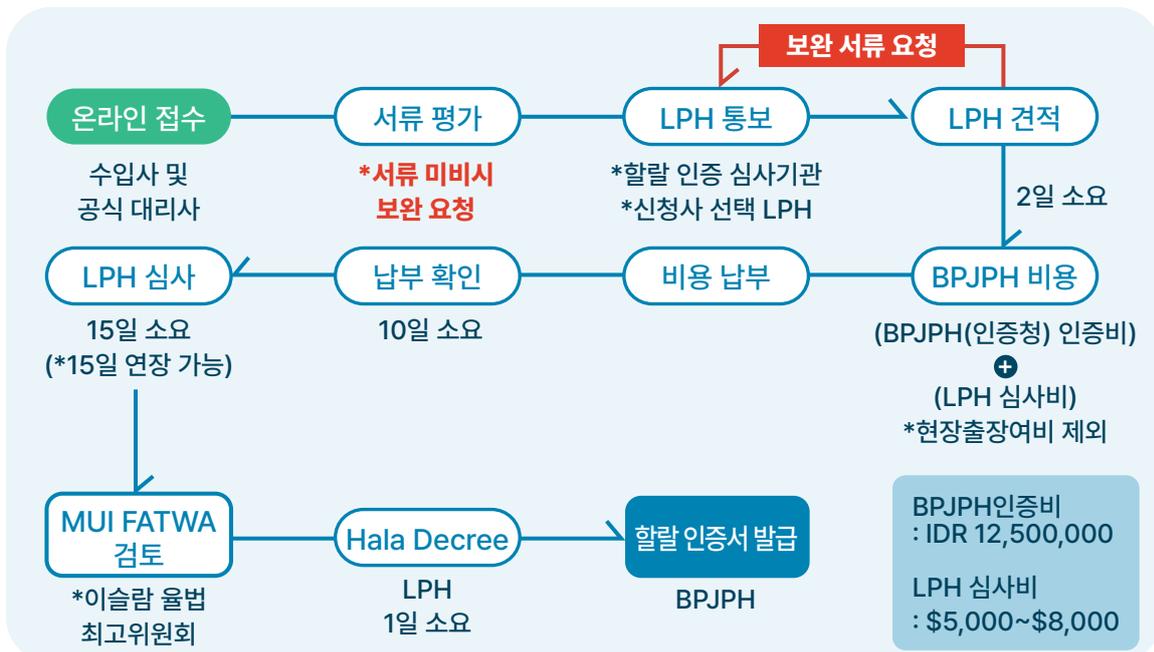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선 할랄 인증기관이 2019년 10월부터 민간 인증기관인 MUI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 (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으로 변경됐다. 식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계도기간(5년)을 거쳐 **2024년부터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과 갱신은 홈페이지(<http://ptsp.halal.go.id>)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할랄 인증서 발급 소요 기간은 제품별·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4~8개월 걸린다.

인도네시아 JAKIM 갱신등록은 유효기간(4년) 만료 2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해외 승인 할랄 인증기관을 가공식품·도축장·향료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승인하고 있다.

LPPOM MUI
교차인증기관리스트
<https://bit.ly/41FPdPP>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허가 절차



| 출처:KOTRA 자카르타무역관(PT. Green Nature Farm, BPJPH Nomor 40 Tahun 2022)

»싱가포르 MUIS

□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radio"/>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Warees Halal (MUIS)
도입 시기	1987년
관련 사이트	https://www.muis.gov.sg/
통용 국가	GCC 6개국(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 MABIMS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유효기간	2년(만료일 2개월 전 인증갱신)

싱가포르에선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MUIS 산하 WAREES Halal 인증기관에서 시험, 인증서 발급 등 실무를 담당한다. 싱가포르 할랄인증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을 담은 표준 참조문서는 '싱가포르 MUIS 할랄 기준(Singapore MUIS Halal Standard)'이다.

싱가포르 MUIS 할랄인증 신청은 온라인(<https://www.halal.sg/ehalalv2/login.aspx>)으로 할 수 있다. 심사는 MUIS 할랄인증 시스템에 따라 수행하며, 현장에서 인증심사를 한다.

싱가포르 할랄인증은 발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 동안 유효하다. 할랄인증을 취득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된다. 싱가포르 할랄 인증서 소유 업체는 인증서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기업은 Warees Halal Limited(www.wareeshalal.sg)를 통해 갱신을 신청한다.

싱가포르 MUIS 할랄인증은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주변 아시아 이슬람 국가와 걸프 협력 이사회(GCC) 국가의 교차인증을 통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KMF위원회가 MUIS 할랄 교차 인증을 받았다.

FHCB(MUIS 외국 할랄 인증기관 인정 제도)

MUIS는 해외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식품을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수입할 할랄 제품을 인증하는 역할은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해당 국가의 해외 할랄 인증기관(FHCB)으로 알려진 외국 할랄 인증기관에 위임된다.

FHCB에 대한 MUIS의 인정은 싱가포르 Muis Halal Standards(SMHS)와 유사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할랄 표준을 채택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MUIS가 인정한 FHCB 목록

<https://www.muis.gov.sg/-/media/Files/Halal/HSN/List-of-Muis-recognised-FHCBs-Transition-Phase---updated-31-Oct-2023-vf-2.ashx>

»태국 CICOT

□ 기본 정보

구분

필수

선택

공인

민간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CICOT (The Central Islamic Council of Thailand, 태국 중앙이슬람위원회)
도입 시기	1969년
관련 사이트	https://www.halal.co.th/en/
통용 국가	한국, 인도네시아 등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유효기간	1년(만료일 60일 전 인증갱신)

태국의 할랄 인증은 CICOT 할랄 인증이다. 할랄 인증기관인 태국 이슬람 중앙회(The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ailand)는 2003년 8월 설립됐다. 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할랄 기준, 규정 연구, 승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태국 할랄 인증을 위한 참조문서는 태국 중앙 이슬람 위원회가 만든 THS 24000 : 2552다.

태국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태국 할랄 인증 홈페이지(<http://www.cicot.or.th>)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을 신청한다. 태국 할랄 인증을 받기까지 약 60일이 소요된다. 인증 갱신은 유효기간(1년) 만료일 60일 전에 해야 한다(갱신 서식 제출).

태국 CICOT의 할랄 인증은 인도네시아 MUI, 말레이시아 JAKIM 등 주요 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 영국 HFA 등 주요 할랄 인증기관과 교차인증을 통해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 태국 할랄 로고는 '다이아몬드 할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CICOT은 매년 개최하는 'Thailand Halal Assembly(전시회)' 기간에 세계 각국의 인증기관과 교차인증 협약(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맺어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 UAE(아랍에미리트연방) ESMA

□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radio"/>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공인 <input type="radio"/>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ESMA (Emirate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Authority, 에미리트 표준측량청)
도입 시기	1988년
관련 사이트	https://eservices.esma.gov.ae/
통용 국가	말레이시아, GCC 6개국 공동 인정(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등)하므로 중동지역 대부분 통용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유효기간	품목별로 상이(제품 및 시설 3년)

UAE(아랍에미리트연방)의 정부 표준기관인 ESMA(Emirate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Authority, 아랍에미리트 표준측량청)가 할랄 인증기관이다. ESMA는 할랄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ESMA 할랄 인증은 ESMA 홈페이지(<http://www.esma.gov.ae>)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올린 서류를 바탕으로 ESMA가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의 생산 현장과 제품에 대한 현장 심사를 수행한다. 현장 심사 결과와 부적합 사항의 시정 사실을 바탕으로 심사단이 모여 심사보고서를 검토한다. 심사단이 할랄 인증서와 국가 할랄 마크(Halal National Mark)를 수여할지를 결정한다. ESMA 할랄 인증에 평균 3개월이 걸린다.

ESMA는 현재 해외 할랄 인증기관을 승인하기 위해 DAC(두바이인정센터)와 GAC(GCC 인정센터) 등 두 곳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했다. 두 인정기관에서는 전 세계 할랄 인증기관의 승인 신청을 받는다. ESMA의 승인을 받은 해외 할랄 인증기관은 ESMA를 대신해 인증심사를 할 수 있다.

ESMA 할랄 로고(국가 할랄 마크)의 사용을 추천할 수도 있다. ESMA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할랄 인증기관의 로고는 아랍에미리트연방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할랄 인증은 민간기관 인증으로, 1994년 (재)한국 이슬람교에서 인증을 시작했다. 2015년 한-UAE 간 할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정부의 할랄 산업 육성 정책이 시행되면서 인증기관 수도 증가했다.

ESMA가 공식 승인한 국내 인정기관은 한국인정지원센터(KAB)가 있으며 할랄 인증기관은 (주)국제할랄 인증지원센터(IHCC)가 있다. (사)할랄협회(KOHAS)는 ESMA 공식 승인 기관은 아니나 IFANCA와 할랄인증 동시발급 협약(TLS)을 체결하여 신청 기업이 희망할 경우 ESMA 할랄인증을 단독 혹은 동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미국 IFANCA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도입 시기	1969년
관련 사이트	https://ifanca.org/
통용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유형	종교·문화적 인증
유효기간	1년(만료일 60일 전 인증갱신)

미국의 대표적인 할랄 인증기관은 IFANCA(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다. IFANCA는 1982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민간 법인이다. IFANCA는 할랄 인증, 소비자 지원, 할랄 연구개발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약 30년에 걸친 할랄 인증 발급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3,000여 제조사에 할랄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IFANCA 할랄 인증을 받아 전 세계 이슬람 시장에 수출되는 브랜드에는 코카콜라, 던킨, 배스킨라빈스, 고디바, 스타벅스, 하인즈, 네슬레, 카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초콜릿 과자, 두유, 유제품 등 다수의 유명 상표 제품이 IFANCA 할랄 인증을 바탕으로 해외 할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IFANCA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와 함께 세계 3대 인증기관 중의 하나다. IFANCA 할랄 로고는 초승달 M 로고다. 우리나라에 지사인 IFANCA Korea가 있다.

전 세계 이슬람 시장 중 자국 규정에 따라 해외 할랄 인증 표시를 통제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아랍 에미리트 정도다. IFANCA는 이들 세 국가로부터 공통으로 승인된 기관이다.

미국에는 IFANCA 외에도 Islamic Services of America, Halal Food Council USA 등의 여러 인증기관이 있다. 인증기관마다 할랄 승인된 제품에 특정 로고를 부여하고 있다.

IFANCA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Islamic Service of America	Halal Food Council USA

| 출처:Kati 농식품수출정보(미국, 할랄의 의미와 할랄 인증, 2019)

» 코셔 인증

□ 개요



○ 코셔 인증(KOSHER)

코셔(Kosher)는 유대교의 음식에 대한 율법을 칭하는 말인 히브리어 카쉬루트(Kashrut 또는 Kashrus)의 영어식 단어다. '적합한·허용된·용인된'이라는 뜻이다. 코셔 식품(Kosher food)은 카쉬루트(코셔 식품법)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한 식품으로, '유대교의 율법에 맞는 식품'이다. 코셔 마크를 사용하려면 코셔 인증기관의 인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코셔 인증기관은 코셔 인증 심사를 통과한 음료나 식품, 식자재 등 제품 포장에 히브리어인 '헵셔'(hekhsher)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셔 인증은 코셔 제품의 모든 재료와 제조 과정이 코셔 방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식자재·조리방식·설비 등에 관한 규정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담은 토라(Torah)에 근거한다. 코셔는 종교적으로 성서·탈무드·유대교 경전에 기록된 전통관습으로 약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랍비들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수정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코셔를 계승하고 있다. 코셔 인증은 최종 제품에 국한한 인증이 아니라 원재료와 가공 등 식품제조 전 공정을 포괄하는 인증제도이다. 인증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엄격한 기준의 점검을 받아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코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 인증 시스템 중 하나다. 코셔 인증기관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셔 인증기관에는 이스라엘 랍비청 등 공공 인증기관과 사설 인증업체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300~500여 곳의 코셔 인증기관이 있다. 코셔 인증기관은 각각의 웹 사이트를 통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인증비용은 기관별로 다르지만, 평균 4,000~6,000달러가 든다.

코셔는 인증절차가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해 '클린 라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코셔 인증 범위

구분(기호/명칭)	내 용
***D(유제품)	우유, 유류 또는 이와 유사한, 분명하게 비 파르브 품목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DE(유제품 장비)	제품은 유제품 성분을 포함하지 않지만, 유제품 장비로 생산
***M(육류)	제품에 육류 성분 포함 시
***ME(육류 장비)	제품은 유제품 성분을 포함하지 않지만, 유제품 장비로 생산
***P(패스 오버)	유월절 승인 표시 하는 것
***F(생선)	생선 성분 포함한 제품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 주요 코셔 인증 종류

인증기관	국가	주요 내용	절차	인증 로고·홈페이지
OU (orthodox Union)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 최대 코셔 인증기관 · 80개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약 100만개 제품의 인증 · 코카콜라, 하인즈 및 육류 대부분 허가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www.ou.org
OK Kosher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코셔 인증기관 · 전 세계에 사무소 운영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oukosher.org/
Star-K Kosher Certification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설립 · 국제적 인증기관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www.star-k.org
KOF-K Kosher Supervision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셔법의 최고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부착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www.earthkosher.com
CRC (Chicago Rabbinical Counci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년대 중반에 설립된 시카고 랍비 종단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www.crcweb.org
KLBD (Kashrut Division of the London Beth Din)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 진출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www.kosher.org.uk
MBD (Manchester Beth Din)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다국적 기업과 지역 생산업체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인증 업무수행 · 유대식 도축, 일반 상품의 코셔 인증 진행 	서류 검토 후 현장 심사	 https://www.mbd.org.uk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코셔 인증기관별로 인증 절차가 조금씩 다르다. 코셔 인증 심사에선 원재료 검열부터 공장 시설, 식자재 공정까지 식품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일반적인 원재료에 육류나 유제품이 포함돼 있으면 인증 과정이 더욱 까다롭게 진행된다. 육류와 유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제조 시설은 코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코셔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시설 라인은 인증기관의 랍비가 코셔 화(Kosherizing)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식품 제조업체가 한 공장 내 제조설비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면, 비코셔 제품을 취급하는 라인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식품 제조 시설 전체가 코셔이어야만 인증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재료에 비코셔 식품이 포함돼 있다면 완제품의 코셔 인증은 받을 수 없다. 코셔 인증이 허가된 다른 대체 원료를 사용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코셔 인증 요건

분류	내용
원재료(제조공장 내 모든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 재배, 사육, 가공 방법 · 운송 과정 · 보관 방법(코셔 또는 비코셔, 파르브로 분류해 보관)
제조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유제품과 분리 여부 · 위생관리와 해충 구제 · 해산물류와 분리 여부 · 교차 감염 여부 · 해당 원재료의 운송 수단
완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재료와 포장 과정 · 정확한 코셔 마크 부착 여부 · 주기적인 코셔 인증 식품 리스트 관리 가능성 유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세계 5대 코셔 인증기관으로 OU(Orthodox Union) Kosher, OK Kosher, KOF-K Kosher Supervision, Star-K Kosher, Chicago Rabbinical Council(CRC)이 있다. 5대 코셔 인증기관은 전 세계 코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코셔 인증의 80%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엔 해외 5대 코셔 인증기관 가운데 OU Kosher, OK Kosher, Star-K Kosher가 한국 지사를 두고 있다.

인증 신청 절차



»글루텐프리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 필수 ● 선택 ○ 공인 ● 민간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GFCO(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
도입 시기	2005년
관련 사이트	https://gfco.org/
통용 국가	북미, 유럽 등지 등
유형	기능성 인증
유효기간	1년

□ 개요



글루텐 프리(Gluten free)

인증
소요기간
약 6~18주

인증 비용
품목 당
약180만원

글루텐(gluten)은 밀·보리·귀리 등에 있는 글루테닌·글리아딘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성분이다.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의 일종이다. 글루텐 프리(Glute-Free)란 글루텐이 함유돼 있지 않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효소 첨가나 물리적 방법으로 글루텐을 분해 또는 제거한 것이다. 글루텐 성분에 대해 복통·소화불량 등 알레르기 반응(셀리악병)을 보이는 소비자를 위해 글루텐이 포함되지 않은 글루텐 프리 제품을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글루텐프리 제품으로 인증받으려면 최종 제품에 글루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밀을 함유한 제품도 글루텐 제거 과정을 거치면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는 최소 2년간 글루텐 프리 인증 취득한 제품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글루텐 첨가에 관한 인증제도를 운용하는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GFCO(Gluten 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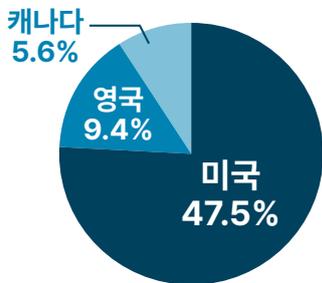
GFCO의 글루텐 프리 인증을 받으려면 홈페이지(<http://gfco.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이어 GFCO 자체적으로 공장 실사와 성분 검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GFCO에서 승인한 타 인증기관에서도 같은 검사 통해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증신청 전 홈페이지에서 제조공장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 후 8~12주 이내에 공장 실사가 진행(공장 실사는 최소 3시간, 제품 성분과 공장설비에 대한 서류 검토 병행)된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부적합 사항과 검사원의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부적합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GFCO 글루텐 프리 인증 표준 규격

- 1) 모든 완제품의 글루텐 함량 10ppm 이하
- 2) 제품의 모든 성분은 글루텐 함량이 10ppm 이하
- 3) 보리 기반 성분 함유 불가
- 4) 완제품, 고위험 원자재와 장비에 대한 반복 검사 수행
- 5) 모든 제조공장은 최소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완제품을 GFCO에 보내 정기적 검토 진행
- 6) 알레르기·무글루텐 라벨링 지정과 우수 제조관리 기준(GMP)에 관한 모든 정부 규정 준수

2022년 국가별 글루텐프리식품 시장규모



- 미국 3,911백만 달러
- 영국 809백만 달러
- 캐나다 455백만 달러

" 세계 글루텐프리식품시장은
2022년부터
연평균 8.1%씩 성장하여
2026년 116억 2,320만 달러
(한화 약 14조)에 달할 전망"

□ 인증 신청 절차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영국BRCGS와 글루텐프리 인증 교차 인정 협력체계 구축

" 2023. 04. 18.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한국글루텐프리 인증사업단이 영국 BRCGS와 업무협약"

- BRCGS와 협약을 통해 한국글루텐프리인증(KGFC)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루텐프리인증 교차인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 컨설팅 공동 운영 등을 추진 예정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한국쌀가공식품협회(<https://www.kgfc.or.kr/information/notice/28>)



»비건 인증

□ 개요



비건 인증(VEGAN)

VEGAN 인증은 국제 인증이자, 제품 기능성 인증이다. 제품에 대해 동물성 원료와 동물 유래 원료를 포함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며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인증이다. 채식은 과거엔 건강과 종교적인 목적으로 했지만, 최근엔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해 채식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비건 인증은 대부분 다른 인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당 비건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인증기관인 IGC는 'Vegan Society', IGSC는 'BEveg', GSC는 'EVE-VEGAN'을 인증하고 있다. 컨트롤 유니언은 자사 비건 인증을 한다.

'비거니즘(veganism)'은 육류(어류·갑각류·곤충 포함), 유제품, 계란, 꿀 등 모든 동물성 식자재와 기타 모든 동물 유래 성분을 식단에서 배제한 채식주의자 식사(vegetarianism)를 말한다. '비건(vegan)'은 비거니즘 식습관을 따르는 사람 혹은 식이 자체를 가리킨다. 대부분 비건은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을 거친 모든 개인이나 가정용 제품의 사용을 피하고, 가죽·모피·양모 등 모든 동물 유래 제품의 구매나 사용하지 않는다. 육식만을 피하는 채식주의자보다 훨씬 엄격하다. 비건(vegan)이란 개념은 1944년 도널드 왓슨(Donald Watson)이 영국 비건 협회(Vegan Society in England)를 공동 창립했을 때 처음 등장했다. 초기에는 '비 유제품 채식주의(non-dairy vegetarian)'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1951년 영국 비건 협회는 "비건은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교리"라고 정의했다.



출처: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 Inc)
한국식품연구원 해외 식품인증지원센터(비건 식품시장 동향 분석, 2019)

| 비건 인증 심사 항목

구분	점검 세부 항목
동물성 원료, 동물 유래 성분	원료 입고·검수부터 전체 생산 제조공정 단계에서 동물성 원재료를 이용하는 등 직·간접 영향 없어야 함
동물실험	제품의 제조, 개발, 제품 성분에 대해 회사 자체 또는 의뢰하여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야 함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동물의 유전자 또는 동물 유래 성분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식물성 성분 제외
교차오염 방지	생산 공정 중 Non-vegan물질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수립 필요

출처: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비건 인증 로고는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성분 목록을 보지 않고도 로고를 참고해 쉽게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비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 과정에서 동물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의 전 공정에서 동물 성분과 교차오염이 없어야 한다. 동물 실험도 제품의 개발과 제조 단계에서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 비건 인증기관은 서로 비슷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인증심사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조사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 후 비건 인증을 부여하는 곳과 서류 심사 후 원료 검사나 실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곳이다. 비건 인증 시험에선 동물성 유전자 검사를 통해 비건을 판별한다.

비건 관련 인증기관은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다수 존재한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처(FD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건 규정은 없다. 비건 관련 인증기관에서 자체 인증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상표권이 있는 비건 마크를 붙이도록 한다. 수출업체가 비건 마크를 디자인하여 제품 포장지에 직접 부착하기도 한다. 대다수 비건 인증기관은 비건(Vegan)과 채식주의자(Vegetarian)에 대한 두 가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비건 인증 종류

인증기관	국가	주요 내용	절차	인증 로고·홈페이지
한국 비건인증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비건 인증 심사 및 평가, 교육 등 실시 ·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야 함 · 공정 전, 중, 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서면 심사 및 제품 검사	 https://vegan-korea.com/
비건 표준인증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성 원료 및 유래 성분,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유전자 변형 생물 제외 · 생산과정에서 교차오염 방지 필요 	서면 심사	 http://www.koreavegan.co.kr/
Vegan Society England 영국 비건 협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4년 설립된 유럽 최대 인증기관, 유럽 전체 통용 · 전체 생산 공정에 걸쳐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인증 부여 · 유전자 변형 생물은 제외 	서면 심사	 https://www.vegansociety.com/

출처: 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인증기관	국가	주요 내용	절차	인증 로고·홈페이지
American Vegetarian Association (AVA) 미국채식협회	미국	· 비건/베지테리언 두 가지 인증 가능 · 인증을 위해 조리법, 패키지 메뉴, 성분 목록 등 모든 정보를 AVA에 제출	서면 심사	 https://americanveg.org/
Vegan Action	미국	· 비건 인식 재단(Vegan Awareness Foundation)에서 관리 ·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 인증	서면 심사	 https://vegan.org/
VegeCert	캐나다	· 비건 및 채식주의자 식품을 인증하는 비영리 조직 · VegeCert 심사는 코셔 인증 기관 중 하나인 COR-코셔협회에서 수행	서면 및 현장 심사	 https://vegecert.com/
V-label	EU	· 유럽 채식주의자 연합(EVU)에 의해 설립된 비건 인증단체 · Vegan과 Raw-Vegan으로 구분하여 인증 · 원재료 또는 첨가물 원산지를 확인	서면 심사	 www.v-label.eu
ICEA 윤리 환경 인증연구소	이탈리아	· 비건 인식 재단에서 관리 · 동물성 제품 및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 인증	서면 심사	 https://icea.bio/
Vegan Society Germany 독일 비건 협회	독일	· 제품 포장에 동물성 성분 및 첨가물(excipient)이 없어야 함	서면 심사	 https://www.vegane.org/
VEGANOK	이탈리아	· 1,000개 이상의 인증 회사와 서비스, 수만 개의 제품 보유 · 제품 포장에 대한 제어를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표준 제시	서면 심사	 https://www.veganok.com/
Vega Project Japan	일본	· 2016년 설립된 일본의 비건 협회 · 비건/채식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제조 기업 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에 인증 제공	서면 심사	 https://vegeproject.org/
EVE-VEGAN	프랑스	· 비건 프랑스협회가 설립한 비건 인증단체 · 화장품, 식품, 섬유, 건강기능식품 등 인증 및 사후관리 실시	서면 및 현장 심사	 https://www.certification-vegan.org/

국내에도 비건 인증기관이 있다. 2018년 3월 설립된 ㉠한국 비건 인증원(Korea Agency of Vegan Certification and Services Inc.)은 국내 최초의 비건 인증 전문기관이다. 비건 인증, 비건 인증 기술 지원, 비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5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과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민간기관의 자율인증으로 체계가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채식협회(The Vegetarian Society, 영국), VEGANOK SRL(이탈리아), 비건 협회(The Vegan Society, 영국), Swiss Veg(스위스) 등 해외 비건 인증기관도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표시·광고의 비건 인증 보증기관으로 인정했다.

비건 인증별 비교



구분	한국비건인증원	비건표준인증원	Vegan-society	V-level	EVE-Vegan
인증 소요 기간	45~60일	10일	6개월	20~60일	30~45일
심사비용(최초)	제품별 45만 원 (검사비용 포함)	제품별 5~10만 원	1년 약 1,330만 원 2년 약 2,200만 원	제품별 약 30만 원	제품별 225~465만 원
심사비용(갱신)	제품별 25만 원	제품별 2~5만 원	규모별 상이	제품별 약 40만 원	제품별 190~430만 원
심사 방법	서류평가 시험검사	서류평가 (필요 시 시험검사)	서류평가	서류평가	서류평가 현장검사
인증 유효기간	1년	1년	1년~2년	1년	18개월
산출물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실적	1,450개 이상	108개 이상	50,000개 이상	1,500개 이상	5,000개 이상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인증 신청 절차



»비유전자변형 식품 인증

□ 기본 정보

구분	<input type="radio"/> 필수	<input checked="" type="radio"/> 선택		<input type="radio"/> 공인	<input checked="" type="radio"/> 민간
-----------	--------------------------	-------------------------------------	--	--------------------------	-------------------------------------

로고



인증기관 (관할기관)	Non-GMO Project
도입 시기	2010년
관련 사이트	https://www.nongmoproject.org/
통용 국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유형	기능성 인증
유효기간	1년

□ 개요



비유전자변형 식품(Non-GMO)

인증
소요 기간
3~6개월

Non-GMO
Project 인증
북미 시장 내
통용

Non-GMO는 국제 인증이자, 제품 기능성 인증이다. Non-GMO 인증은 유전자 변형 성분이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인증이다. 비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공급망 관리와 관련한 인증제도인 셈이다.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의미한다. 소비자의 GMO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의 Non-GMO 인증 제품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Non-GMO 인증은 GMO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Non-GMO 인증기관은 Non-GMO Project다. 여기서 Non-GMO 식품, 음료, 이유식과 분유, 개인 위생용품, 반려동물용품, 사료, 건강보조식품, 동물사료와 식품 종자 등에 대한 GMO 검증을 하는 기관이다. NSF International, Control Union Korea 등에서도 NON-GMO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 비유전자변형 식품 인증범위

구분	내용
카테고리 1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제품 (Non-GMO 전 조항 적용)
카테고리 2	동물성 원료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 (Non-GMO 일부 규정 적용)

| 출처:식품의약품(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위한업무처리 지침마련연구, 2021)

Non-GMO 인증을 받았어도 유전자 변형 물질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0.9~5% 수준까지 유전자 변형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 이는 현재 GMO 정량 시험법의 한계로 인해 법적·과학적으로 유전자 변형 물질 함유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서다.

완제품이나 가공된 투입물이 아닌 원재료 물질에 대해서도 GMO 정량 시험을 수행하며 승인된 실험실에서 낸 검사 결과만을 인정한다.

Non-GMO Project는 신청 식품에 유전자 변형 물질이 일정 이상으로 함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한 뒤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Non-GMO 인증기관과 기술관리기관 두 곳에 각각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 발급 후 인증기관에서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Non-GMO 인증 적용 식품은 유아식과 유아용 조제품, 디저트류(사탕·초콜릿)와 감미료, 오일류, 소스류, 주류, 유제품, 과일, 채소, 곡물, 육류, 생선, 계란, 두부, 포장된 냉동식품, 수프, 비타민과 보충제, 허브, 향신료와 기타 성분 등이다.

Non-GMO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Non-GMO Project에서 승인한 인증기관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시험과 인증 취득을 할 수 있다. Non-GMO Project 인증은 미국과 캐나다에 상표가 등록돼 있어 북미 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다. 인증 취득에는 3~6개월이 걸린다.

비유전자변형 식품 심사항목

분류	내용
인증대상 도·소매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및 식물성 번식 물질 ·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섭취하거나 국소 적용되는 일반의약품과 동종요법 도·소매 상품 · 사람이나 애완동물이 섭취하거나 국소 적용되지 않는 도·소매 상품 · 가축, 가금류, 꿀벌, 해산물 사료 및 보충제
비인증대상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된 투입과 표준에 나열된 성분 ·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되지 않는 상품(재배·생산지와 상관없이) · 특정의약품 및 기타 의료제품 · 살아있는 동물들 · 합성살충제 · 전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투입물로 구성된 상품 및 성분, 위험하지 않은 카테고리의 일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인증 신청 절차



4. 식품·인증 관련 법령 및 기타

미국 / EU / 기타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 규정

EU

EU 식품안전관리 / 식품안전 현대화법 규정

기타

나라별 동등성 인정 협정

»미국 식품·인증 관련 법령 및 규제

□ 개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약 4,800만 명(6명 중 1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12만 8,000명이 병원에 입원하며 3,000명이 생명을 잃는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는 2011년 식품안전 현대화법(이하 FSMA)을 제정했다. 식품 관련 질병 및 문제 발생 후 대처하는 수동적인 방식의 정책·규정에서 벗어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 안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FSMA는 식중독 등의 대응에서 예방으로 초점을 바꾼 법령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FD & C 법(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을 수정·보완한 FSMA는 4개의 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16개 조문)은 식품 안전 문제의 예방 능력 개선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위해요소 분석과 위험성 기반 예방관리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편(11개 조문)은 식품 안전 문제의 적발과 대응능력 향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력에 의한 대응, 집행 권한 부여 등이 주 내용이다.

제3편(9개 조문)은 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수입식품 검사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제4편(5개 조문)은 보조금 지원, 사무분배와 담당 조정 등 기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 로고



○ 식품안전 현대화법 규정

식품안전 현대화법의 규정은 크게 식품 규정과 식품 이외의 규정으로 구분된다. 식품 규정은 총 3가지로,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 농산물 안전성으로 구분된다.

수입업체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 검증 제도와 제3자 인증 규정 등을 통해 수입업체에 해외 공급업체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업체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관리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FSMA를 근거로 FDA는 해외의 식품 관련 시설이 미국 식품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제3자 심사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FSMA는 FDA에 강제적인 리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FDA가 자발적 리콜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FDA가 직권으로 리콜 조치를 할 수 있다.

FDA의 자료 등 서면 기록에 대한 접근권도 강화하고 있다. FDA 직원이 업체에 방문해서 요구하면 관련 서류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FDA는 직권으로 공장 등록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 출처: 해외 식품인증 정보포털(<https://www.foodcerti.or.kr/>)

FDA는 FSMA를 근거로 해 국내·수입 식품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FSMA는 미국 식품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국가와 기업에 적용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식품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FSMA의 식품 예방관리 체계는 크게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위해요소 분석 위험 기반 예방적 통제)와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최신 우수 제조관리 기준)로 나눌 수 있다.

HARPC는 위해요소 분석·예방관리·모니터링·개선 조치·검증의 5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예방관리가 cGMP이다. cGMP는 공정관리·알레르기 유발성분 관리·위생관리·공급망 관리·회수계획 등 분류된다.

FSMA는 인증 기준은 아니다. 이보다 포괄적인 미국의 식품안전관리 규정이다. FSMA에서는 과일·채소 등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기준인 GLOBAL GAP 기준과 식품 예방관리 기준인 HACCP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HACCP는 준비 5단계와 적용 7단계로 구성돼 있다.

HARPC에서는 HACCP의 준비 5단계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적용 7단계는 부분적으로 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용하고 있다.

HACCP 준비 5단계

- ① HACCP 팀 구성
- ② 제품설명서 작성
- ③ 용도 확인
- ④ 공정흐름도 작성
- ⑤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HACCP 7원칙

- ① 위해 분석
- ② 중요관리점(CCP) 결정
- ③ CCP한계기준 설정
- ④ CCP모니터링 체계 확립
- ⑤ 개선 조치 방법 수립
- ⑥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
- ⑦ 문서화, 기록유지 방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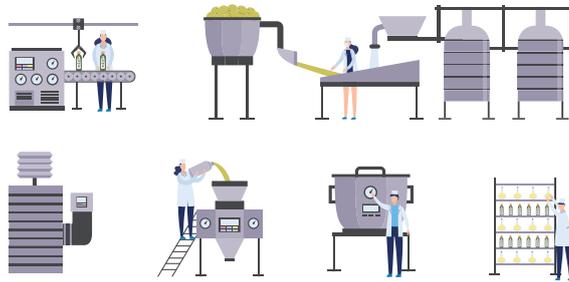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 규정만 따른다고 해서 미국으로의 농산물·식품 수출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FSMA 규정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며, 그 외 잔류농약·검역 요건 등은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

FSMA 중에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FSMA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해외공급업자 검증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외공급업체가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 검증할 책임을 수입업자에게 부여했다. 해외공급업자가 예방관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개선조치를 요구하도록 했다.



제3자 인증제도는 FDA가 감독역량 분담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를 근거로 해 제3자 인증기관(해외 식품업체 식품과 그 시설에 대해 감사 실시, 인증 발급)과 승인기관(제3자 인증기관을 인정)이 설립됐다. 제3자 인증기관은 식품 감사 실시 전에, 감사 범위와 목적, 감사 유형(의무감사·자문감사)에 관한 결정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의무감사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 식품 또는 시설 인증서를 발급한다.



FDA가 직접 해외 식품 시설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FSMA에 포함됐다. 이를 근거로 FDA는 미국에 식품 수출하는 해외 식품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국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철저한 현장 위주 심사,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FDA에 수입식품에 대한 증명서 요구 권한도 부여됐다.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FDA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FDA는 식품 리스크·생산지 리스크 등을 고려해 증명서를 요구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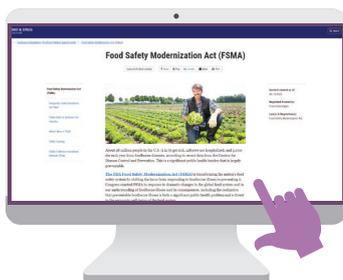
FSMA에는 식품안전 문제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중 하나가 식품 관련 시설 등록 갱신제 도입이다. 2012년부터 FDA는 짝수 연도마다 격년으로 식품 관련 시설의 등록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시설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과 예방관리 수립도 의무화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위해요소 평가, 모니터링 등 예방적 관리의 이행도 요구했다. 식품 관련 시설과 관련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 평가, 테러행위 등 고의적 유입 가능성 등 위해요소 확인, 분석한 위해요소의 서면 작성 등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농산물 안전 기준 설정도 의무화했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한 과일·채소 등의 생산·수확의 최소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새싹채소'(sprout)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

검사 빈도를 늘리고, FDA의 시험 검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FSMA에 들어있다. 식품업체의 위험을 바탕으로 점검을 의무 실시하고, 검사 횟수를 늘리도록 했다. 식품의 시험검사는 FDA가 인증한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리스크가 높은 식품의 이력 추적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에 담았다. 강제 회수(리콜) 제도를 도입하되, 압류 제도는 완화했다. 식품업체가 자진 회수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FDA가 강제 회수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FSMA 발효 이전에는 압류할 때 문제 식품의 건강위험 등 신뢰할 만한 증거를 요구했으나 '부정 불량 등 위반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로 변경했다.



FSMA에는 식품안전 제고를 위한 협력관계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주와 지방기관은 물론 해외 정부와 식품업체의 식품안전과 식품 방어 능력 향상 등 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했다. 해외 정부와 산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의 식품안전 요건에 관한 해외 정부와 식품생산업체 대상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수산식품 수입은 물론 국내외 수산물 업체의 검사에 관련한 자원 활용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FDA FSMA 페이지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and-dietary-supplements/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

FSMA 7가지 규제

2013년 1월, FDA는 식품안전 현대화법을 구성하는 7가지 규제를 발표했다. 2016년 5월 26일, 마지막 7번째 규제가 최종 확정됐다. 최종 확정된 FSMA의 7가지 규제는 다음과 같다.



①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요소 분석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보여주는 문서로 만들어진 식품 안전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②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 동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모범 제조 관행(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③ 농산물 안전성(Produce Safety)

- FDA는 과일·채소 등 농산물의 재배·수확·포장·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설정했다. 농산물 안전성의 최종규칙은 농산물 재배·수확·포장·보관과 관련한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규정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해요소와 의도적인, 또는 비의도적인 위해요소를 포함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쓰는 재료(거름·퇴비 등), 개인위생, 패키징, 온도통제, 재배지에서의 동물 활동 통제, 농업용수 관리 등도 다루고 있다.



④ 수입 식품 안전 검증 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 수입업체에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과 같은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SVP의 적용 대상은 수입되는 식품의 화주 또는 소유자다. 미국 반입 때 식품의 소유주 또는 화주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에이전트 등이 대행할 수 있다. FSVP 제도의 핵심은 누군가는 반드시 미국 내 수입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통제·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FDA에서는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을 도입했다. 수입업자가 "해외 공급자가 미국 기준에 따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인증을 자발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인증서는 수입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통관 시간이 단축되는 등 혜택이 있다.



⑤ 제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 식품 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 식품 시설이 FDA의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사·인증하도록 했다. 제3자 인증 프로그램에선 외국 식품 시설에 대한 FSMA 규정 준수 심사 방법과 인증서 발행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⑥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FSMA 중 하나인 Sanitary Food Transport Act(SFTA)는 냉동식품의 운송 중 오작동, 운송 차량의 비위생적 관리, 식품을 적절하게 비위생적으로 운송하는 등의 식품 안전 위험을 막기 위해 생긴 규정이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화주(shipper)·선적자(loader)·수취자(receiver)·운송자(carrier)다. 미국 내에서 소비될 식품이 미국에 철도·육로·해상·항공기 등으로 운송돼 들어올 때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FDA에서는 free training module을 개발했다. 이곳에서 온라인 교육을 들으면 certificate가 주어진다 (https://collaboration.fda.gov/sanitary_transportation_carrier_training/).

위생적 운송의 일차적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운송자가 위생적 운송을 책임진다면, 운송자는 직원 교육 기록을 보관하고 제시해야 한다. 운송자는 제3자 기관에 의뢰하여 직원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교육기관은 FDA의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일 필요는 없다.



⑦ 고의적 식품 변조(Intentional Adulteration)

- 최근 테러에 따른 식품 변조 위험이 커진 가운데, 식품 시설이 외부자의 침입을 받아 의도적인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 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설의 심각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공정 단계와 관련한 설명,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ies)과 관련한 설명, Food defense 모니터링 절차, Food defense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절차, Food defense 인증(verification) 절차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된 식품 보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EU 수입식품 규제 및 정책

□ 개요

EU 회원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EU 일반식품법과 개별국가 식품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U 일반식품법, (EC) No 178/2002은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법안과 특정 품목을 규정하는 수직적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적인 식품 요건과 위생 요구사항은 EC No 852/2004 규정을 따라야 한다. EU의 일반 식품법(General Food Law) (EC) No 178/2002은 회원국 간 일관성 있는 규제 적용과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적절한 통제 마련이 법령 제정의 주목적이다. 일반식품법은 5장 15절로 구성돼 있다.

EU 27개 회원국은 EU 식품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EU 식품법에서 다루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EU의 식품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법률(Law)과 집행을 위한 규정(Regulation)으로 구분된다. 과거에는 지침(Directive)을 통해 회원국에 통일된 식품안전관리 제도 운용을 유도했다. 최근에는 규정(Regulation)을 통해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EU 식품안전관리

EU의 식품안전관리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담당한다. EFSA는 식품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됐다. EFSA는 법규 (EC) No 178/2002에 따라 식품 위해성 평가와 식품 안전 위기 발생 때 EU 집행위원회 보조 등 6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EU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식품표시는 규정 (EU) No 1169/2011(FIC 규정)을 따라야 한다. FIC 규정은 수입식품을 포함해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식품 정보 표시의 일반원칙, 필수 표시 사항, 표시 언어와 표시방식, 영양 성분 표시 사항 등을 규율하며 55조로 구성됐다.

FIC 규정에 따르면 식품 라벨의 의무 표시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높이가 1.2mm 이상인 글꼴을 사용하되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80cm² 미만인 제품이라면 글자 높이가 0.9mm 이상이어야 한다. 식품에 든 모든 성분(원재료)은 각 성분의 특정 이름으로 기재해야 하며, 성분의 중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기재한다. 식물성 기름과 지방의 원료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allergen)은 눈에 잘 띄도록 강조 표시해야 한다.

식품 원산지와 주원료의 원산지가 다를 때는 해당 주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식품과 주원료 원산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부패하기 쉬워 단기간 내 인체 건강에 즉각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선 '사용기한'(use by)을 표시한다.

일자 표시로, 3개월 미만 보관 식품에는 '일·월', 3개월 이상~18개월 미만 보관 식품에는 '월·연', 18개월 이상 보관 식품에는 '연'을 기재한다. 냉동육·냉동 가공육·미가공 냉동 수산물에는 '~에 냉동된'(frozen on)이란 문구와 함께 품질 유지기한과 냉동일을 기재해야 한다.

■ FIC규정에 따르는 식품라벨 의무표시사항

구분	내용	구분	내용
1	· 식품명	7	· 원산지 국가 또는 출처
2	· 성분 목록	8	· 식품의 순 중량(net quantity)
3	· 특정 성분의 양 또는 성분 분류	9	· 최소 보존 기간 또는 소비기한(use by date)
4	· 알레르기 유발 성분	10	· 특별 보관 조건 혹은 사용 조건
5	· 영양성분표시(nutrition declaration)	11	· 별도 설명이 필요한 식품의 섭취방법 안내
6	· 식품 사업자 이름 및 주소 (EU 회원국 내 소재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 수입자 이름 및 주소)	12	· 알코올 함유 비중이 1.2% 가 넘는 음료의 경우 부피로 표시된 알코올 도수)

| 출처: European Commission(Labelling and nutrition)
Kati 농식품수출정보(EU 수입식품 규제 및 정책, 2022. 12.)



**European
Environment
Agency**

| 유럽 환경청(EEA) 로고

식품첨가물 규정은 유럽환경청(EEA)이 설정한다. EU는 식품첨가물을 "그 자체를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고, 영양적 가치에 상관없이 식품의 일반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특정 식품첨가물을 함유한 제품은 경고 문구를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EU는 2021년 4월부터 복합식품을 수입할 때 공중위생 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여기서 복합식품이란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식육·알 등)가 든 가공 제품을 가리킨다.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를 함유하거나 식용이 아니면 복합식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U는 수입 식품을 검역할 때 EU 동식물 검역 지침을 따르고 있다. EU에 동물이나 육류를 수출하려면 사전 검역을 받아야 한다.

노블푸드를 EU에 수출하려면 EC No 258/97과 EC No 1852/2001를 따라야 한다. 노블푸드의 EU 판매를 위해서는 EFSA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U 통관 시 제출 서류

적하목록(ENS, Entry Summary Declaration)

- 화물 상세 정보(물품 명세, 수량 및 중량,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 화물 운송인, 송하인(수출업체), 수하인(수입업체)에 대한 정보
- 운송 항로 및 운항 정보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C/I)
- 상업 송장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견적 송장(Pro Forma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L)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수출 가능 품목

농산물(2020년 기준)

- 곡류 : 쌀(백미, 현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 사과, 배, 감, 단감, 포도, 참다래, 밤, *감귤, 복숭아, 자두, 살구
- * (감귤에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우려 병해충 관리 및 소독 처리 한 후 수출 가능)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가지, 파, 양파, 상추, 토마토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닥



복합식품(식품성 원료와 동물성 가공제품이 결합된 식품)(2021년 기준)

- 축수산물 : 복합식품에 함유된 모든 동물 유래 가공식품(PPAO)은 반드시 EU 회원국 혹은 EU 승인 제3국의 EU 승인 작업장에서 제조된 제품, 열처리(70°C 이상)된 수산물 및 가금육이 함유된 식품에 한해 상온·비 상온 보관 복합식품 수출 가능(삼계탕, 만두, 냉동 치킨,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
- * 수산물, 젤라틴, 콜라겐, 곤충은 국내산 사용 가능
- 동물 유성분, 알류 : **EU 회원국 또는 EU가 수입을 승인한 제3국 소재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유성분·알 가공제품을 함유한** 국내 생산 상온 보관 복합식품에 한해 가능(우유나 계란제품이 함유된 과자류, 빵류, 초콜릿, 유성분이 함유된 음료, 아이스크림 등)
- * EU로 수출하는 복합식품은 정부증명서 또는 사설인증서 첨부 필요

수출 불가능 품목

농산물(2020년 기준)

- 감자, 여주, 감귤 묘목 등 3개 품목

축산물·복합식품(2020년, 2021년 기준)

- 가금육, 국내 생산된 유성분·알류·별곡이 함유된 복합식품, 가공되지 않은 동물유래 제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은 수출불가(식육패티와 허브, 야채 등 함유한 햄버거, 빵가루를 입힌 생새우 등)





EU 식품안전관리 제도

EU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인증에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유럽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유럽 노블푸드(novel food, 신 식품) 등록이 있다. EFSA의 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은 EU의 식품 안전 기본법에 따른 식품 위생 기준·라벨링 규정·오염물질 허용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제도이다. 가공, 부분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않았거나 인간이 섭취하도록 의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물질과 제품에 적용된다. 이 인증은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며, 수출할 때 꼭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유럽에서 노블푸드는 1997년 5월 15일 이전에 EU에서 인간이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하지 않은 식품, 새롭게 개발한 혁신적인 식품, 새로운 기술과 생산 공정을 사용해 생산한 식품, 전통적으로 EU 이외의 지역에서 먹거나 섭취해 온 식품 또는 성분을 뜻한다. 이 부류에 해당하면 EU 시장 출시 전 반드시 노블푸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한다.

EU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임의로 받을 수 있는 인증(선택 인증)에는 FSSC 22000 인증, Global GAP 인증, BRC 인증, EU 유기농 인증, 유로 리프 인증, HCE 인증, CGT 인증, 유럽 채식협회 인증, Vegan Society 인증, EVE VEGAN 인증, 지리적 표시(GI) 인증 등이 있다.

인증 종류	주요 내용	비고
FSSC 2200 (Food Safety System Certification 22000, 식품 안전 체계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22000을 기반 인증 · 위해요소 분석 중점 관리 기준(HACCP)도 포함돼 있어,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 	
Global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 농산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F(농업과 어업)·CB(작물)·FV(과일과 채소) 세 가지로 구성 · 유효인증 기간 1년, 별도의 인증마크 없음 	
BRC (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Food Stand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Food Standard, Storage and Distribution, Packaging 등 여러 인증 체계를 운영 	
EU 유기농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내에서 생산된 모든 유기농 농산물 인증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 · 유럽에서 생산한 미포장 유기농 식품 또는 제3국에서 수입한 유기농 제품에 EU 유기농 로고를 붙일 수 있음 · 2015년 우리나라와 EU는 유기 가공식품에 관한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EU 유로 리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기농 제품 생산에 적용하는 요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한 인증 ·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인증 발급 	

출처: 식품의약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인증 종류	주요 내용	비고
EU 유로 리프	· 생산이나 가공 과정에서 식품첨가물·화학물질 사용 제한, 방사선 조사(조사처리)와 유전자변형성분(GMO) 사용 금지 등의 요건 준수	
HCE (Halal Certification Europe)	· 인증 발급대상-식품·화장품·의약품 · HCF 인증이 발급되면 제품에 할랄 로고를 붙일 수 있음 · 유효인증 기간 1년, 갱신 가능	
CGT (The Crossed Grain Trademark)	· 인증 발급대상-식품·포장·원재료 등 · AOECS(Association of European Celiac Societies, 유럽 셀리아협회)의 글루텐 프리 기준을 기본으로 하는 인증 · HACCP의 기준을 담고 있으며, EU의 만성소화 장애증(Celiac Disease) 환자에게 필수 인증 · CGT 인증은 EU·스위스·노르웨이 등에서 인정	
V-Label (유럽 채식협회)	· EU의 대표적인 채식 인증 제도로, EU 회원국 내 통용 · 유전자변형(GMO) 제품, 양계장 생산 계란은 인증 불가 · 유효 인증기간 1년, 인증 만료 3개월 전 서면으로 해지·통보없으면 자동 갱신	
Vegan Society	·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성 식품과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품에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에 발급 · 소비자가 비건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료 선택부터 제품의 전체 생산단계에서 동물성 원료와 생산품·부상·부산물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	
EVE-VEGAN	· VEGAN FRANCE 협회가 2016년 설립한 EXPERTISE-VEGANE EUROPE S.A.S.의 서비스 인증브랜드	
EU GI (EU 지리적 표시)	·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해당 제품의 고유한 명칭 보호 위한 인증제도 · 원산지 표시 보호(PDO), 지리적 표시 보호(PGI), 전통 특산물 보증(TSG)으로 분류 (*EU 회원국과 동등성 인정받은 역외국에도 통용) ·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PGI) 품목으로 등록하면, EU 내에서 지리적 표시(GI) 인증과 같은 수준의 보호받음 · 각 인증 유형별로 신청 가능한 품목, 근거 규정, 자격 요건 등이 다르므로, 인증 취득 전 취득 요건 확인 필요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나라별 동등성 인정

□ 유기농 인증별 동등성 인정 현황

국가	주요 내용	비고
캐나다 O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OEA) 체결 ·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최종 가공되어 유기농 표시할 수 있는 식품으로 인정받은 유기 가공식품은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표시 및 판매 가능 	
캐나다 Canadian Organic Regi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Safe Food for Canadians Act and Regulations (Part 13)에서 정한 유기농 인증제도에 따라 모든 유기농 제품은 캐나다 유기농 표준(Canada Organic Standards)에 맞는 공식 인증을 취득할 필요 있음 · 캐나다와 유기농 동등성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은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해당 국가 소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취득해야 함 · EU, 일본, 미국, 스위스, 코스타리카, 대만 등 6개국 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지역(BC, 앨버타, 매니토바,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은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유기농 시스템을 운영 · 이 경우 캐나다 유기농 공식 로고를 부착하지 않고 주에서 발급하는 로고를 사용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만 판매 가능
EU 유기농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내 EU가 인정한 유기농 인증기관(EU 등재 한국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가공식품 유기농 인증 및 인증 코드만 인정 (이 외 한국 내 인증받은 유기농 인증은 인정받을 수 없음) · 가공식품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재료가 95% 이상 함유되어야 함 	
EU 유로 리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2월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 한국 외 미국,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튀니지 통용 	
미국 USDA Orga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7월 한-미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발효 · 한국 외 EU, 캐나다, 일본, 스위스, 대만, 영국 통용 	
일본 JAS 유기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캐나다, EU 회원국, 영국, 대만, 뉴질랜드 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은 유기 식품 동등성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Kotra 해외시장뉴스(해외인증정보-캐나다 유기농 인증제도(밴쿠버무역관), 2020)

□ 할랄 인증별 동등성 인정 현황

국가	주요 내용	비고
말레이시아 JAK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할랄 인증 동등성 인정 약정 · JAKIM 해외 인증기관 리스트에 한국 이슬람 중앙회 등재 · KMF, AHIK 등을 포함한 약 48개국 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에서 생산되지 않은 알코올 0.5% 이하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함량 기재된 자료 및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인도네시아 BPJP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0월 17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될 예정 (5년간 계도기간 중에는 기존처럼 할랄 미취득 제품도 수입 가능)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약 45개국 	
아랍에미리트 ES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 취득 가능 · GCC 6개국(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통용 	
싱가포르 MU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안 국가와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 통용 	
미국 IFAM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이슬람 협력 기구(OIC) 57개 회원국 및 타지역에 제한 없음 ·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 취득 가능 	
한국 K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통용 	
카자흐스탄 AHI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이슬람교 위주인 CIS 국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등) 통용 · 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 심사 및 인증 취득 가능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의 인증·보증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연구, 2021)

»2023년 해외인증 관련 주요 기사



23. 1. 18

|2023. 01. 18. 미국 USDA, 유기농 식품 규정 강화 발표

- USDA의 감독없이 운영되는 유기농 공급망 내 인증되지 않은 업체는 퇴출 할 예정
- 새로운 규정에 따라 유기농 식품, 재료 및 서비스 공급망의 일부 기업은 2024년3월19일 까지 준수 필요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https://bit.ly/41FSZIZ>)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47hFQY3>)

23. 10. 13

|2023. 10. 13.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절차 간소화 추진

- JAKIM은 할랄 인증 정책 2.0을 도입(국내 할랄 인증서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0일, 해외 신청은 3달 내)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신속 이니셔티브 적용함으로써 인증 신청부터 취득까지 23일 내로 단축될 예정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https://bit.ly/41ikqY>)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3RrRmeB>)

23. 10. 31

|2023. 10. 31. 캐나다 CFIA,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 체결

-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도 캐나다의 유기가공식품 표시 로고를 사용할 수 있어 양국간 유기가공식품 수출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 보도자료 참고 및 출처: 캐나다 정부, CFIA(<https://bit.ly/3Rw0jCk>)
농림축산식품부,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bit.ly/3NHPx15>)

23. 11. 18

|2023. 11. 18.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상호인정협약 체결

- 2024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따라 할랄인증 획득 필요
-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국내 민간 할랄인증 기관 (KMF, KHA)의 할랄인증을 받아 수출할 수있게 되어 인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 절감 예상

| 보도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https://bit.ly/3TMchL2>)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행기관 (사)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문의처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77
061-931-1114